KOTRA 자료 20-166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 2019 IP-DESK 백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9 IP-DESK WHITE PAPER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자료 20-166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 2019 IP-DESK 백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9 IP-DESK WHITE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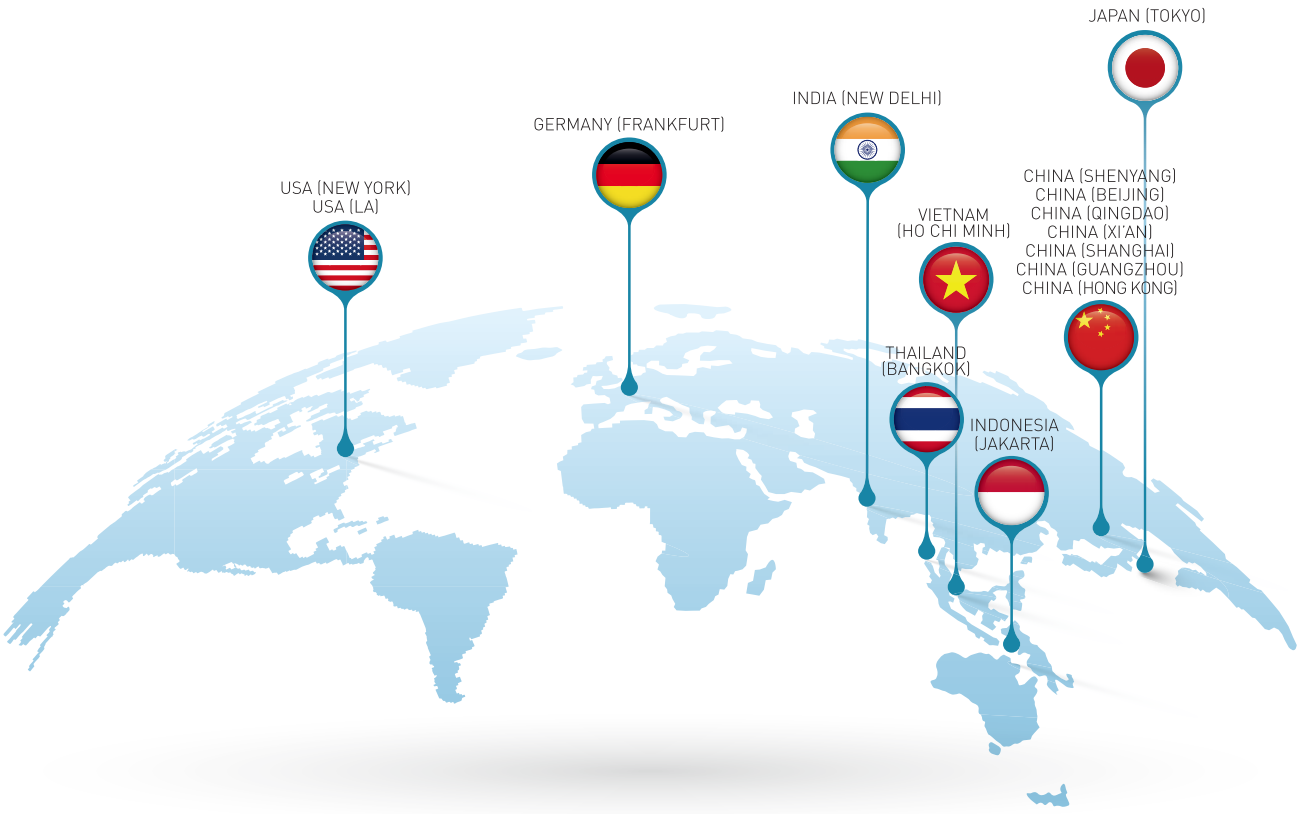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제 1 부

## IP-DESK 총론


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립
1. 설립배경 ····· 04
2. 발전과정 ····· 05

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 운영 기본현황 ····· 15
2. 인력현황 ····· 17
3. 전문인력의 배치 ····· 18

Ⅲ.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및 실적
1. 사업내용 ····· 21
2. 사업실적 ····· 22


제 2 부

## IP-DESK별 사업 현황


Ⅰ. 베이징 IP-DESK ····· 34
Ⅱ. 상하이 IP-DESK ····· 46
Ⅲ. 칭다오 IP-DESK ····· 60
Ⅳ. 광저우 IP-DESK ····· 68
Ⅴ. 선양 IP-DESK ····· 84
Ⅵ. 시안 IP-DESK ····· 95
Ⅶ. 홍콩 IP-DESK ····· 103
Ⅷ. 방콕 IP-DESK ····· 113
Ⅸ. 호치민 IP-DESK ····· 124
Ⅹ. 로스앤젤레스 IP-DESK ····· 140
Ⅺ. 뉴욕 IP-DESK ····· 156
Ⅻ. 프랑크푸르트 IP-DESK ····· 173
ⅩⅢ. 도쿄 IP-DESK ····· 189
ⅩⅣ. 뉴델리 IP-DESK ····· 202
ⅩⅤ. 자카르타 IP-DESK ····· 211

제 1 부

# IP-DESK 총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립**

1. 설립배경
2. 발전과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 운영 기본현황
2. 인력현황
3. 전문인력의 배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및 실적**

1. 사업내용
2. 사업실적

# I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립

## 1. 설립배경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사업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잦은 중국을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200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3개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한 IP-China Desk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이 공동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에 IP전담 DESK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9년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8개국 15개 지역의 KOTRA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 중이다.

그림 1-1-1 IP-DESK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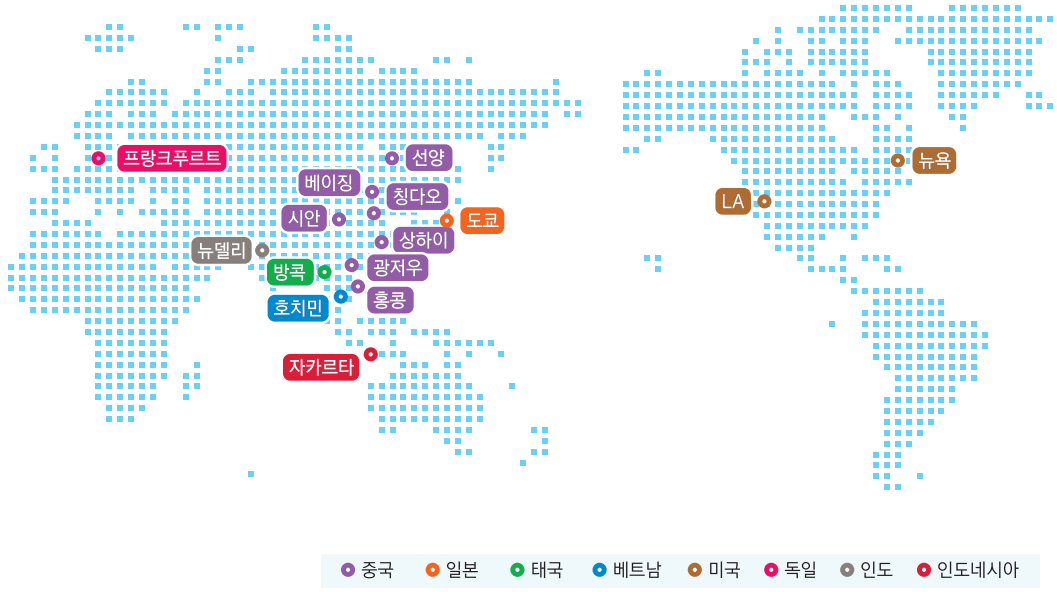

## 2. 발전과정

IP-DESK 사업은 2006년 시행 이후 사업수행 주체의 변화 시기를 중심으로 크게 3단계로 발전해왔다.

이는 KOTRA가 해외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독 수행한 1기, 개별 국가를 지정하여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舊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 2기, KOTRA가 인프라를 통합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전문성을 협력하는 3기로 구분된다.

표 1-1-1 연도별 IP-DESK 설치 현황

| 구분 | 연도 | 설치지역 | 운영주체(예산) | 사업수행기관 |
|---|---|---|---|---|
| 1기 | '06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 산업자원부 | KOTRA |
| | '07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 산업자원부 | KOTRA |
| | '08년 | **중국**(칭다오, 광저우) | 지식경제부 | KOTRA |
| | | **중국**(베이징, 상하이),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 특허청 | |
| | '09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 특허청 | KOTRA |
| 2기 | '10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 특허청 | KOTRA |
| | | **중국**(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11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 특허청 | KOTRA |
| | | **중국**(선양), **태국**(방콕)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12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 특허청 | KOTRA |
| | | **중국**(선양), **태국**(방콕)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13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 특허청 | KOTRA |
| | | **중국**(선양), **태국**(방콕)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3기 | '14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 특허청 | KOTRA |
| | '15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 특허청 | KOTRA |
| | '16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 특허청 | KOTRA |
| | '17년 '18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특허청 | KOTRA |
| | '19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특허청 | KOTRA |

## ▣ 1기 (2006년~2009년) / KOTRA 수행

IP-DESK 사업은 2006년 산업자원부가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잦은 중국을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KOTRA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무역관에 IP-DESK를 설치·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의 총 6개 IP-DESK에 대하여 사업과 예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

### 2006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산업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 1개국 3개소<br>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의 내부조직으로 편제, 중국 베이징을 거점으로 하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IP-China Desk로 활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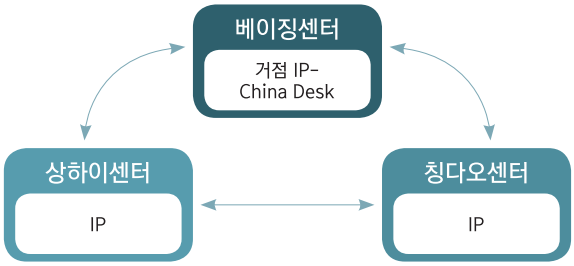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9명

법률자문 및 권리등록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변리사 1인, 시장모니터링 및 상담을 지원하는 현지직원 5인, IP채널구축 및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권 고문 3인 등 총 9명으로 업무 수행

| 구분 | 담당업무 | 센터별 인원 | | | 비고 |
|---|---|---|---|---|---|
| |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
| 전담변리사 | 법률자문·등록지원 | 1 | - | - | 로펌계약, 주1일 출근 |
| 현지직원 | 시장모니터링·상담 | 3 | 1 | 1 | 상근 |
| 지식재산권 고문 | IP채널구축·자문 | 1 | 1 | 1 | 유관기관 퇴직자, 지식재산권 전문가(비상근) |

1)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경영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자부 공동으로 KOTRA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무역관 내에 설치

## 2007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산업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 1개국 4개소<br>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내부조직으로 편제, 중국 베이징을 거점으로 하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IP-China Desk로 활용 | | |
| 비 고 | * 중국 광저우 IP-DESK 신규 설치(2007.0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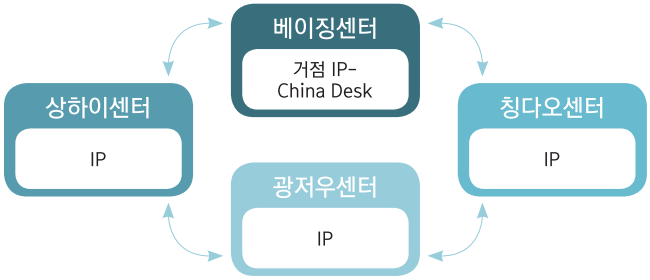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1명

법률자문 및 권리등록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변리사 1인, 시장모니터링 및 상담을 지원하는 현지직원 6인, IP채널구축 및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권 고문 4인 등 총 11명으로 업무 수행

| 무역관 | 역할 | 인력구성 | 비고 |
|---|---|---|---|
| 베이징 | • IP-China Desk 총괄<br>• 변리상담, 행정지원<br>• 기본업무 수행<br>- 지식재산권 상담<br>- 자료발간, 설명회<br>- 네트워킹 | • 전담변리사 1명<br>• 현지직원 3명<br>(총괄담당 1명 포함)<br>• 지식재산권 고문 1명<br>(중국 지식산권국 퇴직자) | 전담변리사<br>주1일 출근 |
| 상하이 | • 기본업무 수행<br>- 지식재산권 상담<br>- 자료발간, 설명회<br>- 네트워킹 | • 현지직원 1명<br>•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 1명 | 고문역 비상근 |
| 칭다오 | • 기본업무 수행<br>- 지식재산권 상담<br>- 자료발간, 설명회<br>- 네트워킹<br>• 지식재산권 변리상담<br>('07년 7월 이후 미실시) | • 현지직원 1명<br>•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 1명 | 고문역 비상근 |
| 광저우 | • 기본업무 수행<br>- 지식재산권 상담<br>- 자료발간, 설명회<br>- 네트워킹 | • 현지직원 1명<br>•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 1명 | 고문역 비상근 |

## 2008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지식경제부,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 3개국 6개소<br>중국 4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 1개 지역(방콕), 베트남 1개 지역(호치민)의 KOTRA 무역관 내에 설치하여 3개국 6개 지역에서 운영 | | |
| 비 고 | * 태국 방콕(2008.04.), 베트남 호치민(2008.07.) IP-DESK 신규 설치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3명

데스크 업무를 총괄하는 데스크장 6명, 상담지원, 정보조사·제공, 데스크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직원 7명 등 총 13명으로 업무수행

* 전문 법률자문은 각 데스크별 로펌 별도 계약 운영
* 베이징 전담직원 1명은 현지 변리사자격 소지자

| 구분 | 담당업무 | 데스크별 인원 | | | | | | 총계 |
|---|---|---|---|---|---|---|---|---|
| |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방콕 | 호치민 | |
| 데스크장 | 시장모니터링·상담 | 1 | 1 | 1 | 1 | 1 | 1 | 6 |
| 전담직원 | 정보조사·데스크운영 | 2 | 1 | 1 | 1 | 1 | 1 | 7 |
| 합 계 | | 3 | 2 | 2 | 2 | 2 | 2 | 13 |

## 2009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예 산 | 10.8억원 |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 3개국 6개소<br>중국 4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 1개 지역(방콕), 베트남 1개 지역(호치민)의 KOTRA 무역관 내에 설치하여 3개국 6개 지역에서 운영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5명

데스크 업무를 총괄하는 데스크장 6명, 상담지원, 정보조사·제공, 데스크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직원 3명과 운영직원 6명 등 총 15명으로 업무수행

* 데스크별 기본 인력 구성 : 데스크장 1명, 전담직원 1명, 운영직원 1명

| 구분 | 데스크별 인원 | | | | | | 총계 |
|---|---|---|---|---|---|---|---|
|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방콕 | 호치민 | |
| 데스크장 | 1 | 1 | 1 | 1 | 1 | 1 | 6 |
| 전담직원 | 1 | 1(신규) | - | 1(신규) | - | - | 3 |
| 운영직원 | 1 | 1 | 1 | 1 | 1 | 1 | 6 |
| 합 계 | 3 | 3 | 2 | 3 | 2 | 2 | 15 |

## ▣ 2기 (2010년~2013년) /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 수행

2010년부터 2013년까지 IP-DESK 사업은 KOTRA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행의 조직상 문제 및 전담인력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중국 선양의 3개 IP-DESK를 KOTRA로부터 분리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관리·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여, 이 시기에는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 수행을 하였다.

### 2010년

| | |
|---|---|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 3개국 7개소<br>- KOTRA 운영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총 4개소<b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 중국(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총 3개소 |
| 비 고 | * 베트남 IP-DESK는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이전 및 운영기관 KOTRA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 (2010.05.)<br>호치민 IP-DESK 사업실적 부진('09년 상담건수 42건), 베트남 중앙정부 및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하노이로 IP-DESK 사무실 이전 및 운영기관 KOTRA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br>* 중국 선양 IP-DESK 신규 설치(2010.05.)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5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하노이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 2011년

| | |
|---|---|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 3개국 7개소<br>- KOTRA 운영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하노이) 총 5개소<b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 중국(선양), 태국(방콕) 총 2개소 |
| 비 고 | * 하노이 IP-DESK 운영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OTRA로 변경(2011.05.)<br>베트남 데스크 미운영(3개월), 법적근거, 비자문제 및 지식재산권 이슈 부족으로 운영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OTRA로 재변경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5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하노이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 2012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 4개국 8개소<br>- KOTRA 운영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총 6개소<b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 중국(선양), 태국(방콕) 총 2개소 | | |
| 비 고 | * 미국 LA IP-DESK 신규 설치 (2012.03.)<br>* 베트남 IP-DESK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재이전 (2012.03.)<br>기업진출 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IP-DESK를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재이전<br>* 중국 선양 IP-DESK 신규 설치(2010.05.)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6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호치민 | LA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1 |

## 2013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 4개국 9개소<br>- KOTRA 운영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총 7개소<b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 중국(선양), 태국(방콕)의 총 2개소 | | |
| 비 고 | * 미국 뉴욕 IP-DESK 신규 설치(2013.06.)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19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2 | 2 |

## ▣ 3기 (2014년~2019년) / KOTRA 운영

IP-DESK 사업은 KOTRA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조·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당초 운영 의도와는 달리 양 기관간의 장점이 융합되지 않는 등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 외부의 시각에서도 이원화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었다.

주요한 비효율성의 원인으로는 'IP-DESK 운영사업'을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 진행시의 상호의사 소통 애로 및 사업 추진체계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한 기관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타 기관은 운영지침이 없이 사업이 운영되는 등 사업 집행 운영의 통일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해외 지사를 관리·운영하는 KOTRA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 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KOTRA의 해외 인프라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성 등 양측의 장점을 접목하고자 실질적으로 KOTRA가 운영하는 일원화 사업 추진 방식을 취하게 된다

### 2014년

| | |
|---|---|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 5개국 10개소 |
| 비 고 | * 독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신규 설치 (2014.07.)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1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2015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 6개국 11개소 | | |
| 비 고 | * 일본 도쿄 IP-DESK 신규 설치 (2015.07.)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3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
| 인원 수 | 3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2016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 6개국 12개소 | | |
| 비 고 | * KOTRA 내 IP-DESK 전담 운영조직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신설 (2016.02.)<br>* 중국 시안 IP-DESK 신규 설치 (2016.06.)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6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
| 인원 수 | 3 | 2 | 2 | 3 | 2 | 2 | 2 | 2 | 2 | 2 | 2 | 2 |

•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전체인력 : 총 8명

| 구분 | 단장 | 전문위원 | 사원 | 인턴 |
|---|---|---|---|---|
| 인원 수 | 1 | 4 | 1 | 2 |
| 소속기관 | 특허청 | KOTRA 2명<br>한국지식재산보호원 1명<br>한국지식재산전략원 1명 | KOTRA | - |

## 2017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8개국 14개소 | | |
| 비 고 | * 인도 뉴델리 IP-DESK 신규 설치 (2017.09.)<b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P-DESK 신규 설치 (2017.11.) |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8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뉴델리 | 자카르타 |
|---|---|---|---|---|---|---|---|---|---|---|---|---|---|---|
| 인원 수 | 3 | 2 | 3 | 3 | 2 | 2 | 2 | 1 | 2 | 2 | 1 | 1 | 1 | 1 |

• 해외지재권보호실 전체인력 : 총 8명

| 구분 | 단장 | 전문위원 | 사원 | 인턴 |
|---|---|---|---|---|
| 인원 수 | 1 | 4 | 1 | 2 |
| 소속기관 | 특허청 | KOTRA 2명<br>한국지식재산보호원 1명<br>한국지식재산전략원 1명 | KOTRA | - |

## 2018년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8개국 14개소 | | |
| 비 고 | * 해외지재권보호단에서 '해외지재권보호실' 로 승격 (2018.08.) | |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8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뉴델리 | 자카르타 |
|---|---|---|---|---|---|---|---|---|---|---|---|---|---|---|
| 인원 수 | 3 | 2 | 2 | 3 | 2 | 1 | 2 | 2 | 2 | 2 | 2 | 2 | 1 | 2 |

• 해외지재권실 전체인력 : 총 8명

| 구분 | 실장 | 차장 | 과장 | 전문위원 | 사원 | 인턴 |
|---|---|---|---|---|---|---|
| 인원 수 | 1 | 2 | 1 | 2 | 1 | 1 |
| 소속기관 | 특허청 | KOTRA | KOTRA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KOTRA | - |

## 2019년

| | |
|---|---|
| 소관부처 | 수행기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지원국가 |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8개국 15개소 |
| 비 고 | * '해외지재권보호실' 에서 '해외지재권실' 로 명칭 변경 (2019.02.)<br>* 중국 홍콩 IP-DESK 신규 설치 (2019.03.) |

### 인력현황

• IP-DESK 전체인력 : 총 29명

| 구분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홍콩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뉴델리 | 자카르타 |
|---|---|---|---|---|---|---|---|---|---|---|---|---|---|---|---|
| 인원 수 | 3 | 2 | 2 | 3 | 2 | 1 | 1 | 3 | 2 | 2 | 2 | 2 | 1 | 1 | 2 |

• 해외지재권실 전체인력 : 총 7명

| 구분 | 실장 | 차장 | 과장 | 전문위원 | 사원 |
|---|---|---|---|---|---|
| 인원 수 | 1 | 2 | 1 | 1 | 2 |
| 소속기관 | 특허청 | KOTRA | KOTRA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KOTRA |

# 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1. 운영 기본현황

IP-DESK 사업은 특허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KOTRA가 사업관리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 승인 등 사업총괄 하에 KOTRA 본사 해외지재권실과 KOTRA 15개 해외무역관이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KOTRA 본사 해외지재권실은 IP-DESK 사업 전담을 위하여 2016년 2월 1일자로 신설되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제반사업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KOTRA 해외무역관 IP-DESK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의 8개국 15개 지역에 설치되어 현지 지식재산권 상담, 현지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KOTRA 해외지재권실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그림 1-2-1 IP-DESK 사업 추진 체계

### 표 1-2-1 IP-DESK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

| 기관유형 | 담당기관 | 주요역할 |
|---|---|---|
| 총괄기관 | 특허청 | • 기본사업계획 수립<br>• 국고보조 승인 및 교부<br>• 총괄 사업지도, 감독, 평가<br>• P-DESK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 관리기관 | KOTRA 본사<br>(해외지재권실) | • 세부 사업계획 수립<br>• 제반사업 운영 및 관리<br>• IP-DESK 사업 홍보, 예산 및 행정 지원<br>• 협력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
| 수행기관 | KOTRA 해외무역관<br>(IP-DESK) | • 현지 지식재산권 상담<br>• 수출기업 및 현지 지식재산권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원<br>• 현지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br>•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br>•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비용지원 |
| 협력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KOTRA 해외지재권실로 전문인력 파견 |

### 표 1-2-2 IP-DESK 설치 · 운영 현황

| NO | 국가명 | IP-DESK명<br>(수행기관) | 연락처 | 주 소 | 설치일 |
|---|---|---|---|---|---|
| 1 | 중국 | 베이징 IP-DESK<br>(KOTRA 베이징무역관) | 86-10-6410-6162 | A-29, Beijing Posco Center Bldg.,Hongtai East St.,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000575) | 2006.04 |
| 2 | 중국 | 상하이 IP-DESK<br>(KOTRA 상하이무역관) | 86-21-5108-8771 |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 2006.04 |
| 3 | 중국 | 칭다오 IP-DESK<br>(KOTRA 칭다오무역관) | 86-532-8388-7931 | Rm2308, HNA Center, No.2 Hongkong Mid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 2006.04 |
| 4 | 중국 | 광저우 IP-DESK<br>(KOTRA 광저우무역관) | 86-20-2208-1600 |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510620) | 2007.04 |
| 5 | 중국 | 선양 IP-DESK<br>(KOTRA 선양무역관) | 86-24-3137-0770 | Room 1703 China Resources Building, No.286 Qingnianda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China (110004) | 2010.05 |
| 6 | 중국 | 시안 IP-DESK<br>(KOTRA 시안무역관) | 86-29-8883-1060 | Room 1905, Maike Business Center, No.12 JinYe Rd. 1st, Hi-tech zone, Xian, Shaanxi, China Xian, Shanxi, China (710077) | 2016.06 |
| 7 | 중국 | 홍콩 IP-DESK<br>(KOTRA 홍콩무역관) | 852-2545-9500 | Room 3102,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China | 2019.03 |

| NO | 국가명 | IP-DESK명 (수행기관) | 연락처 | 주 소 | 설치일 |
|---|---|---|---|---|---|
| 8 | 태국 | 방콕 IP-DESK (KOTRA 방콕무역관) | 66-2-035-1555 | Bhiraj Tower at EmQuartier, Unit 4101-4104, 41st Floo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 2008.04 |
| 9 | 베트남 | 호치민 IP-DESK (KOTRA 호치민무역관) | 84-28-3822-3944 | Rm 708B 7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1, HoChiMinh City, Vietnam | 2008.07 |
| 10 | 미국 | LA IP-DESK (KOTRA LA무역관) | 1-323-954-9500 |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USA | 2012.03 |
| 11 | 미국 | 뉴욕 IP-DESK (KOTRA 뉴욕무역관) | 1-212-826-0900 |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 2013.06 |
| 12 | 독일 | 프랑크푸르트 IP-DESK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49-(0)69-242-9920 |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 2014.07 |
| 13 | 일본 | 도쿄 IP-DESK (KOTRA 도쿄무역관) | 81-3-3214-6951 | 9F., Shinkokusai Bldg.4-1, Marunouchi3-Chome,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 2015.07 |
| 14 | 인도 | 뉴델리 IP-DESK (KOTRA 뉴델리무역관) | 91-124-4628-514 |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III, Gurgaon-122002, Haryana, India | 2017.09 |
| 15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IP-DESK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62-21-574-1522 | Suite 801,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10210 Indonesia | 2017.11 |
| ※ | 한국 | 해외지재권실 (KOTRA 본사) | 82-2-3460-3357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 2016.02 |

## 2. 인력현황

IP-DESK 사업은 '06년 9명의 인력으로 처음 시작하여 '09년 15명, '13년 19명, '15년 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19년 현재 총 30명의 인력이 15개 IP-DESK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2-3 연간 추진실적

| 연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인원(명) | 9 | 11 | 13 | 15 | 15 | 15 | 16 | 19 | 21 | 23 | 26 | 28 | 28 | 29 |

## 3. 전문인력의 배치

'19년 12월 말 기준 현지 IP-DESK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全IP-DESK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해당 소재 국가의 현지법 및 채용여건 등에 따라 상근·비상근(대체 자문로펌) 형태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2-4 IP-DESK 전담인력 세부현황 ('19년 12월말 기준)

| No. | IP-DESK명 (인원수) | 성명 | 국적 | 입사일 | 담당업무 | 비고 |
|---|---|---|---|---|---|---|
| 1 | 베이징 (3명) | 한춘화 | 중국 | 2010.03 | 상담 및 지원사업 | 변호사 |
| | | 왕루 | 중국 | 2016.02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왕리 | 중국 | 2019.05 | 상담 및 지원사업 | |
| 2 | 상하이 (2명) | 유아남 | 중국 | 2015.04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김명복 | 중국 | 2019.04 | 상담 및 지원사업 | |
| 3 | 칭다오 (2명) | 서상 | 중국 | 2015.09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조상홍 | 중국 | 2019.07 | 상담 및 지원사업 | |
| 4 | 광저우 (3명) | 양연리 | 중국 | 2016.05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왕아선 | 중국 | 2019.01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황혜민 | 중국 | 2019.08 | 상담 및 지원사업 | |
| 5 | 선양 (2명) | 김화향 | 중국 | 2014.05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소창 | 중국 | 2017.10 | 상담 및 지원사업 | |
| 6 | 시안(1명) | 난핑판 | 중국 | 2019.07 | 상담 및 지원사업 | |
| 7 | 홍콩(1명) | 한열림 | 한국 | 2019.03 | 상담 및 지원사업 | |
| 8 | 방콕 (3명) | 엄현주 | 한국 | 2018.01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Tuanta Leebuntoondej | 방콕 | 2019.11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Nattwadee Siripanurak | 방콕 | 2019.12 | 상담 및 지원사업 | |
| 9 | 호치민 (2명) | 김찬영 | 한국 | 2018.01 | 상담 및 지원사업 | 변호사 |
| | | 정해란 | 한국 | 2019.03 | 상담 및 지원사업 | |
| 10 | LA (2명) | 김윤정 | 한국 | 2012.03 | 상담 및 지원사업 | 변호사 |
| | | Barbara Kim | 미국 | 2019.01 | 상담 및 지원사업 | 변호사 |
| 11 | 뉴욕 (2명) | Grace Ahn | 미국 | 2017.04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박다미 | 미국 | 2018.02 | 상담 및 지원사업 | 변호사 |
| 12 | 프랑크푸르트 (2명) | 이동희 | 한국 | 2018.01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조아라 | 한국 | 2018.03 | 상담 및 지원사업 | |
| 13 | 도쿄 (1명) | 원다혜 | 한국 | 2019.07 | 상담 및 지원사업 | |
| 14 | 뉴델리 (1명) | 임수정 | 한국 | 2018.08 | 상담 및 지원사업 | |
| 15 | 자카르타 (2명) | Maryam | 인도네시아 | 2018.03 | 상담 및 지원사업 | |
| | | Taryono Aji | 인도네시아 | 2018.11 | 상담 및 지원사업 | |

표 1-2-5 IP-DESK 전문인력 대체 자문로펌 현황 ('19년 12월말 기준)

| No | 국가명 | IP-DESK명 | 로펌명 | 로펌주소 | 로펌 연락처 | 담당자 |
|---|---|---|---|---|---|---|
| 1 | 중국 | 베이징 | CROWN&RIGHTS IP LAW FIRM | Rm. 1408, Tower 1, Office Building, Henderson Center, No. 18, Jianguomennei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100005, China | 86-10-65662083 (812) | 최정 변리사 |
| 2 | 중국 | 베이징 | GREENTREE IP - LAWFIRM | Rm 710, Shunxin Universe Center, 3 Zhanqian Rd, Shunyi Dist, Beijing, 101300, P.R.China | 86-10-5686-2328 | 전성주 변리사 |
| 3 | 중국 | 베이징 | LIFANG& PARTNERS IP LAW FIRM | Room 1105,Tower A,Nanxincang International Building, No. A22, Dongsishitiao Street, Beijing, P. R. China | 86-10-6409-6099 | 김춘국 변호사 |
| 4 | 중국 | 베이징 | MING&SURE IP Law Firm | Building 3, Court 1, Gaolizhang Road, Wenquan Town, Haidian District, Beijing, 100095 | 86-10-8303-8178 | 송령 변호사 |
| 5 | 중국 | 상하이 | Shanghai Keycreate Intellectual Property LTD | Room 3002, Cloud Nine Building, 6088 Humin Road, Shanghai, China | 86-021-3388-7611 | 심상희 변리사 |
| 6 | 중국 | 광저우 | JUNCY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Co., Ltd. | Level 11, Building A2 Times E-park, 280 Hanxi Avenue, Panyu District, Guangzhou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 +86-20-3114-6732 | 화훼이 변리사 |
| 7 | 중국 | 칭다오 | 베이징중북 지식산권 대리유한공사 칭다오지사 | Room 612-613, Building B, Vanke Center, No.2 Heilongjiang South Road, North District, Qingdao City, China | 86-532-8093-8618 | 왕내위 변리사 |
| 8 | 중국 | 선양 | 북경청송 특허법률사무소 | Rm710, Shunxin Universe Center, 3 Zhanqian Rd, Shunyi Dist, Beijing 101300, P.R. China | 86-10-5686-2328 | 정청송 변리사 |
| 9 | 중국 | 시안 | 대성로펌 | Room 1905, Yongl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No.6 JinYe Rd. 1st, Hi-tech zone, Xian, Shaanxi, China | 86-29-88866955 | 염효미 변호사 |
| 10 | 중국 | 홍콩 | KIM&COMPANY, SOLICITORS | 9th Floor, Fontaine Building, 18 Mody Rd.,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 | 852-2555-8411 | 김정용 변호사 |
| 11 | 태국 | 방콕 |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 Supalai Grand Tower, 26th Floor 1011 Rama 3 Road, Chongnonsi,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 +66-2-056-5555 | Ms. Sukonthip Jitmong konthong |

| No | 국가명 | IP-DESK명 | 로펌명 | 로펌주소 | 로펌 연락처 | 담당자 |
|---|---|---|---|---|---|---|
| 12 | 베트남 | 호치민 | LOGOS | Unit 2002B, 20FL,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ai st, Dist3, HCMC | 84-28-3822-7161 | 임범상 변호사 |
| 13 | 베트남 | 호치민 | BMVN | 12th Floor, Saigon Tower, Dist1, HCMC | 84-28-3520-2716 | Nguyen Huu Tuan 변호사 |
| 14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Vossius & Partner | Siebertstraße 4 81675 Munich, Germany | +49-89-413040 | 최재혁 변리사 |
| 15 | 일본 | 도쿄 | 이토국제특허사무소 | MARUNOUCHI MY PLAZA 16th FLOOR, MARUNOUCHI 2-1-1,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 +81-3-5223-6011 | 유광희 변리사 |
| 16 | 인도 | 뉴델리 | BUDDTREE Advisory Services Private Limited | Level 18, One Horizon Centre, Phase 5 Golf Course Road, Sector 43, DLF Gurgaon, Gurgaon, Haryana, India, 122002 | 91-0124-6688194 | 유지혜 변호사 |
| 17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LSW Attorney at Law and Consulting | Graha Surveyor Indonesia Building 19th Floor Suite 1901 | +62-(0)21-2941 1042 | 이소왕 변호사 |

표 1-2-6 해외지재권실 인력 세부현황 (`19년 12월말 기준)

| 기관명 | 소속 (직위) | 이름 | 국적 | 담당업무 | 비고 |
|---|---|---|---|---|---|
| KOTRA 본사 (7명) | 특허청 (실장) | 이정숙 | 한국 | 해외지재권실 총괄 | 외부 파견 |
| | KOTRA (차장) | 허성무 | 한국 | IP-DESK 성과관리 | |
| | KOTRA (차장) | 배석용 | 한국 | IP-DESK 사업 총괄·운영 | |
| | KOTRA (과장) | 이용근 | 한국 | IP-DESK 사업운영 |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 이민기 | 한국 | 초동대응지원사업 총괄·운영 | 외부 파견 |
| | KOTRA (사원) | 전수진 | 한국 | 예산업무, 서무, 사업지원 | |
| | KOTRA (사원) | 이재원 | 한국 | 고객상담, 서무, 사업지원 | |

Ⅲ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및 실적

## 1. 사업내용

IP-DESK 사업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직접수행사업과 신청기업 측에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행사업은 지식재산권 상담지원,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이동식 IP-DESK 운영,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지식재산권 정보조사, 협력채널 구축 등이 있으며, 비용지원사업으로는 상표·디자인·특허 출원비용 지원사업, 피침해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사업이 있다.

표 1-3-1 IP-DESK 사업내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
| 직접수행 사업 | 지식재산권 상담지원 | 현지 지식재산제도, 정책소개, 출원절차 상담, 지식재산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지원 |
| |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여 현지 민 · 관 네트워크 구축 |
| | 이동식 IP-DESK 운영 | 현지 지식재산권 문제를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IP-DESK 소재지 이외 지역 및 주요 전시회 등으로 출장 상담 수행 |
| |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유사시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 |
| |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 해외 현지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제품에 대한 위조품 식별 교육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단속 유도 |
| | 지식재산권 정보조사 | 현지 진출기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제도 변경 및 주요 정보를 한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 |
| | 협력채널 구축 | 현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 등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 |
| 비용지원 사업 | 상표 · 디자인 · 특허 출원비용 지원사업 | 현지에서 상표, 디자인 및 특허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절차 지원 |
| | 피침해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 | 현지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 실태조사와 행정단속 비용 및 절차 지원 |
| |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사업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지역의 분쟁발생 시 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및 절차 지원 |

## 2. 사업실적

IP-DESK는 지식재산권 무료상담과 함께 현지 상표, 디자인 및 특허 출원 비용지원의 권리확보 지원은 물론, 위조상품 관련 침해조사와 단속비용 지원, 현지 단속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및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유관 공무원 국내 초청연수 사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3-2 '19년 IP-DESK 사업실적 총괄표 (단위 : 건, 회)

| 국가/DESK / 세부사업 | | 중국 | | | | | | | 태국 | 베트남 | 미국 | | 독일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합 계 |
|---|---|---|---|---|---|---|---|---|---|---|---|---|---|---|---|---|---|
| |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홍콩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뉴델리 | 자카르타 | |
| 지식재산권 상담건수 | | 377 | 780 | 297 | 543 | 151 | 6 | 75 | 323 | 304 | 2,522 | 839 | 524 | 1,242 | 364 | 180 | 8,527 |
| 상표 출원 | 접수 | 174 | 166 | 87 | 51 | 65 | 30 | 37 | 82 | 219 | 389 | 210 | 90 | 164 | 57 | 68 | 1,889 |
| | 완료 | 117 | 86 | 62 | 38 | 34 | 17 | 14 | 45 | 147 | 256 | 111 | 60 | 116 | 39 | 46 | 1,188 |
| 디자인 출원 | 접수 | 22 | 22 | 3 | 4 | 0 | 0 | 1 | 2 | 4 | 34 | 15 | 10 | 30 | 3 | 3 | 153 |
| | 완료 | 13 | 12 | 2 | 2 | 0 | 0 | 0 | 2 | 1 | 21 | 11 | 10 | 21 | 3 | 0 | 98 |
| 특허 출원 | 접수 | 4 | 7 | 2 | 0 | 0 | 1 | 0 | 2 | 5 | 13 | 7 | 9 | 11 | 2 | 1 | 64 |
| | 완료 | 4 | 6 | 2 | 0 | 0 | 0 | 0 | 0 | 4 | 8 | 5 | 7 | 5 | 2 | 0 | 43 |
| 피침해 지원 | 접수 | 8 | 7 | 0 | 6 | 2 | 7 | 0 | 2 | 0 | 0 | 2 | 3 | 0 | 1 | 0 | 38 |
| | 완료 | 4 | 2 | 0 | 2 | 1 | 7 | 0 | 2 | 0 | 0 | 0 | 0 | 0 | 0 | 0 | 18 |
| 법률 의견서 | 접수 | 0 | 0 | 0 | 3 | 0 | 0 | 0 | 0 | 0 | 7 | 11 | 10 | 3 | 1 | 0 | 35 |
| | 완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7 | 7 | 2 | 1 | 0 | 20 |
| 세미나 및 설명회 | | 1 | 1 | 3 | 8 | 0 | 1 | 7 | 0 | 2 | 12 | 9 | 5 | 4 | 5 | 0 | 58 |
|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 | 1 | 1 | 0 | 1 | 0 | 1 | 0 | 1 | 1 | 0 | 0 | 0 | 0 | 0 | 0 | 6 |
| 이동식 IP-DESK | | 8 | 1 | 4 | 11 | 6 | 0 | 3 | 3 | 5 | 6 | 3 | 25 | 4 | 6 | 10 | 95 |
| 협력채널 구축 | | 21 | 5 | 0 | 32 | 3 | 0 | 17 | 12 | 10 | 1 | 3 | 0 | 11 | 1 | 0 | 116 |
| 정보제공 및 홍보 | | 4 | 0 | 24 | 13 | 2 | 1 | 70 | 12 | 5 | 39 | 15 | 0 | 13 | 0 | 0 | 198 |

특히, 위조상품 식별세미나는 2019년에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총 6회에 걸쳐 총 566명의 현지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단속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com)와 징동(JD.COM) 위조상품 단속부서 직원까지 그 대상을 넓혀 진행하였다.

표 1-3-3 '19년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개최 내역

| 일 자 | 국 가 | 지 역 | 대상기관 | 참여인원 | 참여한국기업 |
|---|---|---|---|---|---|
| '19.06.12(금) | 중국 | 상하이 | 알리바바 브랜드IP 보호부서 | 30명 | LG생활건강, 아이아이컴바인드, F&F, AHC, JM Solution, CSA COSMIC |
| '19.07.10(화) | 중국 | 베이징 | 징동 그룹(JD.COM) | 60명 |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미샤, 아모레 퍼시픽, 삼성전자, 갤러리에이엠 |
| '19.07.17(수) | 중국 | 광저우 |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광저우 시장감독관리국, 광저우 해관, 황푸 해관, 선전 해관 | 111명 | 삼성전자, 에이블씨앤씨, 도루코, 에프앤코, MCM, 카버코리아, LG전자, 아모레퍼시픽 |
| '19.11.15(화) | 중국 | 청두 | 지식재산국, 세관, 경찰, 특별수사국 | 125명 | 삼성전자, 스킨푸드, 로트리, 애터미, 해피콜 |
| '19.11.19(화) | 태국 | 방콕 | 지식재산국, 세관, 경찰, 특별수사국 | 127명 |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라인프렌즈, MCM, 감성텍스 |
| '19.06.18(화) | 베트남 | 랑선 | 시장관리총국, 세관총국, 지식재산국 | 113명 |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도루코, 씨제이, 삼성전자, 한국인삼공사 |
| 소계 | | | | 566명 | |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공무원 초청연수는 2019년에 총 6회에 걸쳐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6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1-3-4 '19년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내역

| 일 자 | 국가 | IP-DESK | 대상기관 | 참석 공무원수 | 방문기관 |
|---|---|---|---|---|---|
| '19.05.13(월) ~ '19.05.17(금) | 중국 | 베이징 |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 6명 |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CJ |
| | | | 지식산권국 | 5명 | |
| | | | 최고인민법원 | 2명 | |
| | | | 소 계 | 13명 | |
| '19.11.18(월) ~ '19.11.22(금) | 중국 | 베이징 |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 2명 | 특허청 특허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전자 해브앤비(주) |
| | | 광저우 |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 3명 | |
| | | |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 1명 | |
| | | | 소 계 | 6명 | |
| '19.06.17(월) ~ '19.06.21(금) | 태국 | 방콕 | 지식재산국 | 5명 | 특허청 서울본부세관 TIPA 한국저작권보호원 ㈜삼성전자 |
| | | | 경찰청 (경제범죄진압부, 소비자보호부) | 5명 | |
| | | | 세관 | 2명 | |
| | | | 소 계 | 12명 | |
| '19.05.27(월) ~ '19.05.31(금) | 베트남 | 호치민 | 시장관리총국 | 4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CJ ㈜삼성전자 |
| | | | 지식재산국 | 4 | |
| | | | 세관 | 4 | |
| | | | 소 계 | 12명 | |
| '19.09.02(월) ~ '19.09.06(금) | 인도 | 뉴델리 | 지식재산국 | 6명 | 특허청 특허정보진흥센터 서울세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 | 경찰 | 2명 | |
| | | | 소 계 | 8명 | |
| '19.10.14(월) ~ '19.10.17(금) | 인도 네시아 | 자카르타 | 특허청 | 10명 | 특허청 서울세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KT&G |
| | | | 세관 | 6명 | |
| | | | 소 계 | 16명 | |

그리고, 우리기업의 참여가 많은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하여 사업안내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동식 IP-DESK를 총 99회 운영하였다.

표 1-3-5 '19년 이동식 IP-DESK 개최 내역

| 일 자 | 국가 | IP-DESK | 참가행사명 | 참가기업수 |
|---|---|---|---|---|
| '19.01.16(수) | 중국 | 베이징 | 중국 베이징 국제스포츠 용품 전시회 | 8 |
| '19.03.19(화) | 중국 | 베이징 | 한국 안성시 우수기업 무역 상담회 | 8 |
| '19.04.10(수) | 중국 | 베이징 | 한국 대구시 우수기업 무역 상담회 | 8 |
| '19.04.16(화) | 중국 | 베이징 | 중국공작기계전 | 25 |
| '19.05.15(수) | 중국 | 베이징 | Korea ICT Innovation Plaza in Beijing | 26 |
| '19.06.26(수) | 중국 | 베이징 | 전북 농수산식품 시장개척단 상담회 | 9 |
| '19.09.20(금) | 중국 | 베이징 | 베이징 맞춤형 취업박람회 | 4 |
| '19.11.29(금) | 중국 | 베이징 | 2019 충남 중국 3차 시장개척단 | 6 |
| '19.03.12(화) | 중국 | 상하이 | 2019 상하이 춘계 패션 전시회 | 24 |
| '19.05.09(목) | 중국 | 상하이 | 타오바오 파워셀러 소비재판촉전 | 98 |
| '19.10.11(금) | 중국 | 상하이 | 정저우 교역박람회 | 25 |
| '19.04.25(목) | 중국 | 칭다오 | 2019 고양-파주 중국 시장개척단 | 10 |
| '19.06.21(금) | 중국 | 칭다오 | 2019 충남 K-스타트업 중국 무역사절단 | 8 |
| '19.07.09(화) | 중국 | 칭다오 | 2019 논산 중국 무역사절단 | 6 |
| '19.07.19(금) | 중국 | 칭다오 | 제22회 칭다오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 | 12 |
| '19.03.12(화) | 중국 | 광저우 | 제51회 중국(광저우)국제미용박람회 | 160 |
| '19.04.08(월) - 04.10(수) | 중국 | 광저우 | 제31회 광저우 국제완구 및 교육용품 박람회 | 12 |
| '19.04.16(화) - 04.17(수) | 중국 | 광저우 | 제125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춘기 캔톤페어)_1기 | 57 |
| '19.05.03(금) | 중국 | 광저우 | 제125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춘기 캔톤페어)_3기 | 120 |
| '19.05.09(목) | 중국 | 광저우 | 2019 아시아 AR · VR 박람회 | 1 |
| '19.06.26(수) | 중국 | 광저우 | 제16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 20 |
| '19.09.23(월) | 중국 | 광저우 | 2019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포럼 사전 간담회 연계 지재권 교육 | 30 |
| '19.09.24(화) | 중국 | 광저우 | 2019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포럼 연계 상담회 | 30 |
| '19.10.16(수) | 중국 | 광저우 | 제126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추기 캔톤페어)_1기 | 57 |
| '19.11.01(금) | 중국 | 광저우 | 제126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추기 캔톤페어)_3기 | 150 |
| '19.11.13(수) - 11.14(목) | 중국 | 광저우 | 2019 홍콩미용전시회 | 200 |
| '19.04.11(목) | 중국 | 선양 | 2019 대구무역사절단 | 8 |
| '19.06.15(토) | 중국 | 선양 | 2019하얼빈 국제무역투자박람회 | 20 |
| '19.08.23(금) | 중국 | 선양 | 2019 장춘 동북아 박람회 | 30 |
| '19.09.02(월) | 중국 | 선양 | 2019 요녕성 상품전 | 20 |

| 일 자 | 국가 | IP-DESK | 참가행사명 | 참가기업수 |
|---|---|---|---|---|
| '19.09.24(화) | 중국 | 선양 | 2019 하얼빈 수출상담회 | 20 |
| '19.11.28(목) | 중국 | 선양 | 2019년 충북농식품사절단 | 8 |
| '19.06.04(화) | 중국 | 시안 |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 | 12 |
| '19.07.04(화) | 중국 | 시안 | 2019 한중 스마트시티 상담회 | 15 |
| '19.06.11(화) | 중국 | 홍콩 | 2019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 7 |
| '19.08.30(금) | 중국 | 홍콩 | 2019 제주 홍콩 및 동남아 무역사절단 | 10 |
| '19.11.13(화)-11.15 (금)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미용전시회 (Cosmoprof Asia) | 67 |
| '19.05.02(목) | 태국 | 방콕 | 2019 아세안 뷰티 박람회 | 20 |
| '19.05.31(금) | 태국 | 방콕 | 2019 태국 국제 식품 박람회 | 50 |
| '19.09.19(목) | 태국 | 방콕 | 2019 비욘드 뷰티 아세안 방콕 | 50 |
| '19.04.11(목) | 베트남 | 호치민 | 하노이종합엑스포 | 126 |
| '19.05.23(목) | 베트남 | 호치민 | 2019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 143 |
| '19.11.09(토) | 베트남 | 호치민 | 한-베 투자기술협력 포럼 및 상담회 | 100 |
| '19.11.19(화) | 베트남 | 호치민 | 2019 신남방(베트남) 에듀테크 로드쇼 | 20 |
| '19.11.28(목) | 베트남 | 호치민 | G-Fair Korea | 92 |
| '19.01.08(화) | 미국 | LA | 2019 국제 소비재전자 박람회 (CES) | 88 |
| '19.04.08(월) | 미국 | LA | 2019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NAB) | 47 |
| '19.04.10(수) | 미국 | LA | 2019 보안기기 전시회 (ISC WEST) | 29 |
| '19.10.18(금) | 미국 | LA | 2019 실리콘 밸리 이동식 IP-DESK | 6 |
| '19.10.22(화) | 미국 | LA | 2019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 35 |
| '19.11.05(화) | 미국 | LA | 2019 자동차부품 박람회 (AAPEX) | 74 |
| '19.06.06(목) | 미국 | 뉴욕 | 2019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 24 |
| '19.07.24(수) | 미국 | 뉴욕 | 2019 Texworld USA | 14 |
| '19.09.17(화) | 미국 | 뉴욕 | 2019 COTERIE | 29 |
| '19.01.28(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사무용품 전시회 | 66 |
| '19.01.31(목)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뉘른베르크 완구 박람회 | 49 |
| '19.02.04(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뮌헨 스포츠용품 박람회 | 68 |
| '19.02.11(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전시회 | 106 |
| '19.03.11(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냉난방 공조 전시회 | 13 |
| '19.03.12(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쾰른 치과 전시회 | 200 |
| '19.04.01(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하노버 산업 박람회 | 104 |
| '19.04.03(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악기 전시회 | 14 |
| '19.04.08(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뮌헨 건축, 건설, 광산 전시회 | 51 |
| '19.05.21(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산업용 섬유 전시회 | 40 |

| 일 자 | 국가 | IP-DESK | 참가행사명 | 참가기업수 |
|---|---|---|---|---|
| '19.05.22(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슈투트가르트 몰딩 및 자동차 부품 박람회 | 36 |
| '19.06.26(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뒤셀도르프 야금기술 전시회 | 16 |
| '19.08.20(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쾰른 게임스컴 전시회 | 38 |
| '19.09.06(금)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리드리히샤펜 유로바이크 전시회 | 20 |
| '19.09.09(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베를린 가전 및 멀티미디어 박람회 | 76 |
| '19.09.17(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 | 55 |
| '19.09.18(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뒤셀도르프 재활용품 박람회 | 25 |
| '19.09.19(목)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쾰른 유아용품 전시회 | 30 |
| '19.10.07(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쾰른 식품 전시회 | 80 |
| '19.10.17(목)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회 | 40 |
| '19.10.18(금)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뒤셀도르프 고무 박람회 | 43 |
| '19.11.05(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의약품 전시회 | 62 |
| '19.11.06(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뒤셀도르프 산업안전 박람회 | 42 |
| '19.11.18(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 | 270 |
| '19.11.20(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3D 프린팅 전시회 | 14 |
| '19.05.17(금) | 일본 | 도쿄 | KCON JAPAN 2019 | 50 |
| '19.06.25(화) | 일본 | 도쿄 | Baby and Kids Expo | 9 |
| '19.08.11(일) | 일본 | 도쿄 | 한국패션 일본진출 로드쇼 | 24 |
| '19.11.01(금) | 일본 | 도쿄 | 2019 한국 통합사절단 일본 수출 상담회 | 14 |
| '19.01.16(수) | 인도 | 뉴델리 | VGS 연계 뉴델리 상담회 | 11 |
| '19.03.28(목) | 인도 | 뉴델리 | 인천 시장 개척단 | 10 |
| '19.04.29(월) | 인도 | 뉴델리 | 대구 경북 시장 개척단 | 10 |
| '19.05.28(화) | 인도 | 뉴델리 | 안양시 시장 개척단 | 8 |
| '19.06.27(목) | 인도 | 뉴델리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링 | 20 |
| '19.07.12(금) | 인도 | 뉴델리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쉽 | 10 |
| '19.02.19(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전남 할랄식품 무역 사절단 | 9 |
| '19.02.28(목)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대구 동남아 무역 사절단 | 9 |
| '19.03.19(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경기도 FTA 활용 사절단 | 10 |
| '19.04.16(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충남 무역 사절단 | 8 |
| '19.06.21(목)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대구 & 경북 통합 사절단 | 8 |
| '19.07.02(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충북 & 강원 통합 사절단 | 11 |
| '19.07.17(수)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인도워터 전시회 연계 | 10 |
| '19.09.03(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포천 & 구미 무역 사절단 | 18 |
| '19.09.23(월)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동남권 무역 사절단 | 7 |
| '19.11.07(목) -08(금)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Jakarta International Premium 2019 | 143 |

또한, 해외 현지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현지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유사시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설명회를 총 57회 개최하였다.

표 1-3-6 '19년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내역

| 일자 | 국가 | IP-DESK | 개최(참가) 행사명 | 세미나 및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 인원 |
|---|---|---|---|---|---|
| '19.06.19(수)-06.21(금) | 중국 | 베이징 상하이 |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보호 교육반 | 중국 지식산권국, 상해 및 유명 기업과 서비스 기구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국의 〈반부당경쟁법〉개정내용, 소송 등 실무교육 실시 | 50 |
| '19.09.02(월) | 중국 | 칭다오 | 지방중기 글로벌 수출상담회 연계 지재권 보호 설명회 | 지방중기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법 개정안 및 IP-DESK 사업 소개 | 47 |
| '19.10.30(수) | 중국 | 칭다오 | 현지기업 IP 지원사업 홍보 (코칭살롱간담회) |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IP 지원사업 홍보 | 10 |
| '19.11.15(금) | 중국 | 칭다오 | 중국 신상표법 활용전략 및 수출입 통관실무 설명회 | 칭다오수입박람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법 활용전략 및 IP-DESK 지원사업 홍보 | 140 |
| '19.01.25(금) | 중국 | 광저우 |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 지원 설명회(동관) | 하노이 무역관 및 상하이 무역관과 협력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관련 규정 및 베트남 시장 이야기를 듣는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 55 |
| '19.06.28(금) | 중국 | 광저우 |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 지원 설명회(선전) | 광둥성 선전 진출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최근 빈번하게 바뀌는 법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자 선전무역관 및 선전한인회와 '교민을 위한 특강'이라는 주제의 설명회 공동 개최 | 70 |
| '19.07.11(목) | 중국 | 광저우 | 중국 선전 화창베이 인큐베이팅 입주기업 대상 지재권 설명회 | 중국 선전 화창베이 인큐베이팅 입주기업 대상으로 중국의 지재권 제도 및 정책 관련 주제의 소규모 설명회 개최 | 10 |
| '19.09.18(수) | 중국 | 광저우 | 中 광둥성 진출기업 지재권 간담회 | 주광저우총영사관과 협력하여 광둥성 진출 한국기업과 광둥성 지식재산권 법률 집행부서인 시장감독관리국이 참석한 지재권 간담회 개최 | 21 |
| '19.11.13(수) | 중국 | 광저우 | 2019 홍콩미용전시회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연계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 홍콩미용전시회 사전간담회와 연계 실시하여 한국관 참가기업 대상 중국본토 및 홍콩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및 대응력 향상 | 200 |
| '19.11.22(금) | 중국 | 광저우 |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 지원 설명회(광저우) | 중국의 지재권 관련 이슈 및 사례 공유, 그리고 기업 내부 정보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계정 관리 솔루션과 IT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법률적 해석 및 가이드라인(안) 소개 | 26 |

| 일자 | 국가 | IP-DESK | 개최(참가) 행사명 | 세미나 및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 인원 |
|---|---|---|---|---|---|
| '19.11.29(금) | 중국 | 광저우 | 中 광둥성 진출기업 소규모 지재권 세미나 (선전) | 주광저우총영사관과 협력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원 효과창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핵심 주제로의 세미나 개최 | 22 |
| '19.11.14(월) | 중국 | 시안 | 투자기업 경영지원세미나 | 중국 지재권 관련 정책 변화 동향 및 놓치기 쉬운 지재권/경영비밀 관련 유의사항 | 200 |
| 19.04.19(금)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가정용품 전시회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홍콩 지재권제도 및 IP-DESK 지원사업 소개 | 21 |
| 19.04.26(금)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홍콩 지재권제도 및 IP-DESK 지원사업 소개 | 38 |
| 19.08.21(수) | 중국 | 홍콩 |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 신규 도입 특허제도, 상표권 분쟁 및 보호전략, 홍콩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IP-DESK 지원사업 소개 | 46 |
| 19.09.18(수)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주얼리 & 젬페어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홍콩 지재권제도 및 IP-DESK 지원사업 소개 | 37 |
| 19.10.12(토)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추계 전자전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홍콩 지재권제도 및 IP-DESK 지원사업 소개 | 36 |
| 19.10.26(토) | 중국 | 홍콩 | 2019 홍콩 추계 조명전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홍콩 지재권제도 및 IP-DESK 지원사업 소개 | 18 |
| 19.11.12(화) | 중국 | 홍콩 | 2019 홍콩미용전시회 연계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 | 중국본토 및 홍콩 지재권제도 안내 및 브랜드 중국진출시 상표권 보호 전략 소개 | 200 |
| '19.11.18(월) | 베트남 | 호치민 | 에듀테크 로드쇼 연계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지재권 보호방안, 사례, IP-Desk 지원사업 설명 | 60 |
| '19.12..03(화) | 베트남 | 호치민 | 베트남 한류 방송콘텐츠 '러브게임' 연계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 SBS가 베트남으로 수출, 제작하는 첫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러브게임' 연계 PPL 쇼케이스 참가기업 대상, 베트남 지재권 보호방안, 사례 및 IP-DESK 지원사업 설명 | 30 |
| '19.01.07(월) | 미국 | LA | 2019 CES 사전간담회 | 미국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및 IP-DESK 비용지원 사업소개 | 200 |
| '19.03.23(토) | 미국 | LA | LA IP-DESK 2019 1분기 소규모 지재권 세미나 | 미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이해와 기업 사례별로 알아보는 지재권 주의사항 | 100 |

| 일자 | 국가 | IP-DESK | 개최(참가) 행사명 | 세미나 및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 인원 |
|---|---|---|---|---|---|
| '19.04.07(일) | 미국 | LA | 2019 NAB 사전간담회 | 한국관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시회 분쟁 예방 안내, 지재권 동향 및 IP-DESK 비용지원 사업소개 | 20 |
| '19.04.09(화) | 미국 | LA | 2019 ISC WEST 사전간담회 | 한국관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분쟁 예방 안내, 지재권 동향 및 IP-DESK 비용지원 사업소개 | 80 |
| '19.06.13(목) | 미국 | LA | LA IP-DESK 2019 2분기 소규모 지재권 세미나 | 미국 진출의 첫 단계인 수출 인큐베이터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 들어갈 주요 내용과 계약서상의 지식재산권 주의사항 강의 | 18 |
| '19.06.28(금) | 미국 | LA | 코트라 북미 직원 대상 지재권 워크샵 | 북미 지역 지재권 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지식재산권의 기본사항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관, 전시회, 온라인, 특허소송에서의 주의사항 강의 | 28 |
| '19.09.22(일) | 미국 | LA | LA IP-DESK 2019 3분기 소규모 지재권 세미나 | 대전 충남 북미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미국 지식재산권 기본사항 및 기업 사례별로 알아보는 유의사항 강의 | 15 |
| '19.10.17(목) | 미국 | LA | 2019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이해와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전략 안내,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특허 소송의 전략 그리고 소송비용 투자의 기본 사항 및 지재권 분쟁에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 | 250 |
| '19.10.21(월) | 미국 | LA | 2019 MWC 사전간담회 |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및 지재권 분쟁 사례 안내 | 35 |
| '19.11.04(월) | 미국 | LA | LA IP-DESK 2019 4분기 소규모 지재권 세미나 | 미국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기본 사항 및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9 |
| '19.11.04(월) | 미국 | LA | 2019 AAPEX 사전간담회 | 전시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및 대응 안내,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 및 IP-DESK 사업 안내 | 100 |
| '19.04.15(목) | 미국 | 뉴욕 | 2019년 1차 법률상담회 | 지식재산법·특허, 회사법·규제, 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와 기업별 30분간 무료 상담 진행 | 15 |
| '19.05.01(수) | 미국 | 뉴욕 | 뉴미디어 마케팅 기법 활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세미나 | 소셜 미디어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애드테크, 네이티브 애드 등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신규 마케팅기법을 현행 광고법 상 적법하게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미국 상표법 기초 안내를 통해 효과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 수립 및 분쟁 예방 도모 | 65 |
| '19.06.01(토) | 미국 | 뉴욕 |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 및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와 상담회 |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RESI (Redefining Early Stage Investments) Philadelphia 2019 콘퍼런스와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19 전시회 참가 기업 10개사의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특허 출원 및 지식재산 보호 전략 안내. 세미나 종료 후 1:1 지식재산권 상담 제공 | 25 |

| 일자 | 국가 | IP-DESK | 개최(참가) 행사명 | 세미나 및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 인원 |
|---|---|---|---|---|---|
| '19.08.29(목) | 미국 | 뉴욕 | 미국 지식재산권 개요 및 관리 실무 세미나 |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 관리 및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 세미나 종료 후 1:1 법률 상담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자문 제공. | 15 |
| '19.09.26(목) | 미국 | 뉴욕 | 미국 화장품산업 관련 법규 및 지식재산법 세미나 | K-Beauty in New York 사업 참가 화장품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산업에 적용되는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공정포장표시법, 식품의약청(FDA) 규정, 수입·통관 시 FDA 규제 리스크, 민사 소송 리스크, 지식재산법에 대해 안내 | 30 |
| '19.10.04(금) | 미국 | 뉴욕 | 미국 미디어 콘텐츠 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전략 워크숍 | New York Comic Con 참가 웹툰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방송·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최신 동향, 미디어 콘텐츠 권리의 취득·개발·관리, 현지 계약 관행, 원천 콘텐츠 판매 전략,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등 안내 | 8 |
| '19.10.24(목) | 미국 | 뉴욕 | Korean Startup Summit 연계 IP 및 스타트업 운영 실무 세미나 및 소그룹 워크숍 | KOTRA, 뉴욕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KSE(Korean Startups & Entrepreneurs)가 공동 주최하는 Korean Startup Summit 행사와 연계하여, 뉴욕 시장에 진출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지식재산법과 법인 신설 및 운영에 관한 회사법, 고용법, 정보관리법 관련 내용을 각각 세미나와 소그룹 워크숍 형태로 제공 | 80 |
| '19.11.01(금) | 미국 | 뉴욕 | 블록체인 지식재산 콘퍼런스 | 뉴욕 일대의 블록체인·정보보안·핀테크·암호화폐 관련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인큐베이터 기관, 뉴욕시 관계자, 지식재산법 및 증권법 규제 변호사를 연사·패널토론자로 초청하여 업계 동향을 조망하고, 블록체인 및 제반 분야 관련 기술을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선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대규모 콘퍼런스 개최.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 150 |
| '19.11.12(화) | 미국 | 뉴욕 | 보스턴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법률 워크숍 및 멘토링 | 미국 진출 예정 생명과학·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 8개사를 대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과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최. 특허 출원 전략, FDA 규정 및 수입·통관 시 규제 리스크, 투자 유치 전략, 지식재산 지원사업 각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멘토링 세션 진행 | 10 |
| '19.11.13(수) | 미국 | 뉴욕 | 보스턴 지식재산권 상담회 및 오찬 간담회 | 보스턴 일대 기업들을 위한 출장 상담회 추진. 현지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기업들의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 제시에 일조.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견 수렴 | 10 |

| 일자 | 국가 | IP-DESK | 개최(참가) 행사명 | 세미나 및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 인원 |
|---|---|---|---|---|---|
| '19.12.06(금) | 미국 | 뉴욕 | 2019년 연말 자문단 회의 | IP-DESK 2019년도 활동 리뷰, 2020년도 신규 사업 소개, 자문단 협조 요청사항 전달, 사업 의견 수렴 | 15 |
| '19.03.11(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퀼른 치과전시회 사전간담회 | 독일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 200 |
| '19.05.13(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산업용 섬유 전시회 사전간담회 | 독일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 35 |
| '19.05.23(목)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강서구 무역사절단 소규모 설명회 | 강서구 무역사절단 참가자 대상,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 독일 및 유럽 지재권 출원 및 등록제도 및 IP-DESK 지원 사업 소개 | 10 |
| '19.09.18(수)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퀼른 유아 용품전 사전간담회 | 독일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 35 |
| '19.11.04(월)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9 프랑크푸르트 의약품 전시회 사전간담회 | 독일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 60 |
| '19.06.25(화) | 일본 | 도쿄 | Baby & Kids Expo 사전간담회 | 우리 기업의 일본 출원에 관련된 지재 현황 전반 및 유의점 및 IP-DESK 사업설명 | 23 |
| '19.08.09(금) | 일본 | 도쿄 | 한국패션 일본진출 로드쇼 사전 간담회 | 일본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법률 의견서 작성에 대한 설명 및 안내 | 43 |
| '19.10.28(월) | 일본 | 도쿄 | Innovation Leaders Summit 사전간담회 | 일본내 지식 재산 활동에 관련된 현황 전반 | 40 |
| '19.10.31(목) | 일본 | 도쿄 | 2019 한국 통합사절단 일본 수출 상담회 사전간담회 | 우리상표 보호 방안에 대한 강의 및 기업별 지재권 상담 | 27 |
| '19.02.12(화) | 인도 | 뉴델리 | 암다바드 IP-DESK 설명회 | 암다바드 소재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 IP-DESK 소개 및 지원 사업 안내 | 4 |
| '19.06.26(수) | 인도 | 뉴델리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링 | 비즈니스 파트너링 참가기업 대상으로 IP-DESK 사업 소개 및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 | 26 |
| '19.07.12(금) | 인도 | 뉴델리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쉽 | IP-DESK 지원 사업 소개 및 상표의 중요성, 우리기업의 침해사례 공유 | 13 |
| '19.10.15(화) | 인도 | 뉴델리 | 지방 거점 도시 설명회 (벵갈루루) | 벵갈루루 소재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 및 인도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11 |
| '19.11.19(화) | 인도 | 뉴델리 | 지방 거점 도시 설명회 (뭄바이) | 인도 지재권 동향 및 침해사례소개, IP-DESK 비용지원 사업 홍보 | 40 |

제 2 부

# IP-DESK별 사업현황

Ⅰ. 베이징 IP-DES
Ⅱ. 상하이 IP-DESK
Ⅲ. 칭다오 IP-DESK
Ⅳ. 광저우 IP-DESK
Ⅴ. 선양 IP-DESK
Ⅵ. 시안 IP-DESK
Ⅶ. 홍콩 IP-DESK
Ⅷ. 방콕 IP-DESK
Ⅸ. 호치민 IP-DESK
Ⅹ. 로스앤젤레스 IP-DESK
Ⅺ. 뉴욕 IP-DESK
Ⅻ. 프랑크푸르트 IP-DESK
XIII. 도쿄 IP-DESK
XIV. 뉴델리 IP-DESK
XV. 자카르타 IP-DESK

I

# 베이징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베이징 IP-DESK는 2006년 4월, IP-DESK 사업 시작과 함께 베이징무역관에 개소하였다. 베이징, 텐진,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신장·청해자치구를 관할지역으로 20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3명, 총 4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1 인력 현황 : 총 4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윤보라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한춘화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변호사 | 전담인력 |
| 왕루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왕리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표 2-1-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베이징 무역관 內 |
| 주 소 | 베이징시 조양구 포스코센터 A-29 |
| 연락처 | +86-10-6410-6162 |

표 2-1-3 협력 로펌 : 총 4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CROWN & RIIGHT | 베이징 | 64명 | 최정 변리사 |
| MING & SURE | 베이징 | 165명 | 송령 변호사 |
| GREENTREE | 베이징 | 30명 | 전성주 변리사 |
| LIFANG & PARTNERS | 베이징 | 192명 | 김춘국 변호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가. 중국 경제 동향

#### ○ (통상) 경기 전반에 영향 미친 무역마찰 장기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정책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은 아시아 외환위기, 9.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 또한 글로벌 지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중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무역구조 개선 등 협상난제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 투자, 소비, 교역, 실업 등 실물 분야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정책) 대외개방 지속 및 내수진작 확대

중국은 경기하방을 막기 위해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장진입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다. 외자기업의 중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新외상투자법이 2020년 발효됐으며 대외개방 심화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장려 산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제조업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중서부 지역 산업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등 다자간 경제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주도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진행중이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야간 경제 활성화 등 20개 소비진작 정책이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 잠재력을 확충하고 있다.

#### ○ (산업) 공급측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양적 조절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중이다.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에너지차, 반도체, 인터넷+, 스타트업 등 정부주도의 신산업 육성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나.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중국 지재권 동향

2019년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극히 중요한 해였다. 이 해에,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강령적인 문서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상표법 개정과 시행을 완료하여, 권리 침해와 위법 원가가 대폭 인상되었고, 특허상표의 담보금융 총액이 1500억 위안 돌파, 중소기업 융자 난제 더 해결하였다. 지식재산권 수출입 총액은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 중 수출액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와 비즈니스 환경의 순위는 각각 14위와 31위로 올라 대외 개방을 더 잘 지탱하고 있다.

## ○ 법규 개정동향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허 등 지재권 사건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

지재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통일화하고, 지재권 사법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며, 기술혁신에 최적화된 법치 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을 통한 발전전략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결정하고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 중국 2019년 양회 지재권 동향 보고(상표법 제4차 개정)

중국 2019년 전국 양회에서 리커창 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제4차〈상표법〉개정안이며 개정조항은 2019년1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본 상표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1.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후과를 명확이 하였다. ① 상표국에서 출원심사단계에서 기각한다. ②초보적 심사 합격후의 공고기간에는 누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성공적으로 등록된 상표라도 누구나“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을 근거로 상표 무효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2. “악의적 상표 전용권 침범”에 대한 징벌적 배상 금액을 인상시켰다. 손해액을 확인한 후 손해액의 1배~5배로 징벌적 배상금액수를 확정한다.
3. 법정 배상금 액수를 증가하였다. 법정 배상금액은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시켰다.
4. “소각”조항을 증가하였다. ① 권리인의 청구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은 침권 상품 및 침권 상품에 쓰이는 재료, 도구를 소각하고 상업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이외에도 남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에 대해서 도용된 상표 표시만 제거한 후에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①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에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② 악의적인 상표소송은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③ 수권을 받은 상표출원 서비스 이외의 상표 출원은 금지되고, 대리기관에서 악의적 등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해당 위탁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보적 심사 합격 후의 공개 단계에서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선고를 받을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설립

2018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온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2019년1월1일 베이징에서 현판식 행사를 통해 설립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주요 특허 등 전문 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행정 상소 사건을 심사 처리한다. 구체적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이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1심민사사건 판결과 재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사건;
2.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의 수권과 확권에 대한 1심 행정사건의 판결, 재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사건;
3.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이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행정처벌 등에 대한 1심 행정사건판결, 재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사건;
4. 전국 범위내의 중대한, 복잡한 본조항 제1, 2 ,3 항의 1심 민사, 행정사건;
5. 본조항 제1, 2, 3 항의 1심 사건의 법률 효력이 확정된 판결, 재정, 합의서를 법에 의해 제기한 재심, 항소 등 심판 감독 절차에 적용되는 사건;
6. 본조항 제1, 2, 3 항의 1심 사건의 관할권쟁의와 벌금, 구류에 재의를 신청하거나 심사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건;
7.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여기는 기타사건.

2019년1월1일 전에 1심 판결, 재정 혹은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상소 혹은 재의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심리한 인민법원의 상급 인민법원에서 수리한다. 2019년1월1일 이후의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상소나 재의신청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한 것은, 지식재산권 재판기준을 통일하고,지식재산권 판결척도가 불일치한 문제를 해결하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등 과학기술혁신을 저약하는 체제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배상제도를 보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확히 적용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 - 중국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 (2019.9.1. 시행)

국가 지식산권국은 2018.11.26. 전면 개통된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상표 전자출원 이용률 제고, 상표 전자출원 행위 규범화, 상표 전자출원의 요구사항 명확화,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윤영 보장 등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와 관련 개념, 전자출원 제출의 주의사항, 전자출원 관련 요구사항, 전자서류 송달 규정 등을 포함한다.

### - 〈특허분야 심각한 신용상실 연합징계대상 명단관리방법(2019.12.1. 시범 시행)〉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분야 신용체계 건설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특허) 분야의 심각한 신용상실 주체 연합징계에 관한 비망록〉에 근거하여, 〈특허분야 명단관리방법〉을 제정한 것으로 발표한다. 주용 내용은 명단관리, 연합징계대상,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 행위판단, 명단등록, 연합징계, 명단 제외, 신용회복 등을 포함하는 총 5장 27개 조항으로 구성한다.

###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2019.12.1. 시행)〉

상표출원의 실질적 필요 요건, 성실신용원칙 준수 및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대리기관 책임, 판단요소, 처벌규정, 관리감독 등을 포함하는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한다.

### - 〈지재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중국은 지재권보호가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큰 자극으로 평가하면서, 당중앙과 국무원의 지재권보호 관한 정책조치의 실천 및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재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한 것으로 발표한다. 주용 내용은 총 7개 부분, 23조로 구성되어 있고, 지재권의 엄격한 보호, 큰 범위의 보호, 신속한 보호, 동등한 보호와 지재권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이 강조한다.

## ○ 중국 연도별 지재권 출원현황

중국의 2019년 발명특허출원은 140.1만 건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고, 상표등록출원은 783.7만 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된다. 중국은 2019년 주요 통계의 특징을 지재권 원천 보호 능력 증대, 지재권 정책의 시장수요 부합, 지재권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원한다.

표 2-1-4 중국 연도별/권리별 특허 및 상표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특 허 | 825,136 | 928,177 | 1,101,864 | 1,338,503 | 1,381,594 | 1,542,002 | 1,401,000 |
| 실용신안 | 892,362 | 868,511 | 1,127,577 | 1,475,977 | 1,687,593 | 2,072,311 | 2,268,000 |
| 디자인 | 659,563 | 564,555 | 569,059 | 650,344 | 628,658 | 708,799 | 712,000 |
| 상 표 | 1,881,546 | 2,285,358 | 2,876,408 | 3,691,000 | 5,748,000 | 7,371,000 | 7,837,000 |
| 합 계 | 4,258,607 | 4,646,601 | 5,674,500 | 7,155,824 | 9,445,845 | 11,694,112 | 12,218,000 |

자료원 : 국가지식산권국 공식사이트 "2019년1-12월 지재권 주요통계보고서"

중국의 2019년 발명특허출원은 140.1만 건(2018년 154.2만 건 대비 9.1% 감소)으로 5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였으나, 중국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 및 개인 출원의 감소로 출원량이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한다(2017년 138.2만 건). 2019년 중국은 각 지역 심사협력센터 심사관 출원을 통해 심사처리 건수를 증가시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심사관의 심사경험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심사품질 문제로 심판건수를 증가한다. 외국인의 2019년 발명특허출원(15.7만 건) 및 상표출원(25.5만 건)은 각각 전년 대비 6.0% 및 4.7%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018년에 비해 축소된다.

### ○ 중국의 국제 특허 및 상표 출원 현황

2019년도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은 6.1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5.7만 건이 중국 국내출원이다. PCT 국제출원 1000건 이상 성(시)은 광둥성(2.47만 건), 북경시(0.72만 건), 장수성(0.66만 건), 상해시(0.32만 건), 절강성(0.30만 건), 산동성(0.29만 건), 후베이성(0.21만 건)이다.

2019년 중국 상표 등록출원은 783.7만 건, 상표등록은 640.6만 건(중국 국내 상표등록 617.8만 건)이며, 2019년 말까지 중국의 유효한 등록상표 건수는 2,521.9만 건(동기대비 28.9% 증가), 4.9개 시장 주체당 상표는 1건 보유한다. 2019년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건수는 6,491건, 2019년 말까지 중국출원인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건수는 3.8만 건이다. 2019년 상표등록출원 심사건수는 825.3만 건, 평균 심사주기는 4.5개월이다. 2019년 상표 이의신청 접수는 14.4만 건, 심사처리는 9.0만 건이다. 2019년 상표심판(평심) 청구는 36.1만 건, 심결은 33.7만 건이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선출원/등록 상표로 인한 거절에 따른 대응방안 문의 및 업무지원 수요 증가

상표출원 사전 유사상표 검색에서 발견된 동일한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대응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등록 심사 거절 후 재심, 무효심판, 취소 신청 등에 대한 연계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 부정경쟁으로 인한 피해 속출

최근 우리기업의 제품 특유의 포장을 무단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마케팅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류 편승 중국 유통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기업이 전 세계에 매장을 확대해나가면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중국기업의 행위는 실제 등록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재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으로 대응이 불가하고, 부정경쟁방지법, 광고법, 제품질량법 등의 해당

규정에서 법적근거를 찾아야 하며, 중국기업 또한 지재권침해에 대한 책임회피 의식이 높다보니 증거 수집을 통해 권리침해의 성립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 ○ 온라인 모조품 조사 및 신고의 어려움

최근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 내에 중국 소비자와 접촉되면서, 중국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대리 회사를 통해 수시, 지속적으로 조사-신고-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재권 관리, 모조품 감정, 지재권 법률 대응 등 방면에서 애로사항을 가진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규모, 초기진출 기업에 대해 각 지역 IP-DESK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권리 보호, 침해 대응에 관한 설명회 등 지재권 대응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뢰도 있는 온라인 침해조사 대행기관을 연결하여 온라인 모조품 신고 및 단속지원도 이루어진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3 | 383 | 47 | 0 | 2 | 4 (2) | 28 | 62 |
| 2014 | 354 | 71 | 0 | 2 | 6 (1) | 37 | 51 |
| 2015 | 330 | 113 | 0 | 2 | 5 (1) | 7 | 19 |
| 2016 | 417 | 217 | 0 | 0 | 3 (3) | 18 | 28 |
| 2017 | 371 | 97 | 2 | 1 | 3 | 6 | 38 |
| 2018 | 592 | 130 | 0 | 1 | 5 | 16 | 20 |
| 2019 | 377 | 134 | 0 | 4 | 1 | 21 | 4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중국 지재권 관련 인적 네트워크 강화

중국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베이징 IP-DESK는 2019년 5월, 11월에 중국 지재권 공무원 방한연수 행사를 추진했다. 시장관독관리총국, 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북경시 지식산권국 등 기관의 지재권 공무원 총 15명이 방한해 특허청, 지재권법원 및 유관협회를 방문하고 한국의 기업과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징둥(JD.com) 온라인 쇼핑몰 내 유통 중인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지재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징둥(JD.com) 법무팀간 공조체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7월 징둥(JD.com) 내 한국 상품 운영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조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LG생활건강, 보령 메디앙스, 미샤, 아모레 퍼시픽, 삼성전자, 갤러리에이엠 등 6개사의 지재권 담당자가 징둥(JD.com) 법무팀 모조품 감독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 및 모조품 식별 요령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한국기업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징둥(JD.com) 내 한국 상품 운영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징둥(JD.com)의 모조품 단속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징둥(JD.com) 측도 향후 정기적으로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징둥(JD.com)의 '모조품 단속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IP-DESK는 징둥(JD.com) 뿐만 아니라 샤오미(Xiaomi) 법무팀과도 새로운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 이동IP-DESK 강화

2019년 베이징 IP-DESK는 총 8회 이동 데스크를 운영하였으며, 94개 기업에 지재권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 NO. | 날짜 | 행사명 | 상담건수 |
|---|---|---|---|
| 1 | 2019.01.16 | 중국 베이징 국제스포츠 용품 전시회 | 8 |
| 2 | 2019.03.19 | 한국 안성시 우수기업 무역 상담회 | 8 |
| 3 | 2019.04.10 | 한국 대구시 우수기업 무역 상담회 | 8 |
| 4 | 2019.04.16 | 중국공작기계전 | 25 |
| 5 | 2019.05.15 | Korea ICT Innovation Plaza in Beijing | 26 |
| 6 | 2019.06.26 | 전북 농수산식품 시장개척단 상담회 | 9 |
| 7 | 2019.09.20 | 베이징 맞춤형 취업박람회 | 4 |
| 8 | 2019.11.29 | 한국 충남 우수기업 무역 상담회 | 6 |

## 4. 우수사례

### ○ 상표TM로고 상표 주의사항 지원

'TM(TradeMark)'은 신청 중인 상표라는 뜻으로 중국 상표국에 상표출원 신청 후 수리통지서를 받아야만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법률상 'TM' 로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TM은 '중국 상표국에 상표 신청했으며 접수처리중'이라는 뜻으로 통한다.

'TM'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상표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광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문의에 대해 베이징 IP-Desk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문을 제공했다.

중국 광고법 제 12조 광고중 특허상품 또는 특허방법에 관련된 경우 반드시 특허번호 또는 특허종류를 표시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미등록 특허라면 권리가 유효한 특허라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즉, 출원중인 특허나 종결 및 무효화 된 특허는 광고가 금지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 수리되지 않은 특허권의 특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TM의 경우 상표를 뜻하기 때문에 출원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산권국에 이미 출원 완료한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상표를 사용할 땐 상표법 뿐만 아니라 광고법, 반부당경쟁법 등 관련 법조항의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해야한다. TM로고의 경우 상표출원 여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 광고법 제12조 광고중 특허상품 또는 특허방법과 연관된 경우 반드시 특허번호 또는 특허종류를 표시해해야한다.

### ○ 상표, 디자인 출원과 관련한 효과적인 IP-DESK 사업 활용방안 제시

우리기업 B사에서 중국과 일본에 각각 상표권 3건과 디자인권 3건을 출원 준비 중이고, 출원 예산으로 1,800만원을 준비하였다. KOTRA 베이징무역관 주최행사에 참석하던 중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 제품브랜드, 회사명칭 등에 대해 어떻게 상표를 출원해야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베이징 IP-DESK에서는 하기와 같이 안내하였으며, B사에서는 IP-DESK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중국 및 일본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비용 절감 예정하였고, 귀국 후 당사 제품 브랜드 'sto＊＊'에 대하여 바로 중국에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① 중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고 유통이 될 제품의 브랜드 'sto＊＊'를 상표로 출원하여야만 제품이 중국시장 진출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② 이미 행사에 참석하여, 제품 상표가 중국 바이어들에게 노출되었으므로 '악의적 선등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브랜드 'sto＊＊'는 즉시 출원할 것을 건의하였다.

③ 상표 'sto＊＊'는 중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 '입소문'전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에 발음이

비슷한 중문 브랜드 명칭을 작성하여 상표출원 할 것을 건의하였다.

④ 회사명칭은 제품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기에 중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지만 사전보호 차원에서, 회사 영문명칭과 한국어 명칭으로 상표출원 할 것을 건의하였다.

⑤ IP-DESK 사업을 활용하여 상표권, 디자인권을 출원하면 비용부담을 많이 감소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권리를 출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IP-DESK 사업을 이용하면 당사가 계획한 상표권 3건, 디자인권 3건의 중국 출원의 기업 부담비용은 200만원 미만이고, 일본에서도 상표권과 디자인권 출원도 도쿄 IP-DESK를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여 계획한 총 출원 예산 1,800만원 중 약 50%를 절약할 수 있었다.

## 5. 사진자료

한-중-일 상표회의(3월)

CNIPA 한-중-일 기업간담회(3월)

공무원 초청 연수 (5월)

공무원 초청 연수 (5월)

짐둥 모조품 설명회 (7월)

짐둥 모조품 설명회 (7월)

이동 IP-DESK (5월)

이동 IP-DESK (7월)

IPMS 학술교류회 (7월)

CNIPA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교류회 (7월)

중국 지신재산권출판사 교류 (8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 보호센터 교류회 (9월)

중화상표협회 업무교류회 (10월)

공무원 초청 연수 (11월)

공무원 초청 연수 (11월)

IPMS-&CKIPA 합동 세미나 (12월)

Ⅱ

# 상하이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상하이 IP-DESK는 2006년 4월, 중국 지역 IP-DESK 사업 시작과 함께 중국내 3개 무역관(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에 개소하였다. 상하이 IP-DESK는 상하이시, 절강성, 강소성, 안휘성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으며, 20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2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역할은 (1)상표,디자인 출원에 따른 비용지원 사업 및 (2)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체 사업운영(한국 유명상표 위조 상품 식별세미나, 현지 지재권보호 설명회, 현지 IP 협의체 & 협력채널 구축, 화동지역 지재권보호 공무원 연수, 이동식 IP-DESK 운영) 등이 있다.

표 2-2-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김다인 | KOTRA (과장) | 한국 | 본사 파견 | 관리인력 |
| 유아남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김명복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표 2-2-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상하이 무역관 內 |
| 주 소 | 上海市 兴义路 8号 万都中心 3110室 200336 |
| 연락처 | TEL.+86-21-5108-8771, FAX +86-21-6219-6015 |

표 2-2-3 협력 로펌 : 총 8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Shanghai Keycreate Intellectual Property Ltd (上海凯创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상하이 | 54명 | 심상희 변리사 |
| Shanghai Brilliant Law Office (上海卓冉律师事务所 ) | 상하이 | 25명 | 손해림 변호사 |
| Shanghai Beshining Law Office (上海弼兴律师事务所) | 상하이 | 150명 | 설기 변호사 |
| DUAN & DUAN LAWFIRM (上海段和段律师事务所) | 상하이 | 400명 | 현진연 변호사 |

| 침해조사 대행회사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Bett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ervice Company (广州纵强知识产权服务有限公司) | 광주 | 25명 | 덩영시 (한국부 매니저) |
| Shanghai J&J IP CONSULTING CO., LTD (上海卓渠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상하이 | 4명 | 김단 (한국부 팀장)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상하이시 경제 개괄

상하이는 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무역항이자 생산기지로 중국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제2의 개혁개방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1984. 4 : 연해지역 14개 개방도시에 포함되며 경제개발 본격화
* 1990. 4 : 푸동(浦東)개발계획 국가급 프로젝트로 결정
* 2013. 9 :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최초 설립

특히 세계적 물류 중심지로 상하이항 화물물동량 및 20ft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1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자리매김 하였다.

표 2-2-4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 및 증가세

| 구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6 |
|---|---|---|---|---|---|---|---|
| 증가세 | 7.8 | 7.6 | 3.6 | 0.1 | 8.2 | 4.4 | 5.0 |
| TEU(20ft) 컨테이너 처리량 | 3,362만 | 3,528만 | 3,654만 | 3,713만 | 3,682만 | 4,201만 | 2,154만 |

* (비교) 부산항 TEU 처리량 : (角) 1,868만 TEU ('15) 968만4천 TEU ('18) 2,159만 TEU

2019년 7월 기준 상하이 소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는 696개(104개 아태 총괄본부), 글로벌기업의 R&D센터 450개가 있으며, 기업 사례로는 GM, 폭스바겐, BOSCH(자동차), GE, SIEMENS(기계플랜트), HITACHI(전기), 바이엘(의약품)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글로벌 기업을 아우른다.

또한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2019년 상반기 3차 산업의 GDP 비중은 71.2%, 1조 1,673억 위안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관광, 운수, 소매판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여러 방면에서 연쇄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차 산업 비중 : ('16년) 70.5% → ('17년) 69.0% → ('18) 69.9% → ('19.6) 71.2%

## ▣ 상하이시 주요경제 지표

상하이 시의 GDP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한 1조 6,410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1차 산업 9.2% 하락(36.84억 위안), 2차 산업 1.6% 하락(4,699억 위안), 3차 산업 9.1% 증가(1조 1,673억 위안) 수치이며, 특히 3차 산업 업종별 성장률은 금융업 13.0%, 도소매 판매업 1.9%, 교통운수·창고·우편산업 3.9%, 부동산 9.9%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 부문에서는 수출입 구조 개선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반무역은 가공무역보다 발전추세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8% 하락한 1.59조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수출은 6,344억 위안(-0.4%), 수입은 9,520억 위안(-2.7%)으로 무역적자 3,177억 위안 기록

소득 부문에서 도시 기준 소득, 지출 모두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294위안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37,174위안, 농촌 주민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9,007위안을 보였다.

* 1인당 소득 상위 지역 : 1. 상하이 2. 베이징 3. 저장 4. 톈진 5. 장쑤 ('19년 상반기)

상하이시 세관의 통계[1]에 의하면 2019년 상하이시 화물 수출입 총액은 34,046.82억 위안이며

1) 上海人民政府新闻办公室 http://www.shio.gov.cn/sh/xwb/n790/n792/n1114/n1115/u1ai23245.html

2018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수출총액은 13,720.91억 위안으로 0.4% 증가하였으며 수입총액은 20325.91억위안으로 0.1% 감소하였다. 2019년 상하이시 외상(外商) 직접 투자 계약 프로젝트는 6,800건이며 2018년 대비 21.5% 증가하였다. 외상직접투자 금액으로 보면 502.53억 달러로 7.1% 증가하였고, 실제로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190.48억 달러로 10.1%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하이시의 대외개방과 관련된 정책동향은 중국 정부의 2020.1.1.부 실시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에 의거 시정부 차원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의 진일보한 외국인투자유치 의견"[2]에서 진일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들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제조장비, 생물의학, 고성능 의료기기, 신에너지와 지능형자동차, 항공우주, 해양공정장비, 최첨단 에너지 설비, 신소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산업과, R&D, 인증, 공급망관리, 전자상거래 등 생산성있는 서비스산업 중점분야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이 발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상업 환경 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평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상하이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 ▣ 지재권 관련 동향

### ○ 중국 지재권 동향

2019년 중국정책 동향 키워드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高水平的对外开放)으로 표현될 수 있다. 2019년 한해동안 중국 내 6개 자유무역시험구 (산둥성, 장쑤성, 광시좡족자치구, 허베이성, 윈난성, 헤이룽장성)를 신설하고, 외상투자법을 공포하며, '일대일로'국제협력포럼,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중국 측이 주도한 외교활동과 미중 1단계 경제협의 성사 등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라는 기치를 세운 중국 정부는 2019년 양호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개정이 있었고, 국무원(중국 중앙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강화 관련 의견 및 국무원령 (国务院令) 등을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 했다.

2019년에 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과 심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위반 대가성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라

2)상하이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0800/nw42944/nw44392/u26aw62669.html

볼 수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에 관하여 중국 현지 법에 의거 처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법과 관련된 법규 중에는 행정적 수단으로 특허 이전을 강요하지 못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기도 하였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발명특허 심사주기는 약 22.5개월 소요되며,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는 5개월 내이다.[3)]

2019년 한해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은 아래와 같다.

| 연 | 법규 명칭 |
|---|---|
| 1 | 특허표식비규범사건 처리지침 (시행)《专利标识标注不规范案件办理指南(试行)》 |
| 2 | 「상업경영환경우화조례 (초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 |
| 3 | 「상표등록 신청행위를 규범화에 관한 여러 규정」《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4 | 「특허분야 엄중 신용불량 연합징계 대상 리스트 관리방법 (시행)」<br>《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办法 (试行)》 |
| 5 | 「특허출원집중심사관리방법 (시행)」《专利申请集中审查管理办法 （试行） 》 |
| 6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
| 7 | 「고품질의 무역발전을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br>《中共中央　国务院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
| 8 | 「상표권리침해판단기준 」 공개적인 의견 청취《商标侵权判断标准》 公开征求意见 |
| 9 | 「중화인민공화국 외투자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
| 10 | 「지적재산권분야"放管服"개혁을 심화하여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에 관한 실시의견」<br>《关于深化知识产权领域“放管服”改革 营造良好营商环境的实施意见》 |
| 11 | 「상표위법사건 중의 유명상표보호 조사처리 강화」《加强查处商标违法案件中驰名商标保护》 |
| 12 | 「특허심사지침」수정《专利审查指南》 修改* |

*특허법 개정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지속 진행

3)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 사이트 http://www.sipo.gov.cn/twzb/dsljshzscqgjltyc/index.htm

### ○ 201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2019년 중국내에서 출원된 발명특허 수여건수는 45.3만건, 실용신안 수여 158.2만건 및 디자인특허 수여 55.7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상표등록 건은 640.4만 건으로 총 누적된 유효상표건은 2,521.9만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중국내 PTC*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6.1만건이며 2018년 대비 10.4% 증가 했다.[4)]

*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의 특허출원기관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회의 PCT 국제 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상표권 선점등록 대응, 무효심판을 위한 증거수집 사례

H사는 "V*" 제품을 주요 브랜드로 중국내 유통하고 있으나, 해당 "V*"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중국 广州市韩惠娇人化妆品有限公司가 2015년 8월, 이미 선점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H사는 무효심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2016년 10월에 해당 상표를 등록했으나, 해당 중국업체(广州市韩惠娇人化妆品有限公司)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H사는 상하이 IP-DESK에 법률 자문 요청을 의뢰하였다.

DESK는 기업의 요청을 접수받고 우선 H사의 "V*" 제품이 중국업체가 상표권을 등록한 2015년 8월 일자보다 더 일찍 유통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판매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또한 해당 중국업체를 조사하여 이 회사가 상표 선점등록 뿐 아닌, 모조품 생산, 생산허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특수화장품 생산판매, 한국 연예인 사진 무단 도용, 허위광고 등 부당한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거로 포함하여 그 사실을 H사와 공유하고 무효심판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케 하였으며, 현재 무효심판 실제 심사 진행중에 있다.

### ○ 제3자 및 대리상의 상표권 선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

최근 한국 제품 수입대리상 뿐만 아닌 전문 상표브로커 혹은 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에 의한 상표 무단 선등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 상품이 정식으로 유통되기 전후로, 제조사의 동의, 인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우선 선점 등록하는 사례로,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접수가 된다. 2019년 중국 상표법이 개정되어 악의적인 상표 선등록

4)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통계자료

행위에 대해 심사단계에 심사원의 주동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등 제재조치가 추가되어 이후 이러한 악의적인 선출원 행위는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계획이 있는 한국기업은 진출 검토단계에서 제품 개발, 브랜드 네이밍 후 가장 먼저 해당 국가에 상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여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대리상에 의한 대리 선점등록 문제도 발생하기 쉽다. 우시에 소재한 A사의 브랜드 M*가 현재 대리상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된 상태이며, 상하이 IP-DESK로 브랜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의뢰했다. 해당 브랜드는 2002년 창립된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로, 상표를 한국에서만 등록후 중국에 진출한 사례였다. A사는 한국에서 직접수출이 아닌, 현지 벤더(수입상)을 통해 수출을 진행했다. 이 시점에 대리상 X업체는 임의로 A사의 M* 브랜드를 2012년 12월에 선출원 신청하였고 2014년 6월부 중국 상표로 등록하였다. X업체는 2012년 2월에 한국의 A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나, 원본계약서가 없고 거래내역서만 존재한 상황이었다. 2013년 4월경상표권 사용계약을 양사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계약서가 없고 중간 소개자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DESK는 기업의 애로 접수후 상담을 진행하여, 우선 선출원된 모든 상표에 대한 조치방안을 안내하였다. 중국내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태를 검색하고, A사에 마드리드 상표 출원외 중국에 아직 M* 브랜드 관련으로 정식으로 상표 출원한 적인 없고 X업체가 선출원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혹 무효심판 또한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 온라인에 판매한 제품정보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M* 브랜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유통상황 등 증거서류 수집하여 기업에 상표 무효심판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은 대리상과의 거래에도 수출계약서 내 상표 명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피침해 사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구비해두어야 한다.

### ○ 형태모방을 이용한 침해 사례

중국의 온라인플랫폼 타오바오, 징동, 핀뚜어뚜어 등에 한국 유명 브랜드 제품의 외관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핀둬둬 등 플랫폼에서 산자이(山寨, 형태모방) 제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모방 사례는 주로 중국의 중소규모 기업 위주 위조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자원이 부족하여 시장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브랜드를 위주로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傲来国 모방제품

메**정품

한국의 유명한 메** 마스크팩도 징동에서 유사한 형태의 모조품이 유통되는 등 사례가 발생했다. 모조품 유통을 방지하고 정품 거래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알리바바, 징동 등 주요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모조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은 플랫폼 진출후 수시로 제품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모조품 유통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모조품 유통 사례 발견후 필요시 DESK로 지원요청을 하면 플랫폼의 IP보호부서와 연결, 해당 판매자 계정 차단, 오프라인 단속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 지재권 출원 대리사무소에 의한 피해사례

현재 중국의 일부 지재권 출원 대리사무소에서 상표출원과 같은 간단한 업무에도 고가의 대리 비용을 요구하거나, 상표등록증 발급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에도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의류수출 업체인 한국기업 C사의 경우, 상표출원을 베이징에 소재한 중국 대리사무소에 의뢰하고 한화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이후 중국지식재산권국로부터 상표등록 거절통보를 받아 대리사무소에서 복심청구 신청여부를 재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리 비용이 30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다. C사는 즉시 상하이 IP-DESK로 해당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DESK에서 상황을 파악한 결과, C사의 상표등록 과정중 계약서나 출원서류에 서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출원인의 동의없이 대리사무소에서 대신 서명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C사는 이러한 잘못된 중국대리사무소의 행위로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상표출원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상표등록 거절통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후 상표거절에 의한 복심청구 시 서류 작성에서의 서명단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당 사례 외에 중국 일부 대리사무소에서 계약서 체결 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추가 서비스를 받게 하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계약금 지급후 제대로 상표등록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우선 대리사무소 선택 시 사무소 자격 및 전문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지재권 업무내용 및 비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중국내 설치된 IP-DESK에 의뢰하여 DESK의 협력대리사무소를 활용하거나,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 ○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선택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상표출원 지원시 DESK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내용은 지정상품 선택에 관련한 것이다. 지정상품은 상표보호 범위에 해당하며 상표등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 IP-DESK는 지정상품 선택 관련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 선택시 니스분류표를 보내고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 외 향후 사업경영에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 선택도 함께 추천하고 있다. 일부 출원인은 지정상품 선택을 어려워하며 DESK에서 추천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정상품 선택은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잘 아는 출원인이 자체적으로 선택해야하는 부분임을 이해해야 한다. DESK에서는 비슷한 상품을 등록한 타기업의 지정상품 선택 사례를 공유하고, 시장동향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며 기업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고 있다.

### ○ 중국세관의 지재권 관리 강화 조치로 상표 무단선등록 피해 확장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는 중국 세관에서 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신고된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관련법규 위반시 화물을 몰수하고, 또 화물가치의 30%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에 의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조항까지 추가되었다. 이는 2019년 중국 정부가 국제적 상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치로 내건 법률개정 사안이다. 만약 한국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 수출물품에 대해 지재권세관보호비안을 신청한다면 한국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현재 상표브로커를 포함한 중국 기업의 상표 무단 선등록 사례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세계시장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이 해외진출 시 지재권 권리확보 의식을 강화하여 피해 받지 않게 적극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3 | 561 | 40 | 0 | 5 | 9 | 17 | 31 |
| 2014 | 598 | 95 | 0 | 7 | 9(1) | 14 | 9 |
| 2015 | 1119 | 128 | 8 | 10 | 2(1) | 6 | 3 |
| 2016 | 862 | 104 | 0 | 2 | 3(2) | 4 | 14 |
| 2017 | 690 | 95 | 0 | 6 | 1 | 4 | 5 |
| 2018 | 510 | 59 | 0 | 6 | 1 | 11 | 3 |
| 2019 | 780 | 104 | 0 | 2 | 1 | 5 | 2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중국 온라인플랫폼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진출 기업의 온라인플랫폼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브랜드 모조품 유통채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DESK는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알리바바 IP보호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우리기업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에도 각 기업 브랜드보호부서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조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 주요 플랫폼인 샤오홍수, 쑤닝, 핀둬둬, 메이투안, 1919, 징둥 등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수집한 모조품유통 정보 및 진위감정 수요를 한국 기업에 즉시 전달하고, 이후 모조품 판매링크 삭제, 온라인 모조품 단속, 오프라인 모조품 제조상 단속 등으로 이어지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모조품식별세미나의 경우, 참가 한국기업은 상기 전자상거래 기업의 IP보호 브랜드 부서와 소통할 기회를 가지며, 각 플랫폼이 보유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핀뚜어뚜어, 샤홍슈 등 신흥 플랫폼과의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우리기업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 2019 주중진출기업 지재권보호 교육반 운영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애로사항 질의 응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지식산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19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주중진출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지식산권국, 상해시 지식산권국 및 서비스 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WIPO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체계와 지재권 국제 보호 동향, 특허 심사 및 무료 심판, 〈판부당경쟁법〉의 개정내용 해설, 지재권판례 해설, 상표평심실무 및 심사기준, 지재권 소송 증거 규칙, 특허권의 행정 보호, 특허 검색 및 평가 요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교육에는 중국 각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법무부서의 담당자, 지식재산권 분야 종사자가 참석하였다.

## 4. 우수사례

#### ○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선점등록 피해 지원 사례

D사는 2018년 11월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2019년 6월 중국의 한 백화점에서 D사의 상표와 같은 상표로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9년 11월에 심사합격이 되어 해당 상표는 3개월의 초심공고 상태로 남아있다. 베이징 소재 중국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은 출원인은, 상하이

IP-DESK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DESK는 해당 백화점의 상표등록 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백화점에 의거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현재 해당 백화점에서 등록되었거나 등록 중인 상표가 110여개로 그 중 다수의 상표가 유명상표를 분류를 바꾸어 등록한 상표로 보여졌다. DESK는 해당 백화점이 상표등록 브로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출원인에게 (1)선점 출원인과 협상 또는 (2)직접대응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의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한 출원인은 상표 무단등록에 의한 직접대응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요청으로 우선 DESK의 협력 대리사무소 2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기업이 선택한 1개사와 함께 DESK는 해당 절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DESK 전담직원은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 증거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하고, 이의신청과 상표 출원을 함께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도록 지원하였다.

### ○ 유사상표 등록으로 인한 상표등록 거절 대응 지원

최근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출원 시 등록 거절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유사상표로 인한 상표등록 거절이다. 이에 사안에 따라 등록 거절에 대한 복심청구 또는 상표등록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 C사는 중국에서 상표출원 후 상표등록이 거절된 후 상하이 IP-DESK에 의뢰를 하였다.

우선 DESK에서는 출원인에게서 거절통지서를 전달받아 내용을 검토하였다. 거절통지서에서는 유사상표가 2개 등록이 되어있어, 해당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명기하였다. 하지만 DESK에서 조사한 결과 유사상표중 하나는 상표 유효기간이 마감된 상태이며 3개월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유사상표는 상표등록이 3년 넘었으며 중국 여러 사이트 조사 결과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 내역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DESK는 조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전달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간 만료된 유사상표는 이후 상표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조치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하나의 유사상표에 대한 3년 불사용에 대한 상표 취소신청을 추천하였다. 이에 C사는 현재는 거절상표에 대한 복심청구 및 상표등록 거절에 인용된 유사상표에 대한 3년 불사용에 대한 상표취소 신청을 마친 상태다.

### ○ 지재권 세관등록에 의한 모조품 세관 압수 사례

N사는 2015년 상하이 IP-DESK 지원 통해 상표권 세관등록을 완료했다. N사는 자사의 알로에 제품의 모조품 유통현황을 최근 몇 년간 발견하고 IP-DESK 피침해실태 조사 및 단속지원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조품 유통 단속 또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콩에서 발견된 모조품 유통 사항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없어 필요하여 의뢰를 하였다. 2019년 광둥성 광저우시 웨슈구에 소재한 수입대리상이 타기업 수출제품 속에 N사의 모조품을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여, 광둥성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견되어 모조품 전부 가압류 조치 당하였다. 세관에 가압류된 물품은 3일이내 브랜드사의 감정서류 및 신청서류가 있어야 하고, 상하이 DESK는 해당 사건 정보를 N사에 전달하여 현지 로펌과 함께 세관

압류 제품 현장처리 방안 및 민사소송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N사는 변호사를 통해 모조품 관련 압수서류를 제출하고, 손해 배상 민사소송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 사안은 2019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홍콩지역에서 모조품 유통 통제가 어려울 경우, 세관 지재권 등록을 통해 일부 모조품 수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 대리상의 모조품 생산 유통 단속 사례

2019년 11월, 한국기업 P사는 자사의 수입대리상인 안후이성 합비시 소재 安徽省路驰环保科技有限公司(하 安徽路驰)가 자사의 등록 상표 "불**" 자동차 방향제 제품의 모조품을 생산, 보관 및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DESK에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지원 신청했다.

DESK는 현지 협력대행사무소를 통해 安徽路驰의 소재지 거래처 창고, 회사 본사 건물, 배송 창고에 대하여 조사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중국대리상은 초기에는 한국에서"불**"제품을 정식으로 수입 판매하였지만, 이후 시장내 모조품이 많아지면서 제품 판매량,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어, "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별도의 "路驰"상표도 추가한 모조품을 자체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모조품 제품의 케이스 및 포장박스는 다른 공장에서 제작하고 安徽路驰 회사에서 조립 및 포장 하는 방식이었으며, 제품의 도매가격은 개당 14위안이고, 중국 Tmall 온라인 플랫폼에도 자사가 직접 점포를 열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고 단속 결과 해당 모조품 제조사 창고에는 약 4,000개의 모조품이 보관중이었다. 피침해 실태조사 대행사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당 회사를 상하이시 공안국에 상표 침해 행위로 신고하고 상하이 공안기관과 현지 파출소와 함께 협조하여 현장 단속을 진행하였다. 현장 보관중인 침해제품은 현지 공안국으로 압수되었으며, 해당 기업 담당자 또한 연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발견된 수량이 1차 조사결과보다 적어, 형사입건은 불가하였으며, 온라인 침해로 신고후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수입 대리상은 정식으로 정품을 수입하는 한편, 개량한 모조품도 함께 유통하게 되어 시장 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한국기업의 브랜드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출기업은 위와 같은 사례를 유의하여, 온오프라인에 자사 제품 모조품 유통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상황 발생시 IP-DESK 혹은 기타 현지 공안국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 유명인 사진 도용 점포 침해 대응 지원

상하이 DESK는 주중대사관의 요청을 받아, 중국의 한 인터넷 점포(알리익스프레스닷컴)가 한국의 대통령 사진을 도용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즉시 알리바바그룹의 지재권보호 부서에 신고하여, 신고후 2시간내 해당 판매자 링크를 삭제처리 하였다.

## 5. 사진자료

이동식 IP-DESK (3월)

이동식 IP-DESK (3월)

상하이고급인민법원지재권보호발표회 (4월)

알리바바지재권협력미팅 (4월)

알리바바 모조품 설명회 (6월)

알리바바 모조품 설명회 (6월)

주중 한국 기업 지재권 교육반 (6월)

주중 한국 기업 지재권 교육반 (6월)

제16회상하이국제지재권포럼 (10월)

제16회상하이국제지재권포럼 (10월)

Ⅲ

# 칭다오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칭다오 IP-DESK는 2006년 4월, IP-DESK 사업 시작과 함께 칭다오 무역관에 개소하였다. 산동성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 전담 인력 2명의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3-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한여령 | KOTRA (과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서상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조상홍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표 2-3-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칭다오무역관 內 |
| 주 소 | 中国山东省青岛市市南区香港中路2号海航万邦中心写字楼23搂2308室 |
| 연락처 | +86-532-8388-7931(내선209) |

표 2-3-3 협력 로펌 : 총 3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北京中北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青岛分公司 | 칭다오 | 30 명 | 왕내위 변리사 |
| 山东众成清泰律师事务所 | 칭다오 | 50 명 | 김윤국 변호사 |
| 青岛清泰联信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칭다오 | 42 명 | 이효동 변리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산동성 경제개황

표 2-3-4 '18년 산동성 주요 경제지표

| 구분 | 중국전체 | | 산동성 | | |
|---|---|---|---|---|---|
|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비중(%) |
| 인구(만 명) | 139,500 | | 10047.24 | | 7.2% |
| 면적(만㎢) | 963.4057 | | 15.8 | | 1.64% |
| GDP(억 위안) | 900,309 | 6.6% | 76,469.7 | 6.4% | 8.49% |
| 수출(억 위안) | 164,177 | 7.1% | 10,569.6 | 6.1% | 6.44% |
| 수입(억 위안) | 140,874 | 12.9% | 8,732.9 | 9.7% | 6.2% |

표 2-3-5 '18년 산동성 지역별 GDP 순위

| GDP 순위 | 시(市) | '17 GDP (억 위안) | '18 GDP (억 위안) | 성장률(%) | 1인당 GDP ( 위안 ) | 1인당 GDP 순위 |
|---|---|---|---|---|---|---|
| 1 | 칭다오시 | 11,037.28 | 12,001.52 | 7.4% | 129,180.6 | 2 |
| 2 | 지난시 | 7,201.96 | 7,856.56 | 7.4% | 107,313.0 | 6 |
| 3 | 옌타이시 | 7,338.95 | 7,832.58 | 6.4% | 110,482.4 | 4 |
| 4 | 웨이팡시 | 5,858.63 | 6,156.78 | 6.5% | 65,756.2 | 10 |
| 5 | 쯔보시 | 4,781.32 | 5,068.35 | 6.1% | 107,644.8 | 5 |
| 6 | 지닝시 | 4,650.57 | 4,930.58 | 5.8% | 58,866.4 | 13 |
| 7 | 린이시 | 4,345.39 | 4,717.80 | 7.3% | 44,662.8 | 16 |
| 8 | 동잉시 | 3,801.78 | 4,152.47 | 4.5% | 192,721.2 | 1 |
| 9 | 타이안시 | 3,585.28 | 3,651.53 | 5.7% | 64,683.2 | 11 |
| 10 | 웨이하이시 | 3,480.10 | 3,641.48 | 6.7% | 128,872.2 | 3 |
| … | … | … | … | … | … | … |

#### ○ 전국 3위의 경제규모 보유

산동성은 15.8만㎢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중국 두 번째로 인구 1억을 돌파하였으며 성 전체 GDP 규모는 광둥성, 장쑤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주요산업은 방직의류, 석유화학 등이 있다.

### ○ 전통적인 한국 투자기업 진출거점

산동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 진출 한국 투자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 토프톤 전자가 칭다오시에 제조법인(스피커)을 설립한 이후 섬유, 봉제, 식품, 주얼리 등 경공업부터 기계, 화학,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2-3-6 한국의 산둥성 투자현황 (단위: 개사, US$억)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법인수 | 금액 | 법인수 | 금액 | 법인수 | 금액 | 법인수 | 금액 | 법인수 | 금액 |
| 155 | 3 | 144 | 4 | 119 | 4 | 88 | 3 | 94 | 4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투자금액 기준)

표 2-3-7 산둥성 연도별 우리기업 업종별 투자비율 변화 (단위: 개사)

| 분류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제조업 | 89(57%) | 63(44%) | 49(40%) | 43(49%) | 45(48%) |
| 도소매 유통업 | 37(23%) | 57(39%) | 49(40%) | 31(35%) | 30(32%) |
| 기타(기술과학, 서비스, 교육, 운수, 금융 등) | 30(20%) | 24(17%) | 25(20%) | 14(16%) | 19(20%) |
| 신규법인수 | 156 | 144 | 123 | 88 | 94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산동성 지재권 출원 현황 (2018년 기준)

#### (1) 특허

2018년 산동성 유효발명특허는 총 87,36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1%증가하였으며 전국 6위이다. 2018년 신청한 발명특허는 총 75,817건이며, 이 중 20,338건이 최종 등록되었다(PCT 특허출원 1,751건). 또한, 2018년 산동성 특허대리기구(대행사)는 총 80개사(전년대비 19.4% 증가), 지사기구는 총 106개사(전년대비 10.4% 증가), 변리사는 총 620명(전년대비 10.1% 증가)이 활동 중이다.

표 2-3-8 특허 출원통계( '16~' 18) (단위 : 건)

| 권리구분 | 발명 | 실용신안 | 디자인 | 합계(특허) |
|---|---|---|---|---|
| 2016년 | 88,359 | 106,100 | 18,452 | 212,911 |
| 2017년 | 67,773 | 118,252 | 18,836 | 204,861 |
| 2018년 | 56,357 | 100,419 | 17,141 | 149,331 |

### (2) 상표

2018년 산동성에 등록된 유효상표는 총 96만 건(중국 전체 1,804.9만 건)이며, 신규 신청한 39.9만 건 중 25.3만 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유효상표는 32.8%, 신규 신청과 등록 건수는 각각 40.5%, 79.4%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산동성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총 6,557 건(전년대비 2,427건 증가)으로, 수년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동성의 지명상표(地名商標, 칭다오 맥주 등) 총량 역시 수년간 중국 1위를 유지(총 671건, 전년대비 87건 증가)하고 있다.

표 2-3-9 상표 출원통계( '16~' 18)

(단위 :건)

| 권리구분 | 신청량(신규) | 등록량(누계) | 지명상표 | 마드리드상표 |
|---|---|---|---|---|
| 2016년 | 184,490 | 592,018 | 687 | 2,484 |
| 2017년 | 284,000 | 723,000 | 711 | 3,088 |
| 2018년 | 398,902 | 960,070 | 751 | 6,557 |

### ○ 산동성 지재권 행정집행 현황 (2018년 기준)

2018년 산동성 전체 특허 행정 집행 건수는 총 5,092건이며 그 중 모방특허가 3,611건으로 다수(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특허분쟁은 1,481건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특허분쟁은 98.2%의 높은 종결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10 행정집행 접수 통계( '16~' 18)

(단위: 건)

| 구 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특허분쟁 | 특허 | 479 | 930 | 1,481 |
| 지재권모방 | 모방특허 | 2,947 | 4,279 | 3,611 |
| | 모방상표 | 1,636 | 1,924 | 4,005 |

###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 한국특허청 특허공동심사(CSP) 실시

한중 특허신청심사 질을 향상하고, 양국의 특허 신청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1월1일부터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과 한국특허청(KIPO)은 한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짧은 심사주기와높은심사의 질은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의 두 가지 장점이며, 또 CSP는 한중 양국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한중 양국 심사관이 검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공유, 그 후 각각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부, 특허심사 진행한다. 이번 CSP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 또는 400건의 청구에 도달하면 마감되며, 심사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 ○ 중국 상표법개정, 상표침해 처벌강화

"사용 목적이 아닌 상표등록출원은 기각한다", "법정배상액수 상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최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 상표법 부분 조례를 수정하고,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규제를 추가, 상표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 사재기식 상표등록신청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제하기 위해, 이번 상표법 개정에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신청인의 사용의무와 상표대리기업의 의무를 강화했다. 악의적인 상표등록 행위 및 상표대리기업이 의뢰인의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해당 위탁을 수임해서는 안되고,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의 대리행위를 대리업체에 대한 처벌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상표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침해배상금액의 계산을 기존의 상표사용허가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1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상표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법정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리인은 더 많은 침해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침해배상금액 계산법은 적용조건이 있으며, 권리인의 실제손해, 침해인의 이득 혹은 침해상표사용허가료가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할 시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1배 이상 5배 이하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악의적인 상표권 선등록 행위에 의한 피해

최근 수입상, 대리상 혹은 전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하여 한국 상품 유통 전후에 제조상의 동의 없이 상표에 대한 무단 선등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상이 중국 시장 진출 당시 상품이 원활히 유통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표의 선출원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다.

둘째, 중국 파트너가 상표권을 더 쉽게 취득할거라 생각하여 대리인 명의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 종료에 의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셋째, 전시회나 시장 유통 과정에서 제품정보가 사전 유출되어 악의적인 선등록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지원 | 세관등록 | 침해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4 | 871 | 106 | 0 | 3 | 1 | 4 | 14 |
| 2015 | 745 | 66 | 0 | 3 | 1 (1) | 8 | 10 |
| 2016 | 682 | 151 | 0 | 2 | 2 (1) | 7 | 14 |
| 2017 | 411 | 85 | 2 | 0 | 1 | 1 | 19 |
| 2018 | 599 | 107 | 0 | 2 | 6 | 2 | 24 |
| 2019 | 297 | 92 | 0 | 0 | 3 | 0 | 24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이동식 IP-DESK 운영

관할지 내에서 개최된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수출지원사업에 참가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총 4회 이동식 IP-DESK를 운영하며 일대일 지재권 상담을 진행했다.

- 4월 2019 고양-파주 중국 시장개척단(10개사)
- 6월 2019 충남 K-스타트업 중국 무역사절단(8개사)
- 7월 2019 논산 중국 무역사절단(6개사)
- 7월 제22회 칭다오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12개사)

#### ○ 지식재산권사업 홍보 강화

2019년에 관할지 내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세미나인 '코칭살롱'을 총 11회를 개최했으며 그 중 지재권 관련 총 8회 홍보하고 IP-DESK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표 2-3-11 '코칭살롱' 지재권 홍보 현황

| 월 별 | 지 역 | 홍보대상 기업수 |
|---|---|---|
| 1월 | 칭다오 | 23 |
| 2월 | 옌타이 | 27 |
| 3월 | 웨이하이 | 25 |
| 4월 | 칭다오 | 15 |

| 월 별 | 지 역 | 홍보대상 기업수 |
|---|---|---|
| 7월 | 칭다오 | 35 |
| 9월 | 칭다오 | 15 |
| 10월 | 웨이하이 | 10 |
| 12월 | 칭다오 | 26 |

## 4. 우수사례

### ‘개정 상표법 해설’ 주제로 지재권 설명회 개최

- 2019년 9월 부산경제진흥원칭다오대표처와 협력하여 지방중기 글로벌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2019년 11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칭다오분회(CCPIT), 대한민국주칭다오총영사관과 협력하여 칭다오 수입박람회 참가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개정 상표법을 통해 악의적인 상표등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개정 상표법을 통해 상표의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추가하였고, 심한 경우 상표등록을 사전적으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사후에 악의적인 사용이 확인되면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 외에 칭다오 IP-DESK를 통해 지원했던 관련 사례 및 해결방안을 보조설명 해서 기업에게 개정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고 지재권 인식 제고가 될 것이다.

### 악의 상표등록 무효선고 심판청구

A사는 2018년 타기관 통해 중국 상표출원을 진행코자 했으나, 신청 전 타사의 악의적인 무단선점을 발견하여 상표 출원신청하지 않았으며 무효선고만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2019년6월 A사는 무효선고 판결을 앞두고 칭다오 IP-DESK를 통해 상표출원을 신청하였고 잠재되어 있던 악의적인 상표 무단선점 행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즉, 같은 선등록 회사의 등록한 상표이다.

칭다오 IP-DESK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잠재 무단선점 행위에 대해 무효선고 심판 청구하여 악의적인 상표등록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현지 상표국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해당상표에 대한 출원신청 및 무효선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이동식 IP-DESK (4월)

이동식 IP-DESK (6월)

이동식 IP-DESK (7월)

이동식 IP-DESK (7월)

지재권 설명회 (9월)

지재권 설명회 (9월)

코칭살롱 IP홍보 (10월)

지재권 설명회 (11월)

Ⅳ

# 광저우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광저우 IP-DESK는 2007년 4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IP-DESK로 KOTRA 광저우무역관에 개소되었고, 중국 화남지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하이난성)을 관할하고 있다. '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3명, 총 4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표 2-4-1 인력 현황 : 총 4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김우정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백원행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왕아선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황혜민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표 2-4-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광저우 무역관 內 |
| 주 소 | 中国广东省广州市天河区天河路208号粤海天河城大厦2904-07A<br>Unit 04-07A, 29F, Teemtower, No.208 Tianhe Road, Guangzhou, China |
| 연락처 | +86-20-2208-1600 |

표 2-4-3 협력 로펌 : 총 6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Guangzhou JUNCY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Co., Ltd. | 광저우 | 100명 | Hui Hua |
| Guangzhou SINO Patent& Trademark Agent Co., Ltd. | 광저우 | 130명 | Yanping Long |
| Guangdong YOGO Patent and Trademark Agency Co., Ltd. | 광저우 | 150명 | Xinni Li |
| Union Intellectual Property (China) Ltd. | 광저우 | 120명 | Eric Liu |
| Shanghai J&J IP Consulting Co., Ltd. | 광저우 | 150명 | 심상희 |
| Quanquan Consulting(Guangzhou) Co., Ltd. | 광저우 | 100명 | Zhie Jiang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광둥성 경제동향

표 2-4-4 '18년 광둥성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 중국 전체( '18) | | 광둥성 ( '18기준) | | |
|---|---|---|---|---|---|
|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비중(%) |
| 인구(만 명) | 139,538 | 0.38 | 11,346 | 1.56 | 8.13 |
| 면적(만㎢) | 960 | | 17.97 | | 1.87 |
| GDP(억 위안) | 900,309 | 6.6 | 97,277.77 | 6.8 | 10.80 |
|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 645,675 | 5.9 | 35,286.84 | 10.7 | 5.47 |
| 소비(억 위안) | 380,987 | 9.0 | 39,501.12 | 8.8 | 10.37 |
| 수출(억 위안) | 164,177 | 7.1 | 42,718.34 | 1.2 | 24.87 |
| 수입(억 위안) | 140,874 | 12.9 | 28,900.01 | 11.3 | 19.60 |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광둥통계정보망

### 광둥성 경제규모 전국 1위

광둥성은 장강삼각주(상하이) 및 환발해만경제권(베이징, 톈진)과 함께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의 하나로, 경제규모 전국 1위의 경제발달지역이다. 2018년 광둥성 GDP는 9조 7,278억 위안으로 경제성장률 6.8%를 기록하였다.

###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 외국인 투자 大

광둥성은 덩샤오핑의 지휘 하에 1980년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 및 푸젠성 샤먼에 경제특구가 설립되어 일찍이 중국 경제개방의 효시 역할을 한 지역이다. 2018년 광둥성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450억 8800위안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3만 5,774건으로 전년 대비 130.4% 증가하였다.

### 산업체계 완비된 '세계의 공장'

광둥성은 산업체계가 잘 갖춰져 100여 개 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 생산가공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기지가 형성, 신소재 및 광전기 등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중에 있다. 또한, 중국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광둥성은 글로벌 기업의 제조기지로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전자제품 제조업의 강자

2018년 광둥성 제조업 500대 기업 중 컴퓨터, 통신,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전자기계와 부품 등 업종 기업이 236개로 전체의 27.3%를 증가하였다.

###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심지

2018년 광둥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759.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다. 현재 광둥성에는 5만 개 이상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고 100만 명 이상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다.

### 광둥성 주요 산업

광둥성은 전자정보, 장비제조, LED,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 자동차 제조업은 주로 광저우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광저우 자동차 제조업 총 생산량은 296만 2,600대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으나 전체의 10.59%를 차지하며 여전히 중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시(市)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자정보산업: '18년 첨단전자정보 제조업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9.3% 성장.
- 장비제조업: '18년 선진장비제조업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8.7% 성장, 성(省) 공업 전체의 47.2% 차지.
- LED산업: '18년 LED 생산규모는 7,348억 8,3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동일.
- 자동차산업: '18년 광둥성 자동차 생산량은 322만 대로 전년 대비 동일.

## ○ 광둥성 대외무역 동향

표 2-4-5 광둥성 대외무역규모

| 구 분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금액 (억 위안) | 증가율 (%) | 금액 (억 위안) | 증가율 (%) | 금액 (억 위안) | 증가율 (%) | 금액 (억 위안) | 증가율 (%) |
| 교역액 | 63,530 | -3.9 | 63,100 | -0.7 | 68,169 | 8 | 71,618 | 5.1 |
| 수출 | 39,958 | -1.9 | 39,521 | -7.4 | 42,193 | 1.3 | 42,718 | 1.2 |
| 수입 | 23,572 | -11.8 | 23,579 | -3.2 | 25,976 | 9.8 | 28,900 | 11.3 |
| 무역수지 | 16,386 | 23.74 | 15,942 | -2.71 | 16,217 | 1.73 | 13,818 | -14.8 |

자료원 : 광둥성통계국

## ○ 대외무역 규모 중국 최대

2018년 광둥성 대외무역 규모는 총 7조 1,618억 위안으로 그 중 수출은 4조 2,718억 위안(1.2% 증가), 수입은 2조 8,900억(11.3% 증가) 이다. 이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 규모의 23.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광둥성은 33년 연속 중국 최대의 대외무역 성(省)으로 자리잡고 있다.

## ○ 품목별 대외무역 규모

2018년 광둥성 최대 수출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품, 기계류, 가구 및 조명기구, 완구, 측정기기 등이며, 그 중 전자기기와 그 부품은 광둥성 전체 수출의 69.1%를 차지한다. 광둥성 주요 수입품목 중 플라스틱 및 그 제품, 비철금속, 강재, 원유 등의 제품이 비교적 많으며, 그 중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수입 규모는 1,112.17억 위안에 달한다.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2018년 기준)

### ○ 광둥성 지재권 출원 현황

지재권 창출에 있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인 광둥성은 2018년 상표출원 146.2만 건(중국 전체 737.1만 건의 19.8%), 특허출원은 79.4만 건(중국 전체 432.3만 건의 18.4%), PCT 국제특허출원은 2.5만 건(중국 전체의 48.7%)를 기록하였다. 또한,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341만 건이며,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24.9만 건으로, 중국 내 1위를 차지하였다.

* 7.3만개 기업에서 특허출원 60.2만 건, 전체 성 출원량의 75.8% 차지, 그 중 2.7만개 기업이 발명특허 17.1만 건을 출원하여 성 전체 발명특허출원의 79.1%를 차지
* PCT 국제특허출원 글로벌 20강 중 3개 기업(화웨이, ZTE, OPPO)이 광둥 소재

### ○ 광둥성 지재권 지재권 보호 체계 지속 정비

- **(지재권 체제개혁 착실 추진)** 〈광둥성 기구개혁 방안〉에 따라, 2018년 10월 19일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지식산권국)을 정식 출범하고, 모든 성의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적 표시 등 지재권 업무를 통일 관리하며,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재권 보호 및 운용능력을 제고하였다.

- **(지재권 보호기관 지속정비)** 중국(선전)·중국(포산)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출범하고, 성 전체적으로 3개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 7개 국가급 지식재산권신속권리보호센터 및 다수의 성급 지식재산권권리보호지원센터를 건설하며, 17개 광둥성 저작권 기층업무사무소, 35개 광둥성 작품등록사무소를 구축하였다.

- **(지재권 다원적 분쟁해결기제 정비)** 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 9개 지급시에 총 15개 지재권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 광둥성 지재권 보호 강도 지속 증가

- **(지재권 행정보호 성과)** 2018년 광둥성 지재권 침해사건은 중국 전체의 1/3~1/2를 차지하여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접수한 각종 특허사건은 6,611건이며, 그 중 처리건수는 6,501건이다. 각종 상표 위법사건은 3,550건으로, 관련 피해금액은 5,033.8만 위안에 달한다.

저작권 행정집법부서에서 감독관리한 인터넷 사이트는 309개에 달하며, 그 중 184건을 조사처리하였다. 권리침해 저작출판물 8,976권을 압수하였고, 문화시장 경영장소 23만개 조사하고 1,85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광둥성 내 해관에서는 지재권 집법조치 3,699회를 실시하였고, 그 중 권리침해 혐의 화물 3,326.5만

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금액은 약 4,6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 108개 국가 및 지역 간의 침해물품 유통을 성공적으로 단속한 결과로, 권리자 660여 명의 지재권 권리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재권 사법보호 실적)** 2018년 광둥성 공안기관은 6.8억 위안 상담의 지재권 침해 법죄사건 총 2,994건을 처리하였고, 관련자 5,577명을 형사구류, 3,304명을 체포하였다.
  검찰기관은 3,405건의 지재권 범죄사건에서 5,705명의 지재권 침해자를 체포하고, 그 중 3,105건의 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5,736명을 심의하였다.
  광둥성 내 법원에서 신규접수한 지재권 형사1심 사건은 3,08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8% 증가하였다. 또한, 신규접수한 지재권 민사1심 사건은 80,9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99% 증가하였다.

### ○ 광둥성 지재권 대외교류협력 전개

- **(성(省) 간 지재권 협력)** 〈제13회 범주강삼각지역 지재권 협력 연석회의 (第十三屆泛珠三角區域知識產權合作聯席會議)〉를 개최하고, 중서부 성(省)을 비롯해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하이난(海南), 간쑤(甘肅) 등과 지재권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성 간 지재권 협력을 강화하였다.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지재권 협력 심화)** 홍콩, 마카오와 각각 25개, 16개의 지재권 보호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계획 강요 지식재산권 실시방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만구 지역 특허·상표·저작권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지재권 서비스 연맹을 설립하였다.

- **(지재권 국제교류협력 강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혁신 및 기술지원센터를 광둥에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2018 중-아프리카 지재권 제도 및 정책 고급토론회〉 추진, 유럽·북미·일본·한국 등과 국제 지재권 순회 강연, 광둥성 내 중일기업 지재권 교류 연구회 등을 개최하며 국제협력과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 현지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제3자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

한·중 FTA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 브로커 및 현지인 등 제3자의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저우 IP-DESK에서 지원 중인 L사는 한국 내 2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L사는 2014년 중국 현지시장 특성을 알지 못해 1년만에 사업을 철수하였으나, 2017년 또 다시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고 거래처와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계약도 이뤄냈다. 하지만 L사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 바로 출원 중인 상표가 '김광춘'이 선점한 유사상표로 인해 거절된 것이다. '김광춘'은 한국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국인 상표권 전문 브로커이다. 결국, L사는 상표권 회수를 위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다행히도 광저우 IP-DESK의 제안으로 출원한 '중문+로고' 형태로의 상표가 등록되어 현재 사업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장품 업체 T사는 지인이라고 믿고 중국내 사업을 맡겼던 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했고, 또 다른 화장품 업체 M사는 현지 거래처의 공동명의 출원 제안을 받고 중국 내 상표출원을 하였다가, 거래가 무산되자 거래처에 의해 상표권 출원이 취하되는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전문 브로커 또는 해외 현지인들로부터 소중한 상표권을 지킬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뿐,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하게 상표출원을 하거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해야 할 것이다.

### ○ 상표심사의 허점을 파고든 악의적 선점

중국은 한국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유사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존하여 등록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한국기업이 상품에 대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해 두었더라도 제3자가 동일명칭의 서비스표를 선점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판매점 명칭을 동일 상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콘텍드 렌즈로 유명한 한국기업 I사는 중국에 법인까지 설립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거래처였던 현지 기업에서 오프라인 숍 명칭을 I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I사는 광저우 IP-DESK의 지원을 받아 중국 상표국에 거래처의 무단선점을 주장하였고 최종 무효심판 제기에 성공하였다.

중국 거래처의 이러한 행위는 중국 상표국의 동종성을 가지고 있는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충돌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만일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서비스표를 등록했다면 상표권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을 것이다. 이런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야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에 중국내 상표출원 시 서비스업에 대한 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3 | 461 | 32 | 1 | 11 | 28 | 62 |
| 2014 | 583 | 57 | 1 | 11 | 37 | 51 |
| 2015 | 685 | 71 | 4 | 12(1) | 7 | 19 |
| 2016 | 700 | 80 | 0 | 13(3) | 18 | 28 |
| 2017 | 684 | 61 | 1 | 9(1) | 6 | 38 |
| 2018 | 533 | 64 | 0 | 7(1) | 32 | 10 |
| 2019 | 543 | 40 | 2 | 8(1) | 32 | 13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광둥성 현지 IP보호 네트워크 강화

광저우 IP-DESK는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촉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9년 9월 및 11월 2회에 걸쳐 중국 지재권 공무원 방한 연수 행사를 추진하였다.

한 · 중 지재권 공무원 업무교류 현장 및 기관 방문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인사들은 광둥성 내 지재권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국 공무원들로 광둥성 내 지재권 정책 및 집행을 결정하는 고위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특허청, 특허법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전략개발원 등 지재권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을 공유하였고, 한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 이해를 위한 지재권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CJ 및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해브앤비 등 한국의 산업현장을 견학하고 해당 기업의 중국내 지재권 보호 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광둥성은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 등 지재권 애로사항이 빈발하는

곳으로, 사법 · 행정적 구제 못지않게 지재권 담당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네크워크 구축 · 유지가 중요하다. 광저우 IP-DESK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광둥성 현지 지재권 담당 공무원들과 한국기업 지재권 담당자들이 구축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광둥성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2017년부터 광저우 IP-DESK 및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을 중심으로 한 · 광둥성 지재권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협력사업(지재권 정례회의, 세미나, 기업간담회, 한국브랜드상품 식별설명회)을 진행해 왔다.

중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 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의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업무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저우 IP-DESK에서는 2019년 9월 광둥성 진출 한국기업과 광둥성 지재권 법률 집행부서인 시장감독관리국(구 지식재산권 업무 포함)을 초청하여 지재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는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처 및 반부정당경쟁처 담당자에게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광둥성의 지재권 행정보호 강화 정책 및 한국기업의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한국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지재권 보호방법'으로, 시장감독관리국의 상표권, 특허권 보호 청구과정(행정구제, 사법구제) 및 방법(관련 부서 연락처, 제출서류, 소요시간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한국기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한 강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지재권 간담회 현장

## 4. 우수사례

### ○ 다양한 방향의 IP-DESK 홍보 확대

많은 기업에서 IP-DESK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광저우 IP-DESK는 이동식 IP-DESK 운영을 중점사업으로 책정하고 매해 다방면의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광저우 IP-DESK는 현지 전시회, 상담회 등 대소형 한류융합 사업과 연계하여 IP보호 컨설팅관 운영,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총 11회 제공하였다. 그 중 주요 사업으로는 홍콩 IP-DESK와의 통합 IP-DESK 운영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1월 광저우 IP-DESK는 홍콩 IP-DESK에서 2019 홍콩미용전시회 연계 〈중국·홍콩 통합 IP-DESK〉 운영 관련 협조요청을 받았다. 2019년 홍콩미용전시회는 18개 지자체 및 협·단체 운영관을 '통합한국관'으로 구성하여 KOTRA에서 총괄운영하며, 올해 한국이 주빈국(Country of Honour)로 참여하여 다양한 K-Beauty 부대행사(세미나, Live Demo)가 개최되는, 한국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형 전시회였다.

광저우 IP-DESK에서는 홍콩 IP-DESK와의 워크숍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11월 13-14일 홍콩미용전시회 현장에서 〈중국 · 홍콩 통합 IP-DESK〉를 운영하였다. 통합한국관 안내부스에 IP-DESK 지원사업 및 각기 상이한 중국 본토 · 홍콩 · 마카오 지재권 제도 관련 자료를 비치하였고, 광저우 및 홍콩 IP-DESK 담당자가 한국관 참가기업 부스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별 지재권 애로사항 파악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

상담 결과, 한국관 참가기업 다수가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홍콩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KOTRA의 지재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이 적었다.

이에 광저우 및 홍콩 IP-DESK는, 중국과 홍콩은 상이한 지재권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두 지역의 지재권 현황의 차이점(출원비용, 심사과정, 사법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IP-DESK 지원사업 정보 전달 및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참가기업의 지재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 ○ 브랜드상품식별설명회 개최를 통해 단속기관 공무원 예방교육 실시

2018년 중국 정부기관의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광둥성 역시 관련 부처가 상표권 침해단속 담당 공상국, 특허권 침해단속 담당 지식산권국, 위조 · 저질제품 단속업무 담당 품질감독국 및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모두 시장감독관리국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광저우 IP-DESK는 신규 편입된 단속 공무원과 한국 브랜드 기업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9년 7월 17일 광저우에서 한국 브랜드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식별 설명회 개막식 현장

해당 설명회는 광저우 IP-DESK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5년째 공동개최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지재권 단속기관 통합 식별 설명회로서, 올해도 광둥성 정부와 해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한국 참가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설명회는 총영사관에서 광둥성 정부 및 해관 공무원 초청과 양 기관의 지재권 보호정책 소개자 섭외를, 광저우 IP-DESK는 한국 참여기업 초청과 행사진행을 담당하여 모범적인 기관 간 협력사례를 만들었다.

중국 측에서는 광둥성 및 광저우시의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상표·반부정당경쟁 분야 행정단속 담당 공무원들과 화장품 분야 단속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한국 브랜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도루코, 에프앤코, 에이블씨엔씨, 성주그룹 엠씨엠, 카버코리아 등 8개 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참가기관 및 기업소개를 시작으로,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홍성욱 총영사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황재원 관장의 축사에 이어,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처, 반부정당경쟁처, 광저우 해관이 광둥성 지재권 행정보호 현황 및 부정경쟁 집법현황, 해관 지재권 보호현황을 소개하였다. 이후 현지 지재권 컨설팅 기관에서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브랜드 상품의 부정당경쟁사례 소개, 각 브랜드 기업 담당자들의 자사 상품에 대한 정품 및 위조품 식별법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속기관 및 기업별 발표, 교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기업은 광저우 IP-DESK의 광둥성 지재권 기관 통합 설명회에 대해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으며, 설명회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현지 정부 및 해관의 지재권 행정집행 정책방향 소개에 대해서도 좋은 방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식별설명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기관 통합 설명회는 광저우가 유일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 상품의 부정당경쟁 사례발표를 통해, 'MUMUSO무무소' 및 'ILAHUI아일라휘', 'XIMISO시미소' 등 한국 상품 형태모방 유통기업들의 현황을 소개하여 중국 지재권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반부정당경쟁처 관계자는 동 사례발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과의 면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설명회가 이후 단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저우 IP-DESK는 앞으로도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한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광저우 IP-DESK 주최 한국 유명브랜드 상품 식별 설명회 개최 연혁**

- 2015년(2), 광둥성지식산권국 및 공상국
- 2016년(3), 광저우 해관, 황푸해관, 선전해관
- 2017년(7), 광둥성 공안청, 광둥성 지식산권국, 광저우시 공안국,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 광저우시 지식산권국, 광저우 해관, 황푸해관
- 2018년(12), 광둥성 공안청, 광둥성 공상행정관리국, 광둥성 질량기술감독국, 광둥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광둥성 지식산권국, 광저우시 공안국,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 광저우시 질량기술감독국, 광저우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광저우시 지식산권국, 광저우 해관, 황푸해관
- 2019년(5), **광둥성 지재권 집행기관(5개기관 51개부서) :**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처,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처, 광저우시장, 선전시장, 광둥동부·서부·북부지역시장 계사(稽查)판공실, 뉴스선전 및 교류협력처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처, 지재권보호처, 제품품징안전감독관리처, 웨슈(越秀)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과, 품질과, 가격경쟁과, 하이주(海珠)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촉진보호과, 물가 및 반부정당경쟁과,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과, 리완(荔灣)구 시장감독관리국 품질과, 경제검사과, 상업광고(商廣)과, 텐허(天河)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과, 품질감독관리과, 가격감독관리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과, 바이윈(白雲)구 시장감독관리국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과, 품질감독관리과, 상표특허감독관리과, 황푸(黃埔)구 시장감독관리국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처, 광저우 개발구 지재권보호처, 화두(花都)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과, 품질과, 가격감독과, 판위(番禺)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과, 난사(南沙)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처, 난사구 종합행정집법국, 총화(从化)구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과,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과, 계량과, 정청(增城)구 시장감독관리국 집법3과
  **(광저우 해관)** 종합처, 공항해관, 리완.난사.하이주.화두지역 해관, 우체국 해관
  **(황푸 해관)** 지재권과 종합업무처, 법규과, 우체국판공실, 속달우편전자상거래업무감독관리과
  **(선전 해관)** 종합업무처 지재권과, 법규과(공항해관) 등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지재권 순회 설명회-동관 (1월)

광둥성지재권보호세터 방문 교류 (1월)

하이난성지재권협회 방문 교류 (4월)

춘계 캔톤페어 현장방문 상담 (4월)

K-콘텐츠 라이센싱 피칭쇼 (4월)

토이페어 IP-DESK 홍보부스 (4월)

지재권 순회 설명회-선전 (6월)

세관 지재권 침해단속 지원 (6월)

지재권 연수원 교육 (6월)

한국 유명브랜드 상품 식별 설명회 (7월)

전자상거래전 IP-DESK 홍보부스 (7월)

스타트 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 (7월)

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방문 교류 (7월)

광둥21세기국제박람회 홍보부스 (8월)

의료산업포럼 컨설팅관 (9월)

상담회 현장방문 상담 (9월)

기관-현지기업 지재권 간담회 (9월)

한국 화장품기업협의체 업무교류 (9월)

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방한 지원 (9월)

추계 캔톤페어 현장방문 상담 (10월)

하반기 지재권 공무원 초청연수 (11월)

지재권 순회 설명회-광저우 (11월)

지재권 순회 설명회-선전 (11월)

홍콩미용전 중국.홍콩 통합 IP-DESK (11월)

V

# 선양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선양 IP-DESK는 2010년 5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태국(방콕),베트남(호치민)에 이어 세계 7번째 IP-DESK로 선양 지역에 개소 후 2014년 IP-DESK 일원화 조치로 선양 무역관으로 이전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쟝성)을 관할하며 2020년 현재 본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2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현지 로펌과 1개의 시장조사 전문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5-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김호준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김화향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 소 창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전담인력 |

표 2-5-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선양 무역관 內 |
| 주 소 |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화평구 청년대가 286호 China Resources 빌딩 A동 1703호 |
| 연락처 | +86-24-3137-0770(813) / ipdesksy@kotra.or.kr |

표 2-5-3 협력 로펌 : 총 2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北京GREENTREE IP-LAWFIRM | 베이징 | 30명 | 정청송 변리사 |
| 广州世忠商务咨询有限公司 (GZ SEZON Commercial Consultant Co.,Ltd.) | 광저우 | 10명 | 강유군 사장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동북3성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북한 러시아의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한다는 차항출해 전략의 요충지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의 접점 지역이기도 하다.
- 2019년 동북3성의 국내 총 생산(GDP)액은 각각 24,909.5억위안, 11,726.8억위안과 13,612.7억 위안으로 성장폭은 각각 5.5%, 3.0% 4.2%로 전국 평균 성장폭인 6.1% 대비 낮은 편이다.
- 주요산업으로 랴오닝성은 기존의 석유화학, 장비제조, 자동차 및 신흥 산업 IT 분야가 지주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린성은 자동차 제조 및 농산물 가공, 의약산업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헤이룽쟝성은 석유 및 농식품 가공업, 신에너지 등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지역별 주요 경제 지표

- 랴오닝성

| 구분 | 단위 | 2016 | | 2017 | | 2018 | |
|---|---|---|---|---|---|---|---|
| |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 GDP | 억 위안 | 22,247 | -2.5 | 23,942 | 4.2 | 25,315 | 5.7 |
| 1인당 GDP | 위안 | 50,791 | -2.3 | 54,745 | 4.3 | 58,008 | 5.9 |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32,876 | 5.6 | 34,993 | 6.4 | 37,342 | 6.7 |
| 1인당 농민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12,881 | 6.8 | 13,747 | 6.7 | 14,656 | 6.6 |
| 고정자산투자 | 억 위안 | 6,436 | -63.5 | 6,445 | 0.1 | 6,945 | 3.7 |
| 소비재소매총액 | 억 위안 | 13,414 | 4.9 | 13,807 | 2.9 | 14,143 | 6.7 |
| 수출 | 억 달러 | 452 | -11.6 | 495 | 9.5 | 488 | -1.5 |
| 수입 | 억 달러 | 511 | -9.0 | 622 | 21.6 | 657 | 5.6 |
| FDI(실행기준) | 억 달러 | 30 | -42.2 | 54 | 77.9 | 49 | 13.7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 지린성

| 구분 | 단위 | 2016 | | 2017 | | 2018 | |
|---|---|---|---|---|---|---|---|
| |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 GDP | 억 위안 | 14,777 | 6.9 | 14,945 | 5.3 | 15,075 | 4.5 |
| 1인당 GDP | 위안 | 53,868 | 7.3 | 56,102 | 6.0 | - | - |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26,530 | 6.5 | 28,319 | 6.7 | 30,172 | 6.5 |
| 1인당 농민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12,123 | 7.0 | 12,950 | 6.8 | 13,748 | 6.2 |
| 고정자산투자 | 억 위안 | 13,923 | 9.6 | 13,284 | 1.4 | - | 1.6 |
| 소비재소매총액 | 억 위안 | 7,310 | 9.9 | 7,856 | 7.5 | - | 4.8 |
| 수출 | 억 달러 | 50 | -8.1 | 53 | 6.9 | 49 | -6.7 |
| 수입 | 억 달러 | 142 | -2.1 | 144 | 1.7 | 157 | 9.2 |
| FDI(실행기준) | 억 달러 | 94 | 10.0 | - | - | - |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 헤이롱쟝성

| 구분 | 단위 | 2016 | | 2017 | | 2018 | |
|---|---|---|---|---|---|---|---|
| |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수치 | 증가율(%) |
| GDP | 억 위안 | 15,386 | 6.1 | 16,200 | 6.4 | 16,362 | 4.7 |
| 1인당 GDP | 위안 | 40,432 | 6.5 | 42,699 | 6.7 | - | - |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25,736 | 6.3 | 27,446 | 6.6 | 29,191 | 6.4 |
| 1인당 농민주민 가처분소득 | 위안 | 11,832 | 6.6 | 12,665 | 7.0 | 13,804 | 9.0 |
| 고정자산투자 | 억 위안 | 10,432 | 5.5 | 11,080 | 6.2 | - | -4.7 |
| 소비재소매총액 | 억 위안 | 8,403 | 10.0 | 9,099 | 8.3 | - | 6.3 |
| 수출 | 억 달러 | 50 | -20.9 | 53 | 4.4 | 44 | 16.7 |
| 수입 | 억 달러 | 88 | -10.7 | 137 | 18.9 | 220 | 95.8 |
| FDI(실행기준) | 억 달러 | 58 | 6.8 | 58 | 0.3 | 59 | 1.5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 한국과 동북3성 지역별 교역현황 (2018년 기준)

| 구분 | 랴오닝성 | | 지린성 | | 헤이룽장성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교역액 | 10,932 | -1.1 | 904 | -6.9 | 404 | 68.3 |
| 수출 | 5,348 | -0.2 | 409 | 2.9 | 75 | 20.9 |
| 수입 | 5,584 | -1.8 | 495 | -13.7 | 329 | 85.6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 한국과 대 동북3성 지역별 투자규모 (2018년 기준)

| 구분 | 랴오닝성 | | 지린성 | | 헤이룽장성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투자금액 (실행기준) | 49 | 13.7 | - | - | 59 | 1.5 |

* 자료원: 동북3성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중국 지재권 동향

2019년 중국은 지재권보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를 겪었는바 지재권보호를 강화하는 원칙성 지도문헌인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 반포 되었고 상표법의 수정완성본이 정식 시행되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허와 상표권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1,500억위안을 초과하였고 지재권 수출입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하였다.

### ○ 중국 연도별 지재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특 허 | 1,381,594 | 1,542,002 | 1,400,661 |
| 실용신안 | 1,687,593 | 2,072,311 | 2,268,190 |
| 디자인 | 628,658 | 708,799 | 711,617 |
| 상 표 | 5,748,000 | 7,371,000 | 7,837,441 |
| 합 계 | 9,445,845 | 116,941,125 | 12,217,909 |

* 자료원: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사이트

### ○ 한국의 중국내 지재권 출원현황(2018년 기준)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특 허 | 13,764 | 13,180 | 17,283 |
| 실용신안 | 506 | 809 | 972 |
| 디자인 | 2,135 | 2,592 | 2,481 |
| 상 표 | 20,515 | 16,200 | / |
| 합 계 | 36,920 | 32,781 | / |

* 자료원: 중국특허청

### ○ 동북3성 연도별/권리별 지재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 랴오닝성 | 지린성 | 헤이룽쟝성 |
|---|---|---|---|
| 발 명 | 7,176 | 2,868 | 4,309 |
| 실용신안 | 24,088 | 9,493 | 13,066 |
| 디자인 | 3,885 | 1,524 | 2,060 |
| 상 표 | 10,4154 | 63,895 | 79,846 |
| 합 계 | 139,303 | 77,780 | 99,281 |

* 자료원: 중국특허청

### ○ 랴오닝성 지재권 보호센터 선양에서 개소

- 2018년 1월31일 국가 지식산권국으로 부터 중국(선양)지식재산권보호센터"설립을 허가받고 2019년 10월 17일에 정식 오픈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북3성에서 개소한 첫 지재권보호 센터이다. 보호센터는 선양의 첨단장비 제조업 위주로 빠른 심사와 권리확정, 권리보호 범위를 포함하여 권리확정 심사, 행정집법, 침해지원, 중재조정, 사법접점 등 여러 관련 절차에서 빠른 협동성으로 보호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 퀄리티와 가치가 있는 특허신청에 한하여 녹색통로를 개통하여 발명특허 인증기간은 기존의 2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실용신안은 기존의 7~8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디자인은 4~6개월에서 5~7일로 단축할수 있게 되어 혁신성과가 빠른 시장수요에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와 디자인 침해 사건은 10일내로 종결할 예정이고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건은 1개월 내에 종결할 예정이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현지 바이어/대리상 등 상표 무단 선출원 피해

- 현지 바이어나 대리상이 우리기업의 상표권 무단 선 출원(등록) 사례가 아직도 존재한다. 2019년

선양 데스크에 문의한 D사는 자사의 상표가 현지(칭도우) 대리상이 먼저 상표를 선 등록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데스크 로펌에 자문한 결과 양도를 건의 드린후 상호 합의하에 상표 양도를 진행 중이다.

- D사와 같은 바이어 선등록 경우는 선의적인 행위라도 양도절차에 따른 경제와 시간적 손실을 보게 되어 만약 악의적 선 등록 일 경우 상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양도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으며 많은 금액을 내고 양도합의를 얻어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전 혹은 초기에 반드시 지재권 확보가 선행 시 되어야 하고 피해를 당할 경우 확보한 지재권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 지속적인 모조품 단속에도 여전한 모조품 존재

- D사는 2016년부터 선양 데스크를 통하여 사스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선양 및 칭도우 지역에 대한 모조품 유통 및 생산 등 사실이 확인되어 IP-DESK의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모조품 단속을 추진해 온 결과 비교적 좋은 단속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행정단속의 단속력이나 벌금액이 높지 않은 관계로 재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좀더 강력한 단속수단인 형사단속 추진을 검토할 의향이 있었으나 IP-DESK의 지원사업이 없었고 행정단속 대비 형사단속 비용부담이 더 크고 소요기간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여서 행정단속까지 중단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4 | 354 | 71 | 0 | 2 | 6(1) | 37 | 51 |
| 2015 | 330 | 113 | 0 | 2 | 5(1) | 7 | 19 |
| 2016 | 417 | 217 | 0 | 0 | 3(3) | 18 | 28 |
| 2017 | 371 | 97 | 2 | 1 | 3 | 6 | 38 |
| 2018 | 182 | 55 | 0 | 1 | 1 | 1 | 3 |
| 2019 | 134 | 34 | 0 | 1 | 0 | 3 | 2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동북3성 지재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재권 관할부서의 구조조정으로 작년까지 지방관련 기관의 인사 등 변동으로 다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양 IP-DESK는 2019년 6월, 10월 2회에 걸쳐 주선양대한민국영사관 경제영사와 함께 선양시 시장감독관리국 및 지재권보호센터 방문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과 지재권 세미나 및 모조품 설명회 등 행사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이동식 IP-DESK 운영

- 2019년 선양무역관은 2,3선 도시 미개척 시장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업 참여기업 및 관할지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참가기업 대상으로 총 6회의 이동식 IP-DESK 운영을 통하여 IP 지원사업 홍보 및 잠재 신청기업 발굴, 침해시 대응방안 등 내용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 2019년(4월) 길림시 한국 우수상품전
  - 2019년(4월) 대구 무역사절단
  - 2019년(6월) 하얼빈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
  - 2019년(8월) 장춘 동북아 전시박람회
  - 2019년(9월) 랴오닝성 우수 상품전
  - 2019년(9월) 하얼빈 수출상담회
  - 2019년(11월) 2019년 충북농식품사절단

### ○ 중문 네이밍 지원사업 추진

- 중문네이밍 지원사업은 선양 데스크의 특화사업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자체 네이밍이 어렵거나 현지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문상표 출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중문상표의 매년 신청건수 증가와 문자의 고갈로 높은 수준의 중문 네이밍 추천 및 지원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기업의 중국인 직원채용으로 자체로 네이밍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래는 중문 네이밍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한 사례이다.

CAVIALL

凯碧儿

## 4. 우수사례

### ○ 선등록 상표권의 3년 불사용 취소신청 대응관련 행정지원

- B사는 2013년에 "M********"란 상표 출원하고 상표권을 획득하였으나 동일 상표 사용을 원하는 중국 회사가 3년 불사용을 이유로 B사의 상표권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다. B사는 상표권 등록 당시 사용한 로펌은 담당자 변경 등 원인으로 상황 해결이 어려웠으며 상표권 취소 신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선양 IP-DESK에 관련 내용 자문 및 협조요청을 해왔다. 이에 선양 IP-DESK는 무역관 대행로펌에 대응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한 결과, 최종 중국회사의 3년 불사용 취소신청이 기각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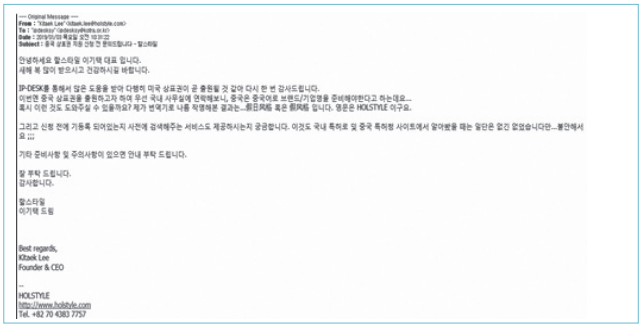

### ○ 니스분류표 제11판(2019 문본) 번역본 발간

- 니스분류 제11판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을 담은 2019년 문본(文本)의 번역 및 발간을 통해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출원시 상표의 권리범위 선정 정확성 및 출원·등록시 편의 제공 목적으로 책자발간을 진행하였고 중국지역 각 데스크에 관련 책자를 배포완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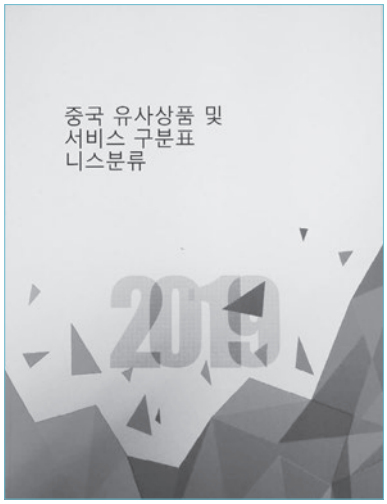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2019년 길림시 한국 우수상품전 (4월)

2019년 길림시 한국 우수상품전 (4월)

2019년 대구무역사절단 (4월)

2019년 대구무역사절단 (4월)

2019년 하얼빈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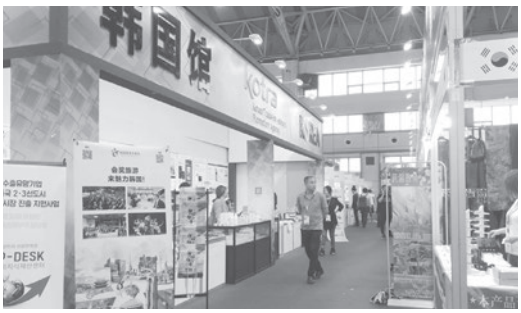

2019년 하얼빈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6월)

2019년 장춘 동북아 전시박람회 (8월)

2019년 장춘 동북아 전시박람회 (8월)

랴오닝성 우수 상품전 (9월)

랴오닝성 우수 상품전 (9월)

2019년 하얼빈 수출상담회 (9월)

2019년 하얼빈 수출상담회 (9월)

2019년 충북농식품사절단 (11월)

2019년 충북농식품사절단 (11월)

피침해실태조사 실무진 협의체 (4월)

선양시 시장감독관리국과 네트워크 구축(6월)

중한 지재권 협의체(11월)

중한 지재권 협의체(11월)

# Ⅵ 시안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시안 IP-DESK 는 2016년 6월, IP-DESK 사업 시작과 함께 중국 시안무역관에 개소하였다. 중국 서부지역인 산시(섬서), 간쑤, 닝샤, 쓰촨, 충칭 등지를 관할지역으로 2019년 기준 관리인력 1명과 고문변호사 1명, 지원인력 1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 자문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6-1 인력 현황 : 총 2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김태민 | KOTRA (과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난핑판 | KOTRA (현지직원) | 중국 | - | 지원인력 |

표 2-6-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시안 무역관 內 |
| 주 소 | 陕西省 西安市 高新区 锦业路 12号 迈科商业中心1905 |
| 연락처 | +86-29-8883-1060 |

표 2-6-3 협력 로펌 : 총 3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Green Tree IP LawFirm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 | 베이징 | 40명 | 정청송 변리사 |
| LIFANG&PARTNERS IP LAW FIRM (북경리팡변호사사무소) | 베이징 | 150명 | 김춘국 변호사 |
| 시안 야신즈쟈 지식재산권대리사무소 (西安亚信智佳知识产权代理事务所) | 시안 | 12명 | 단국강(段国刚) 변리사 |

## 2.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경제동향

#### ○ 2019년 省별 GDP 총액 및 성장율

- 2019년 GDP 총액에서 31개 지역 중 쓰촨 6위, 산시 14위, 충칭 17위, 간쑤 27위, 닝샤 29위에 각각 해당되는데, 이 중 산시성의 경우 랴오닝성을 제치고 GDP 규모 기준 전국 14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성장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할지 내 5개 성/시 모두가 상위권에 위치하며, 중국 전체 성장률인 5.6%를 상회하는 등 비교적 높은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표 2-6-4 2016-2019 서부지역 GDP현황 (단위 : 억CNY, %)

| 구분 | 쓰촨 | | 산시(섬서) | | 충칭 | | 간쑤 | | 닝샤 | |
|---|---|---|---|---|---|---|---|---|---|---|
| | 총액 | 증가율 | 총액 | 증가율 | 총액 | 증가율 | 총액 | 증가율 | 총액 | 증가율 |
| 2017 | 36,980 | 8.1 | 21,898 | 8.0 | 19,500 | 9.3 | 7,677 | 3.6 | 3,453 | 7.8 |
| 2018 | 40,678 | 8.0 | 24,438 | 8.3 | 20,363 | 6.0 | 8,246 | 6.3 | 3,705 | 7.0 |
| 2019 | 46,616 | 7.5 | 25,793 | 6.0 | 23,601 | 6.3 | 8,718 | 6.2 | 3,748 | 6.5 |
| 인구(만명) | 8,341 | | 3,864 | | 3,102 | | 2,637 | | 688 | |

* 중국국가통계국, 성시별 정부 통계, 현지언론자료 종합

#### ○ 지역별 주요 산업 및 특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 제조업, 대외무역 강화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 유지하고 있으며, 산시성은 반도체, 자동차, 항공 분야에 닝샤자치구는 농업 및 기타제조업 분야에, 간쑤성은 전력 및 자원개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반도체, 삼성SDI 등 기업이 진출해있다. 특히, 中 최대규모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서부제조업의 중심역할과, 지리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연해지역과 CIS · 유럽을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쓰촨성)** 쓰촨성은 서부내륙 글로벌 거점으로 고도 성장, 중국-유럽간 물류허브 역할함과 동시에 소비지출 수준이 매우 높은 소비중점 도시이다. 롯데백화점 등이 진출해있으며, 이외 제조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IT/전자, 바이오, 컨텐츠 등 전략산업 중점 육성 중이다.

**(충칭)** 연간 3백만대 규모의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진출해 있으나, 최근 시 단위의 산업 재편(부실기업 통폐합) 추진 중이며, 스마트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표 2-6-5 성별 주요 산업내역

| 구분 | 주요 산업 |
|---|---|
| 산시성 | 자동차, 환경보호, 스마트제조, 고급장비제조, 농업현대화, 차세대IT, 집적회로, 생물의약, 문화서비스, 에너지화공, 항공우주, 신소재, 식품가공 |
| 쓰촨성 | 전자정보, 의약, 식품, 화공, 철강, 건축자재, 기계, 자동차, 궤도교통, 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항공우주, 신소재, 지능제조장비, 신에너지, 생산성서비스업 |
| 충칭시 | 전자정보, 자동차, 기계, 지능제조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궤도교통, 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항공우주, 화공, 의약, 식품, 생산성서비스업 |
| 간쑤성 | 신에너지, 화공, 생물의약, 농축산가공, 건축자재, 환경보호 |
| 닝샤 | 신에너지, 신소재, 통용항공, 건축자재, 식품가공 |

* 2018년 국무원『산업발전지도목록』참조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관리감독 기구 개편

- 2019년 1월, 산시성 정부는 지적재산권국 외 6개 부처를 시장감독관리국으로 통폐합, 모든 성의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적 표시 등 지재권 업무를 통일 관리토록 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연3회 지적재산권업무회의를 개최하며, 시안 IP-DESK 또한 참여,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현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 중국 서부권역 상표 출원 현황

- 2019년 중국 전체 상표 신청 건수 758만 건 중 서부지역 5개 성시의 비중은 약 8%(617,604건)로 높지 않은 편이나, 그 성장세는 매우 빠른 편으로, 전년대비 상표신청건수, 등록건수, 유효등록상표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산시성은 각각 17% 39% 30%, 쓰촨성은 10% 36% 32% 충칭시는 7%, 27% 28%가 증가하며, 중국 전체 증가율(약 2%) 대비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2-6-6 2018-2019 서부지역 상표 출원현황

| 구분 | 2018 | | | 2019 | | |
|---|---|---|---|---|---|---|
| | 신청건수 | 등록건수 | 유효등록 | 신청건수 | 등록건수 | 유효등록 |
| 산시성 | 115,081 | 72,982 | 310,975 | 134,777 | 101,488 | 402,944 |
| 쓰촨성 | 255,692 | 165,681 | 631,570 | 281,564 | 225,104 | 833,692 |
| 충칭시 | 133,952 | 92,694 | 377,407 | 143,996 | 117,711 | 484,628 |
| 간쑤성 | 30,665 | 21,193 | 73,321 | 39,244 | 28,474 | 98,929 |
| 닝샤 | 15,851 | 11,367 | 43,186 | 18,023 | 13,674 | 55,642 |

- 2019년 중국 성시별 상표 출원량

| 省 | 申请件数 | 注册件数 | 有效注册量 | 省 | 申请件数 | 注册件数 | 有效注册量 |
|---|---|---|---|---|---|---|---|
| | 7582356 | 6177791 | 23543513 | 湖南省 | 198822 | 158843 | 578641 |
| 北京市 | 546590 | 474645 | 1921978 | 广东省 | 1463989 | 1187686 | 4477109 |
| 天津市 | 73310 | 56538 | 245828 | 广西壮族自治区 | 89684 | 69572 | 235568 |
| 河北省 | 234388 | 197054 | 679742 | 海南省 | 36627 | 26944 | 99885 |
| 山西省 | 65833 | 47756 | 181625 | 重庆市 | 143996 | 117711 | 484628 |
| 内蒙古自治区 | 63759 | 54247 | 202198 | 四川省 | 281564 | 225104 | 833692 |
| 辽宁省 | 117269 | 95524 | 397769 | 贵州省 | 89652 | 62033 | 212200 |
| 吉林省 | 64441 | 57058 | 216256 | 云南省 | 116347 | 91901 | 360061 |
| 黑龙江省 | 85783 | 70128 | 272831 | 西藏自治区 | 10510 | 9532 | 30763 |
| 上海市 | 438815 | 361036 | 1472627 | 陕西省 | 134777 | 101488 | 402944 |
| 江苏省 | 488511 | 414190 | 1545380 | 甘肃省 | 39244 | 28474 | 98929 |
| 浙江省 | 733528 | 610478 | 2503624 | 青海省 | 12303 | 10101 | 40592 |
| 安徽省 | 234339 | 186040 | 608523 | 宁夏回族自治区 | 18023 | 13674 | 55642 |
| 福建省 | 432736 | 350193 | 1282576 | 新疆维吾尔自治区 | 59058 | 38522 | 185954 |
| 江西省 | 151127 | 120407 | 402535 | 中国香港 | 128121 | 129563 | 610556 |
| 山东省 | 465121 | 372223 | 1297764 | 中国澳门 | 1446 | 1380 | 7199 |
| 河南省 | 353497 | 271345 | 873721 | 中国台湾 | 19719 | 19270 | 177309 |
| 湖北省 | 189427 | 147131 | 546864 | | | | |

* 자료원 : 중국 공상총국 상표국

## ○ 서부지역 주요 지재권 침해 사례

- 2018년(2019년 발표자료 기준), 서부지역의 지재권 관련 소송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부지역의 빠른 발전에 따라 실제 침해 사례가 증가한 요인도 있겠으나 동시에 복잡했던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와 집법기관이 개선되면서 피해 확인 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증가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 서부 지역 내 주요 적발된 지재권 침해 유형은 ① 위조제품(연초, 술, 의약품) 제조 및 유통 ② 복제 컨텐츠(서적, 게임) 유통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결문을 통해 보았을 때, ① 위조제품 제조 및 유통 건의 경우 서부지역 내에서 제조되는 케이스가 상당수 확인 되었으나, ② 무단복제 컨텐츠(서적, 게임) 유통의 경'우 주로 타지역에서 복제가 완료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 유통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위주(불법유통 금액의 약 3배 수준)의 판결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 (산시성 시안시) 2019년 발표된 〈시안시중급인민법원지적재산권사법보호현황(2018)〉에 따르면, 2018년 시안시 중급법원(특허, 신품종 식물, 반도체 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명상표 안건 처리 담당)에서 수리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안은 총 1,672건으로, 각각 저작권 침해 348건, 상표분쟁 686건, 특허침해 463건, 기타 175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53.3%(1,012건) 증가한 수치로 타 지역 대비 매우 빠른 증가세를 유지 중에 있다.

- (쓰촨성) 2019년 발표된 〈2018쓰촨법원지적재산권사법보호백서〉에 따르면, 2018년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안은 총 8,618건(민사안건 8,427건, 형사안건 179건, 행정안건 12건)으로 2017년 5,140건 대비 67.57%(3,473건)가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 ○ 우리기업 주요 피해사례

-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와 인기가 증가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 또한 연이어 발생 중으로, 아직까지 중국 내 상표등록 관련 국내기업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아, 무단선점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는 주로 아래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중국 내 사업파트너 (수입업자)의 상표 무단 선점
  2. 전시회(실크로드박람회 등)에서 만난 바이어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
  3. 상표 브로커들을 통한 상표 무단 선점

- 현재, 중국 내에서도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바, 과거에 비해 상표권 회복 가능성이 비교적 커졌으나 이를 위해선 충분한 증거수집 및 보관이 필요하며,

- 아울러, 상술된 세 가지 사례 모두 일부 유력 로펌(또는 브로커)과의 연관성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바, 피침해 확인시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대에게 법률적 준비/검토 시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로펌 또는 KOTRA IP-DESK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원활한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7 | 188 | 62 | 0 | 2 | 17 | 11 | 259 |
| 2018 | 110 | 40 | 0 | 8 | 13(1) | 3 | 50 |
| 2019 | 35 | 16 | 0 | 6 | 5(1) | 0 | 5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수출 초보기업 대상 홍보 강화

- 중국지역 진출에 도전하는 수출 초보기업 (1,500개사 대상)  상표디자인출원지원 및 피침해조사 지원 등'해외지재권보호사업안내'를 안내하였으며, 류/상표별 출원이 필요한 상표등록의 특성상 자금적 이유로 출원을 주저하는 기업들 대상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주력하였다.

### ○ 빠른 기업 문의 대응

- 우리기업의 주요 피해/문의사례를 취합, 주요 대응방법을 사전에 정리해두어 기업문의에 1차적으로 활용,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약체결 로펌을 통한 객관적인 추가 무료상담을 48시간 이내 제공, 기업들의 질의사항에 적극 대응하는데 주력하였다.

**[주요 문의 및 안내 내용]**

- 상표는 등록했으나 특정 제품(류)에만 등록한 경우
  - ☞ 상표법 내 신의성실(7조), 지명상표(13조), 대리관계(15조), 선권리(32조) 등을 근거로 대응
- 상표를 미등록한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선점 당한 경우
  - ☞ 상표법에서 규정한 대리관계(15조)에 의거, 해당 타인과의 계약 및 업무거래 관계가 있으며, 해당 타인이 본 상표의 존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경우 해당인이 선점한 상표는 무효
  - ☞ 이에, 전시회 등 참석 시에는 만난 모든 이들의 명함과 상담 내용을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음
  - ☞ 다만 상표법 제15조는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만 무단 선점 상표를 인정하고 있는바 유의 필요
  - ☞ 아울러, 32조에 의거 해당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판매액, 언론보도 내용, 수상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경우 '악의적'(유사성 및 실사용의지 기준 판단) 선점 불가
  - ☞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영향력', '부정한 수단'등 32조 법해석 관련 상세내용 안내

### ○ 현지 정부기관과의 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

- 2019년 1월 시장감독관리국으로의 통폐합 이후,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한 시장감독관리국 및 집법기관과의 소규모 그룹분기 1회(총 3회, 5월, 7월 11월) 진행하였으며, 2020년 〈중국 서부지역 주요 지재권 피해 사례 및 대응방안〉 책자제작과, 지적재산권중재위원장을 초빙, 우리 기업 대상 주요 피해사례 및 중재방향에 대한 설명회 진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초점을 맞춘 업무 전개에 집중하였다.

## 4. 우수사례

### ○ 기업-당국의 수요에 맞춘 진위식별설명회 개최 통한 효율성 제고

- 쓰촨성은 중국 내 주요 소비도시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2018년 간쑤성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당시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설명회 개최 희망지역을 조사, 기업 의견에 따라 2019년 개최지로 쓰촨성 개최를 결정하였다.

- 동 과정에서 쓰촨성 내 기진출 및 진출희망기업을 파악,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설명 청취 희망기업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곧 현지 당국의 사업 관심도 및 참여도 또한 자연스럽게 고취하는 결과로 이어져 시장감독관리국 내 4개처 및 8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 이를 통해 선정된 대표기업 4개사(삼성전자, LG생활건강, JM Solution, 정관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지 침해 현황을 사전 확인,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당일 설명회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양측의 질의사항을 사전 공유 및 전달하여 충분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한편, 금번 사업 과정에서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의 사업 참여가 당국의 사업 관심도 격상과 양국 지재권 관리 당국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또한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전북동북아사절단 (4월)

충북중국1차사절단 (4월)

한-중 스마트시티포럼(7월)

시안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11월)

쓰촨성위조상품식별세미나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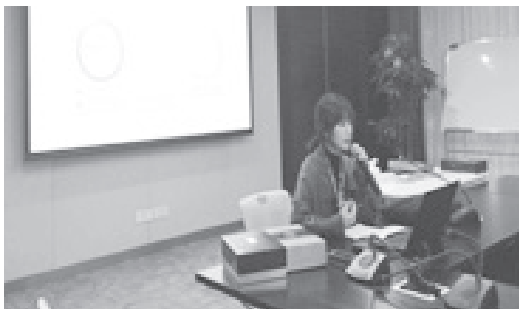

쓰촨성위조상품식별세미나 (9월)

# Ⅶ 홍콩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홍콩 IP-DESK는 2019년 3월 29일 중국의 7번째 IP-DESK로 개소하였다. 2020년 3월 현재 관리 인력 1명과 전담 인력 1명, 총 2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개의 현지 수행대리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7-1 인력 현황 : 총 2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나어진 | KOTRA (과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한열림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표 2-7-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홍콩 무역관 內 |
| 주 소 | Room 3102,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 Chai, Hong Kong |
| 연락처 | +852-2545-9500 |

표 2-7-3 협력 로펌 : 총 3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Kim & Company, Solicitors | 홍콩 | 8명 | 김정용 변호사 |
| Korchina TNC Limited | 홍콩 | 41명 | 이지수 부대표 |
| Uni-World Services Co Ltd | 홍콩 | 27명 | 박종영 팀장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홍콩, 대표적인 중계무역항이자 자유무역도시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원칙하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환 후 홍콩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경제 자유도 평가에서 2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유로운 금융·무역 도시로 발전해왔다. 홍콩은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사후 신고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으로의 수출금액 중 98.8%가 재수출되며, 홍콩 내수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추산한다.

#### ○ 중국 본토와의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2018년 말 기준 홍콩의 제1위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며,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중국-홍콩 교역량은 전체의 50.4%를 차지한다. 또한 2003년 중국-홍콩 CEPA 협정이 체결된 이후 상품교역과 서비스무역에서 지역 간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중국 본토 수출 시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협정 서비스무역협의에 따라'홍콩서비스제공자(Hong Kong Service Supplier)'로 인정된 기업에게 중국 본토 진출 시 외국기업에게 부여되는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된다.

#### ○ 최근 홍콩 경제성장 추이

최근 5년 동안 3% 미만의 저성장 추세를 이어오던 홍콩 경제는 2017년 3.8%, 2018년 3.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미-중 무역분쟁 및 홍콩시위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19년 1,2분기 연속 0.6% 성장에 그친데 이어 3분기 마이너스 2.9% 성장을 보여 2019년 종합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표 2-7-4 홍콩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지 표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上) |
|---|---|---|---|---|---|
| 인구(만명) | 731 | 735 | 740 | 748 | 752 |
| GDP(US$억) | 3,073 | 3,193 | 3,414 | 3,647 | 1,809 |
| 실질GDP성장률 | + 2.4% | +2.0% | +3.8% | +3.0% | +0.5% |
| 1인당GDP(US$) | 42,100 | 43,400 | 46,180 | 48,958 | - |
| 소비자물가지수 | +3.0 | +2.4 | +1.5 | +2.4 | +2.6 |
| 실업률 | 3.3 | 3.4 | 3.1 | 2.8 | 2.9 |
| 총수출(US$억) | 4,622 | 4,600 | 4,969 | 5,331 | 2,428 |
| 재수출(US$억) | 4,562 | 4,545 | 4,913 | 5,272 | 2,399 |
| 자체수출(US$억) | 60 | 55 | 56 | 59 | 29 |
| 총수입(US$억) | 5,188 | 5,139 | 5,586 | 6,053 | 2,741 |
| 총교역(US$억) | 9,810 | 9,739 | 10,555 | 11,384 | 5,168 |
| 무역수지(US$억) | -566 | -539 | -617 | -722 | -313 |
| 외환보유고(US$억) | 3,558 | 3,113 | 4,313 | 4,246 | - |

*자료원 : 홍콩통계청, 홍콩무역발전국, 홍콩금융관리국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체계

홍콩기본법(The Basic Law of HKSAR) 139조, 140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 내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따라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상표권 등을 등록했더라도 홍콩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정부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홍콩지식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產權署)'이며, '홍콩해관(Customs&Excise Department, 海關)은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상표권, 저작권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변리사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출원 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없다. 따라서 간단한 상표권 등록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적 자문을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 홍콩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상표권 출원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 들어 전년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도 여름 이후 지속된 홍콩시위로 인해 현지 경제 활동이 둔화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산업재산권의 출원현황은 전년대비 대동소이하다. 표준특허는 16,521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단기특허는 791건으로 전년과 동일, 디자인은 2,576건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표 2-7-5 연도별 홍콩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상표권 | 출원 | 39,179 | 36,181 | 37,630 | 40,331 | 36,980 |
| | 등록 | 37,476 | 35,504 | 35,488 | 34,970 | 33,371 |
| 표준특허 | 출원 | 12,212 | 14,092 | 13,299 | 15,986 | 16,521 |
| | 등록 | 5,963 | 5,698 | 6,671 | 9,651 | 6,780 |
| 단기특허 | 출원 | 702 | 762 | 693 | 791 | 791 |
| | 등록 | 495 | 485 | 582 | 763 | 520 |
| 디자인 | 출원 | 2,769 | 2,515 | 2,609 | 2,583 | 2,576 |
| | 등록 | 4,702 | 4,432 | 4,604 | 4,547 | 4,579 |

*자료원 : 홍콩지식산권서

한국의 홍콩 산업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가장 많으며 표준특허, 디자인, 단기특허가 순서대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2018년 기준 출원 1,163건, 등록 1,049건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홍콩(출원 14,953건, 등록 12,679건), 중국(출원 7,302건, 등록 6,117건), 미국(출원 4,045건, 등록 3,568건), 일본(출원 3,076건, 등록 2,502건)에 이어 전 세계 다섯 번째로 홍콩 상표권 취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었다.

표준특허와 디자인 출원도 상표권에는 못 미치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단기특허(보호기간 8년)의 경우,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에 비해 보호기간이 짧아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7-6 한국의 홍콩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상표권 | 출원 | 1,343 | 1,205 | 1,050 | 1,163 |
| | 등록 | 1,014 | 1,262 | 996 | 1,049 |
| 표준특허 | 출원 | 139 | 170 | 179 | 276 |
| | 등록 | 70 | 54 | 66 | 105 |
| 단기특허 | 출원 | 12 | 17 | 9 | 6 |
| | 등록 | 3 | 11 | 14 | 10 |
| 디자인 | 출원 | 140 | 102 | 92 | 122 |
| | 등록 | 116 | 95 | 114 | 95 |

* 2020.3.4.일 기준 2019년도 통계 미발표

* 자료원 : 홍콩지식산권서

## ○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原授專利制度) 도입

2019년 12월 19일 홍콩지식산권서는 직접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수행하고 표준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原授專利制度)'를 도입하였다.

지금껏 홍콩에서 2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 표준특허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지정 특허청(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영국지식재산청(UKIPO), 유럽지식재산청(EPOUK))에서 특허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홍콩에 재등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원수특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외 특허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홍콩지식산권서에 표준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 홍콩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보호등록(Recordation) 제도

홍콩해관은 공항, 항구, 시내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지식재산권 보호한다. 2019년 홍콩해관은 총 32,94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실시하였고, 24,809명을 체포를 하였다.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는 총 20억 4천만 홍콩달러(약 한화 3천억원)에 달하며 액세서리, 식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이 주를 이뤘다.

홍콩해관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상표권이 홍콩에 등록되어야 하고, ② 홍콩해관에서 '보호등록(Recordat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조상품이 발견되더라도 홍콩해관에서 공식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 최근 3-4년간 우리 기업의 홍콩 상표권 출원 신청 건수는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나, 이 중 26건(2019.11월 기준)만이 홍콩해관에 보호등록 되어있다. 따라서 향후 홍콩 유통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동명 상표 선등록으로 인한 우리기업 진출 애로 발생

홍콩은 무관세, 간단한 유통구조, 높은 구매력, 많은 해외 관광객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브랜드에서 중화권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규모 대비 등록 상표권이 많으며, 홍콩에 신규 진입하려는 우리기업의 상표와 동명 브랜드가 이미 홍콩에 등록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Y社는 자사 건강식품 브랜드 수출을 위해 홍콩무역관과 마케팅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의 해외브랜드가 이미 홍콩에 상표등록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등록된 상표권의 분류(Class)도 Class 5(diet food, supplements)로 동일하여, Y社는 브랜드 상표명부터 다시 고안하는 등 홍콩시장 진출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홍콩 IP-DESK에서는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준비단계 부터 필히 현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 홍콩 전시회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피침해 대응 필요

홍콩은 명실상부 아시아의 전시회 허브도시로 연간 약 150여개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현장에서 간혹 우리기업과 해외기업 간 지재권 침해·피침해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디자인 요소나 브랜드에 민감한 주얼리 전시회 경우 유명 브랜드에서 사설 IP 대리인을 고용하여, 자사 디자인이나 상표를 도용한 전시품이 있는지 탐색하고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또한, 카피 전시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홍콩해관에서 압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 경고장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P-DESK,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시회 참가 준비 단계에서 자사의 전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9 | 158* | 14 | 0 | 0 | 7 (0) | 17 | 70 |

* 이동식 IP-DESK 상담 83건 포함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홍콩 지식재산권 지원 네트워크 구축

2019년 3월 29일 개소한 홍콩 IP-DESK는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정부 부처, 법조인, 진출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개소 초기단계부터 홍콩지식산권서, 홍콩해관, 홍콩한인상공회, 홍콩총영사관과 협력하여 현지 지재권 설명회, 자료발간 등 연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Business of IP Asia Forum(2019.12) 등 현지 지식재산권 분야 행사에 참가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다.

#### ○ 마케팅 사업 연계 지재권 설명회 개최 및 이동식 IP-DESK 운영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참가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와 이동식 IP-DESK를 운영했다. 특히, 미용전, 가정용품전, 주얼리전, 전자전 등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소비재 전시회가 다수 개최되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전시회 참가 우리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특히, 600여개사의 한국기업이 참가하는 홍콩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2019)에서는 광저우 IP-DESK와 협업으로 통합 한국관내 '중국·홍콩 통합 이동식 IP-DESK'를 운영했다. 또한 중국본토 화장품 유통전문가의 지재권 보호전략 강의를 마련하여 홍콩전시회를 통해 중국본토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다채널 활용 적극적인 대외 홍보 추진

홍콩 IP-DESK 개소 직후 시작된 홍콩 범죄인인도법 반대 시위로 인해 현지 경기 위축되고, 지재권사업에 대한 기업수요도 예상치를 하회하였다. 이에 홍콩 IP-DESK는 추후 기업들의 홍콩 비즈니스가 재개될 때, IP-DESK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콩 IP-DESK와 그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인회지내 IP-DESK 특집기사 게시

무역관 SNS내 카드뉴스 방식으로 홍보

우선 유력 교민신문(23회), 무역관 뉴스레터(29회), 한인상공회지(IP-DESK 특집기사 게시), 무역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지 진출기업 대상 IP-DESK를 소개하였다. 또한, 주얼리전, 전자전, 미용전 등 홍콩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한국기업 대상 사전에 이메일로 홍콩IP-DESK를 소개하고 전시기간 중 부스 방문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출원지원 사업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 4. 우수사례

### ○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홍콩 IP-DESK는 주홍콩총영사관, 홍콩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2019년 8월 21일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IP-DESK 개소 이래 최초 진행한 행사로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현지 진출 기업인, 기관 관계자, 법조인 등 약 46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발표 세션과 네트워킹 세션으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발표 세션은 (1) 홍콩 지재권 보호 체계 및 신규 특허제도, (2) 지식재산권 실제 분쟁사례 및 보호전략, (3) 홍콩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등록 절차로 구성되었으며, IP-DESK 자문변호사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 및 집행하는 홍콩지식재산권서(IPD)와 홍콩해관(HK Customs)이 연사로 나섰다. 이후 스탠딩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법조인, 정부관계자 등 현지 지재권 전문가 집단 간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첫째, 홍콩지식재산권서(IPD)가 기존 특허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특허제도인 '원수특허(Original Grant Patent, 原授專利制度)'도입 일자(2019년 12월 19일)을 최초로 외부 공개했다는 점, 둘째, 홍콩해관과 사전 협조 하에 홍콩 시내에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진출기업(화장품 L社, T社, 전자제품 社사 등)을 중점적으로 초청하여, 해관 보호등록을 통한 브랜드 상표권 보호방법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 홍콩의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제도 정보 전파

홍콩은 '특별자치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 중국 본토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IP-DESK는 중국 본토에만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면, 특별자치구에도 자동으로 연장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콩의 고유한 지식재산권제도를 안내하는데 집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식 IP-DESK, 전화/방문/이메일 등 기업 상담 시 홍콩의 지재권제도가 중국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주홍콩총영사관과 협업으로 '홍콩·마카오 지식재산권 한눈에 쏙'리플렛을 제작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지식재산권 유형, 출원절차를 기업 상담 시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다.

홍콩·마카오 지재권 리플렛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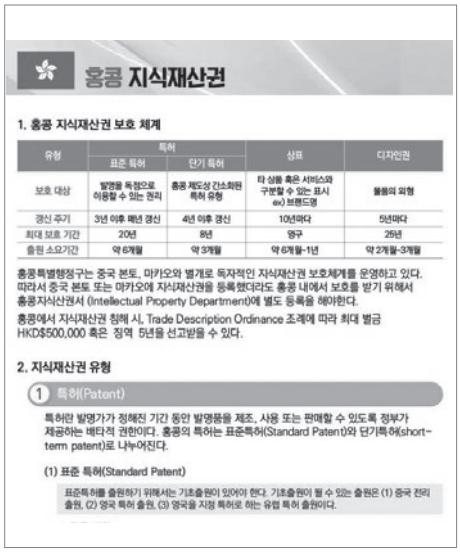
홍콩 지식재산권

1.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 유형 | 특허 | | 상표 | 디자인권 |
|---|---|---|---|---|
| | 표준 특허 | 단기 특허 | | |
| 보호 대상 | 발명을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홍콩 제도성 간소화된 특허 유형 | 타 상품 혹은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표시 ex) 브랜드명 | 물품의 외형 |
| 갱신 주기 | 3년 이후 매년 갱신 | 4년 이후 갱신 | 10년마다 | 5년마다 |
| 최대 보호 기간 | 20년 | 8년 | 영구 | 25년 |
| 출원 소요기간 | 약 6개월 | 약 3개월 | 약 6개월-1년 | 약 2개월-3개월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지식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에 별도 등록을 해야한다.

홍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시, Trade Description Ordinance 조례에 따라 최대 벌금 HKD$500,000 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유형

① 특허(Patent)

특허란 발명가가 정해진 기간 동안 발명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배타적 권한이다. 홍콩의 특허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진다.

(1) 표준 특허(Standard Patent)

표준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이 있어야 한다. 기초출원이 될 수 있는 출원은 (1) 중국 전리 출원, (2) 영국 특허 출원, (3) 영국을 지정 특허로 하는 유럽 특허 출원이다.

홍콩·마카오 지재권 리플렛②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홍콩 IP-DESK 개소식(3월)

현지진출 기업 및 기관 간담회(3월)

홍콩해관 면담(3월)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설명회(8월)

전자전 연계 지재권 설명회(10월)

미용전 연계 지재권 설명회(11월)

미용전 중국·홍콩 통합 IP 상담관(11월)

미용전 기업부스 방문 상담현장(11월)

Ⅷ

# 방콕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방콕 IP-DESK는 2008년 4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이어 전 세계 국가 중 2번째로 KOTRA 방콕무역관에 개소하였다. 태국 전체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3명으로 총 4명이 사업을 운영, 총 3개의 현지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1 인력 현황 : 총 4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윤하청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엄현주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 Tuanta Leebuntoondej | KOTRA (현지직원) | 태국 | - | 전담인력 |
| Nattwadee Siripanurak | KOTRA (현지직원) | 태국 | - | 전담인력 |

표 2-8-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방콕무역관 內 |
| 주 소 | Unit 4101-4104, 41st Floor, Bhiraj Tower at EmQuartie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
| 연락처 | +66-(0)2-035-1558 |

표 2-8-3 협력 로펌 : 총 3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 방콕 | 489명 | Mrs. Sukontip Jitmongkolthong 파트너 변호사 |
| Chinatham International Co., Ltd. | 방콕 | 4명 | Mr. Niti Kuntaramalee 변호사 |
| Auctorem International Co., Ltd. | 방콕 | 12명 | Mr. Nakarin Yensuang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경제동향

2019년 1분기 태국 경제 성장률은 2.8%, 2분기 성장률은 2.3%를 기록하면서 2014년 3분기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서는 2019년 2월, 2019년 태국 경제가 3.5~4.5%(중간치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와 태국 통화인 밧화 강세 지속 등으로 2019년 8월 발표에서 2019년 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3.2%로 하향 조정했다.

| 주요지표 | 단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인구(I) | 백만 명 | 67.000 | 67.240 | 67.460 | 67.650 | 67.793 | 67.913 |
| 명목 GDP(I) | 십억 달러 | 407.3 | 401.3 | 412.4 | 455.3 | 504.9 | 529.2 |
| 1인당 명목GDP(I) | 달러 | 6,080 | 5,968 | 6,113 | 6,731 | 7,448 | 7,792 |
| 실질성장률(I) | % | 1.0 | 3.1 | 3.4 | 4.0 | 4.1 | 2.9 |
| 실업률(I) | % | 0.8 | 0.9 | 1.0 | 1.2 | 1.2 | 1.2 |
| 소비자물가상승률(I) | % | 1.9 | -0.9 | 0.2 | 0.7 | 1.1 | 0.9 |
| 재정수지(GDP대비)(E) | % | -2.0 | -0.4 | -2.7 | -2.5 | -2.5 | -2.8 |
| 총수출(N) | 십억 달러 | 226.7 | 214.1 | 214.3 | 233.7 | 251.1 | 246 |
| (對韓 수출)(C) | 〃 | 4.5 | 4.1 | 4.1 | 4.6 | 4.9 | 4.8 |
| 총수입(N) | 〃 | 209.4 | 187.2 | 177.1 | 201.1 | 228.7 | 220.5 |
| (對韓 수입)(C) | 〃 | 8.5 | 7.0 | 7.3 | 8.0 | 8.9 | 8.3 |
| 무역수지(N) | 〃 | 17.3 | 26.8 | 36.5 | 32.6 | 22.4 | 25.6 |
| 경상수지(I) | 〃 | 11.6 | 27.8 | 43.4 | 44.1 | 32.4 | 31.8 |
| 환율(연평균) | 현지국/US$ | 32.48 | 34.25 | 35.30 | 33.94 | 32.31 | 31.20 |
| 해외직접투자(U) | 억 달러 | 55.8 | 16.9 | 123.7 | 170.6 | 177.1 | - |
| 외국인직접투자(U) | 억 달러 | 48.1 | 56.2 | 18.2 | 64.8 | 104.9 | - |

*2019년은 추정치

* 자료원: IMF(I), EIU(E), 태국중앙은행(T), 태국상무부(C), UNCTAD(U), KOTRA 방콕무역관

#### ○ 산업동향

태국은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자본재 및 부품 소재의 폭 넓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 가공무역을 통해 외자기업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기지 역할을 맡아 왔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은 태국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으로 태국 정부는 1960년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소형 상용차(픽업) 생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액션 플랜(2016~2036년)'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를 집중 육성함에 따라 이후 태국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정치동향

2019년 3월 24일 총선 실시 이후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를 통하여 5년 이상 집권해온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9년 7월 9일자로 제30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으며 총리가 속한 팔랑프라차랏당(PPRP)과 18개의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신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 사회복지,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 및 사용 합법화, 차량 공유 서비스 합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사항 이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신정부 출범이 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19개 연합정당으로 구성된 태국 정부의 정책 실행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정책동향

태국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후, 경제성장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을 최대 국정현안으로 두고 '태국 4.0'정책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태국 4.0'정책은 고부가가치 및 혁신주도 경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산업(스마트 산업), 스타트업(스마트 기업), 인적자본(스마트 피플)의 육성과 인프라(스마트 시티) 구축 등을 포함한다. 태국 정부는 이 같은 태국판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따라 디지털, 바이오, 나노, 첨단소재 등 4개 기술 기반 하에 12대 미래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12대 미래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전자, ③ 고급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현재 태국에는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폐전자제품 임시 수입 금지 조치, 전자 폐기물 수입 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2019년 12월 10일부터 환경 보호 및 도로 안전을 위해 개인용 중고차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사용을 본격 규제하고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할 예정으로 이처럼 태국 정부가 환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이 다양한 산업의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다.

## 한국기업 진출현황

태국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투자진출의 거점 중 하나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철강 및 전기전자 업체 등 제조업 위주(제조업 진출 190개사)로 약 400 개사가 진출해 있다. 금속가공 부문에는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태국 라용주 2016년 6월부터 용융아연도금강판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전자산업의 경우 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 및 LG 가전 공장이 위치해 협력업체 위주로 많이 진출해 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진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섬유산업 진출은 10여개사에 불과하다.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의 현지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에는 한국 홈쇼핑 기업, 오픈마켓, 광고 등 서비스 기업, 라인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식품 및 화장품 프랜차이즈 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지식재산권 보호는 태국 정부의 우선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태국은 2016년 8월 25일 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한 Thailand 4.0 지식재산 20년 로드맵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작, 보호, 상업화 및 집행, 커뮤니티 지식재산 권리(①지리적 표시(GIs), ②유전자원(GRs)/전통지식(TK)/전통문화 표현물(TCEs))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태국 내각은 현대화된 저작권 및 특허법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무부에 특허법 및 저작권 개정을 가속화하는데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Thailand 4.0 정책 아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강조, 기업 및 정부기관에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며 2019년 5월 21일 태국 정부부처에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시하였다. 또한 교육, 과학, 연구, 창조 각각 부처를 통합, 고등교육연구개혁부를 2019년 5월 2일 신설하며 지식재산의 창조와 상업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 ○ 연도별 지재권 출원현황

태국 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8년 총 63,040건으로 '17년 58,215건에 비해 8.3% 증가하였다.

표 2-8-4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구 분 | 특 허 | | | 상 표 | 합 계 |
|---|---|---|---|---|---|
| | 발 명 | 실용신안 | 디자인 | | |
| 2012 | 6,746 | 1,486 | 3,481 | 44,963 | 56,676 |
| 2013 | 7,407 (9.8% ↑) | 1,609 (8.3% ↑) | 3,802 (9.2% ↑) | 46,097 (2.5% ↑) | 58,915 (3.9% ↑) |
| 2014 | 7,930 (7.1% ↑) | 1,746 (8.5% ↑) | 4,077 (7.2% ↑) | 45,661 (0.9% ↓) | 59,414 (0.8% ↑) |
| 2015 | 8,167 (3.0% ↑) | 2,164 (23.9% ↑) | 4,461 (9.4% ↑) | 52,344 (14.6% ↑) | 67,136 (13.0% ↑) |
| 2016 | 7,820 (4.2% ↓) | 2,621 (21.1% ↑) | 4,923 (10.4% ↑) | 51,613 (1.4% ↓) | 66,977 (0.3% ↓) |
| 2017 | 7,865 (0.6% ↑) | 2,517 (4.0% ↓) | 5,122 (4.0% ↑) | 42,711 (17.2% ↓) | 58,215 (13.1% ↓) |
| 2018 | 8,149 (3.6% ↑) | 2,962 (17.7% ↑) | 5,469 (6.8% ↑) | 46,460 (8.8% ↑) | 63,040 (8.3% ↑) |

* 자료원 : 태국 지식재산국

## ○ 지식재산 침해·분쟁 현황

태국 중앙지식재산 및 국제거래 법원(이하 IP&IT 법원) 자료에 따르면 민·형사상 지식재산 침해 분쟁은 '18년 총 3,749건로 '17년 4,289건보다 12.59% 감소하였다.

표 2-8-5 IP&IT 법원 소송 통계 (단위 : 건)

| 연도 | 민사소송 | | | 형사소송 | | |
|---|---|---|---|---|---|---|
|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권 |
| 2014 | 120 | 96 | 40 | 4,421 | 709 | 20 |
| 2015 | 151 | 110 | 37 | 3,690 | 989 | 33 |
| 2016 | 205 | 121 | 72 | 2,829 | 983 | 28 |
| 2017 | 231 | 135 | 83 | 2,966 | 840 | 34 |
| 2018 | 220 | 124 | 61 | 2,518 | 803 | 22 |

* 자료원: the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인터뷰

위의 통계는 IP 심사절차를 포함하여 IP 라이선싱 및 침해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소송 분쟁을 나타내며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체포 후에도 사건을 합의할 수 있어 상표권과 비교하여 IP & IT 법원에 제기된 소송 분쟁이 적은 편이다.

## ○ 법규 개정 동향

태국은 현재 특허법(1979) 개정 중에 있으며, 이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개정에 따른 특허등록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과 관련된 특허 출원 형식을 포함한다. 2019년 1월 29일 내각이 개정안 초안을 승인하고 현재 국가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2단계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한 산업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하며, 현재 특허법개정위원회에서 초안을 검토 중에 있다.

태국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가입과 관련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2019년 1 월 28 일 WIPO에 마라케시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49 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현재 WIPO의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과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가입을 준비, 저작권법 개정 중에 있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현지 미등록 상표의 피침해 대응

현지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등록을 거절당했거나 출원 후 등록심사 중인 상표 즉, 미등록 상표의 경우 현지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피침해 발생시 대응 방안을 묻는 기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태국 상표법상 미등록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침해 구제가 불가하나, 만약 해당 상표가 태국 외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태국 형법(제273조, 제274조, 제275조)에 따른 침해 구제와 태국 세관 등록을 통해 수출입 지점에서의 국경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현지 지재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제3자에 의한 악의적인 상표 선점

태국은 베트남과 더불어 한류열풍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써 한류로 인한 우리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과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현지인의 상표 무단선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국가에 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출수요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야에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주로 현지에이전트 또는 딜러 통해 제품을 유통하게 되는데, 보통 에이전트 또는 딜러에게 지재권 권리확보 절차까지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에이전트 또는 딜러가 자신의 명의로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향후 상표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의 경우 현지인에게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경우 태국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어느 누가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서류(수출송장, 해외상표등록증 등)를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선점당한 상표권을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권을 현지 딜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출원을 하거나 또는 방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지에서의 상표권리 확보는 안정된 기업 활동의 전제 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애로사항)**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D사는 태국 본격 진출을 앞두고 현지 시장반응 확인 후 상표등록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 시간이 흐른 뒤 2015년 초 방콕 IP-DESK의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신청함. 출원 진행 중 뒤늦게 현지 에이전트와 딜러가 각각 D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출원 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조치를 취함. 현재 딜러가 선출원했던 상표는 거절결정을 받았으며 D사는 아직 2015년 출원한 상표의 등록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지원 및 성과)** 사전 유사상표검색을 통한 무단 선출원 상표 파악으로 우리기업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대응 지원, 지속적인 심사현황 모니터링으로 우리기업의 상표권 확보 지원

### ○ 태국 내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확대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 기업이 디자인 또는 유통을 관리하는 것처럼 사칭해 현지 소비자를 속이는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예: 무무소, 아르코바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매장 내 한국 기업의 유명 캐릭터 및 제품 패키징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저작권 피해 및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태국 내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부정적 이미지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IP-DESK에서 매장 내 한국 유명 제품의 패키징 모방 제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기업 차원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 파악 및 자사가 가진 지재권 권리를 활용,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3 | 310 | 19 | 0 | 0 | 3 | 66 | 27 |
| 2014 | 330 | 27 | 3 | 0 | 1 | 43 | 26 |
| 2015 | 343 | 43 | 0 | 1 | 1 | 54 | 26 |
| 2016 | 371 | 51 | 0 | 0 | 1 | 29 | 26 |
| 2017 | 346 | 64 | 0 | 1 | 1 | 11 | 23 |
| 2018 | 301 | 48 | 0 | 0 | 1 | 9 | 3 |
| 2019 | 323 | 47 | 0 | 2 | 1 | 12 | 1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한-태 IP협의회를 통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전달

태국정부는 우리기업의 지재권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을 통한 대태국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투자진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IP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방콕 IP-DESK는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태국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태 IP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4월과 8월 두 차례 태국 상무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태국측에서는 태국 지식재산국 주재하에 경찰, 법원, 세관 등 IP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한국측에서는 태국진출 우리기업. 방콕 IP-DESK,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담당자가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한-태 IP협의회 관련 사진자료

## ○ 모조품 식별 세미나

모조품을 취급하는 수천여개의 소매상에 대해 우리기업이 일일이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차원에서 태국 지재권 침해단속 공무원의 모조품 식별능력 배양을 통한 자발적인 직권단속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11월 태국 방콕에서 태국 지식재산국, 세관 및 경찰 등 현지 IP유관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초청하여 우리기업 5개사의 지재권 피침해물품에 대한 정품 및 모조품 식별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실제 단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조품 식별세미나 관련 사진자료

## ○ 태국 지재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태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모조품 폐기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양국의 교류협력 촉진 및 지재권 네트워크 강화를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 4. 우수사례

### ○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아르코바(ARCOVA)'매장 단속

아르코바는 Korean Lifestyle Store를 표방, 한국 유명 소비재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중 하나로 매장 인테리어와 제품 곳곳에 한글과 태극기를 사용하며 한국산(Made in Korea)이라 홍보, 태국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기업, 또는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왔다.

방콕 IP-DESK는 이러한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의 영업행태가 향후 우리기업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 한-태 IP협의회를 비롯하여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이 참석한 여러 자리에서 한류편승기업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전달과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본격적으로 태국 세관과의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특허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르코바 한국법인 정보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혐의 증거를 전달,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9년 9월 25일 세관 조사단속부에서 아르코바 사무실(창고) 및 시내 매장 2곳을 압수수색,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태국 화장품법, 관세법에 따라 관련 제품 압수 조치를 진행하였다. 이후 아르코바 태국법인 대표를 소환 조사, 위반 물품을 모두 세관에 이송하게 함에 따라, 아르코바로부터 총 2백만바트(약 8천만원) 상당의 1만 8천여점을 압수 조치하였다.

자료원: 세관 조사단속부 홈페이지

2019년 11월 12일, 태국 세관은 월례보고에서 해당 건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방콕 IP-DESK에서도 참석하여 세관 업무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해당 건은 작년 무무소 단속과 마찬가지로 태국 현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직권단속으로 여겨지며 한태 지재권 협력교류 네트워킹이 보여준 성과라 할 수 있다.

## 우리기업의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

화장품 제조·유통기업 A사는 자사 브랜드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 태국 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2019년 방콕 IP-DESK에 태국 내 침해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사업을 신청, 태국 내 디자인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였다. 해당 디자인은 A사의 주력상품 디자인으로 이미 태국에도 디자인 특허등록을 마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현지 화장품 제조·유통기업은 해당 디자인으로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었다. 방치할 경우 기업의 상징적인 제품을 현지 기업에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IP-DESK는 먼저, IP전문 로펌 자문에 따라 해당 케이스가 태국 특허법에 근거 침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침해중지 요청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며 이후 양사간 원만한 협상을 중재, 침해 대응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합의 후 침해 기업은 정품시가 2,330만원 상당의 침해 물품 재고 1,796점을 회수, 폐기를 위해 A사 현지대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합의한 바와 같이 태국 내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중단하였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한-태 IP협의회 (4월)

공무원 초청 연수 (6월)

한-태 IP협의회 (8월)

아르코바 대응 업무협력 회의 (8월)

DIP 모조품 폐기 행사 (9월)

아르코바 압수수색 (9월)

세관 언론브리핑 (11월)

모조품 식별 세미나 (11월)

# Ⅸ 호치민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호치민 IP-DESK는 2008년 7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에 이어 전 세계 7번째 IP-DESK로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개소하였으며, 2010년 5월 하노이로 이전 후 2012년 호치민으로 다시 이전했다. 호치민 IP-DESK는 베트남 전역을 관할하고, 2020년 현재 관리인력 1명, 전문인력 1명, 전담인력 1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2개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9-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황홍구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김찬영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변호사 | 전담인력 |
| 정해란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표 2-9-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호치민 무역관 內 |
| 주 소 | Rm708B, 7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 1, HCMC, Vietnam |
| 연락처 | +84-28-3822-3944 |

표 2-9-3 협력 로펌 : 총 2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로고스 | 호치민 | 8명 | 임범상 변호사 |
| BMVN | 호치민/하노이 | 110명 | Tuan 변호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경제동향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GDP는 전년대비 7.02% 증가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6.6~6.8%)는 물론 각 국제 금융기구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이자 2008년 이래 최고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던 2018년 7.08% 성장률에 이은 높은 성장률이다.

표 2-9-4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지표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GDP(억 달러) | 2,137 | 2,334 | 2,394 | 2,571 | 2,813 | 2,427 | 2,660 |
| GDP성장률(%) | 5.55 | 6.42 | 6.99 | 6.69 | 6.94 | 7.08 | 7.02 |
| 1인당 GDP(달러) | 2,370 | 2,561 | 2,597 | 2,759 | 2,985 | 2,587 | 2,800 |
| 도심 실업률(%) | 3.59 | 3.40 | 3.37 | 3.23 | 3.18 | 2.2 | 2.93 |
| 연평균 물가상승률(%) | 6.60 | 4.09 | 0.63 | 2.67 | 3.53 | 3.54 | 2.79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2019년은 2018년 대비 수출, 수입 및 경제지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상승세를 보였다. 높은 경제성장률 대비 안정적인 물가상승(2.79%)을 유지하며, 베트남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2019년 베트남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약 4,791달러로 2018년도 대비 272달러 증가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은 수출액 2,635억 달러, 수입액 2,535억 달러로 총 1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47%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1월 발효된 CPTPP 및 발효 예정인 EVFTA 기대심리 등이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으로는 휴대폰, 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섬유 및 봉제 제품군으로 FDI 기업의 주력 제조 품목이다. 특히 2019년도 베트남의 수출액은 FDI 기업군이 1,8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총 수출액의 68.82%를 차지해 베트남의 수출에 FDI 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림 2-9-1 베트남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 (단위:US$ 10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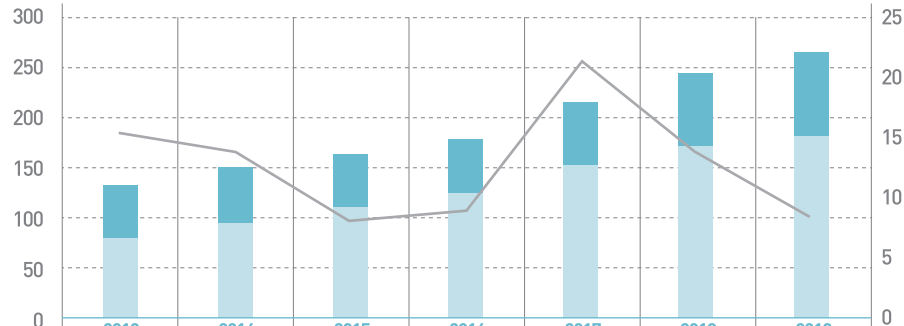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베트남 국내 기업군 | 51.1 | 56.3 | 51.5 | 52.7 | 61.8 | 71.9 | 82.1 |
| FDI 기업군 | 80.9 | 93.9 | 110.6 | 123.9 | 152.2 | 171.5 | 181.35 |
| 전년 대비 증가율 | 15.3 | 13.8 | 7.9 | 9 | 21.2 | 13.8 | 8.1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 산업동향

### - 전기 · 전자

2019년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전기전자제품 수출 비중은 약 33%(휴대전화 19.4%)를 차지, 2013년 이후 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은 삼성, LG, 캐논, 파나소닉, 인텔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하이테크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 전자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참가를 위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 - 섬유 · 의류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 연간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 핵심 중 하나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2019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주요 의류 수출국은 미국, EU, 일본이며 총 의류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시장에서 베트남산 의류는 중국산과 함께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투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으며, 총 의류 수출액의 60%를 한국, 대만 등 외투기업이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은 한세, 한솔, 세아, 효성, 신성 등이 있다.

### - 철강 산업

베트남 철강 산업은 건설, 인프라,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 호황으로 꾸준한 성장세이다. 특히,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화 가속 및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증가가 건설 경기 호조로 이어지며 건설용 철강 수요가 꾸준하다.

한편, 베트남 철강산업 무역구조는 만성 적자인데, 이는 열연강판 등 고품질 철강제품 생산이 부족하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2019년 베트남 철강 부문에서 수출액 75억 달러, 수입액 136억 달러로 61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 - IT 산업

베트남 IT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판매로 구분된다. 컴퓨터 등 하드웨어 판매 시장규모는 약 14억 달러, 소프트웨어 판매는 7.8억 달러, IT 서비스 판매는 35억 달러 규모이다.

특히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낮은 인건비, 베트남 정부의 STEM과목(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 강조 등이 주요 성장 원동력으로 꼽힌다.

베트남 주요 IT기업은 FPT Technology, CMC Corp, HPT Technology, MISA, TMA Solutions 등이 꼽힌다.

### - 통신 산업

2019년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50%이며, 인터넷 속도는 1~5Mbit/s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모바일 가입자 수는 1억3천만 명으로 인구수를 넘었으며 대도시와 젊은 층 중심으로 모바일 보급률이 매우 높다.

베트남 모바일 시장은 Viettel, Vinaphone, Mobifone 등 3개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컨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SNS핀테크, 음식배달, 택시호출 등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s Association)에 따르면 2019년 협회 회원사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32만 2,322대를 기록했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현대자동차(Hyundai-Thanh Cong)의 판매 대수와 수입차량을 포함하면 2019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규모는 약 40만 대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외국 브랜드 CKD(Complete Knock Down) 생산 차량이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ATIGA(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따라 태국 등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베트남에 수입되면서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기 브랜드는 현대·기아·도요타·마쓰다·미쓰비시·혼다 등이며,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이 2019년 하반기부터 Vinfast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자동차부품 산업은 열악한 실정으로 주요 부품은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부품 조달률은 7~10%에 불과하다.

### - 유통산업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세이며, 2019년 총 매출액은 약 2,1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성장했다.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주요 성장 원동력은 ① 소비력 증가 ② 젊은 인구와 도시화 ③ 외투기업들의 진출 확대 등이다. 특히 2019년 베트남 유통산업은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분야 중 제조업, 부동산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자 중 한국과 일본 유통 기업들의 영향력이 높으며, 백화점 · 대형마트 · 편의점 등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 중이다.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 브랜드 진출이 늘고 있으며, 2~30대 베트남 소비자들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에 힘입어 온라인 · 모바일쇼핑도 활성화되고 있다.

### - 건설 산업

2019년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1%의 성장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전체 GDP 대비 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에 따라 사회 인프라 개발 수요가 늘고, 외국인투자 증가로 오피스· 주거시설· 상가· 산업공단 수요가 확대되면서 베트남 건설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재정 부족 등 인프라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베트남 정부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BOT(Built-Operation-Transfer) 등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 플라스틱 산업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대부분의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료 수입액은 약 90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일본 등이다.

한편, 베트남 플라스틱 제품은 가정용· 건축용· 포장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중저가용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품질· 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 - 광산업

2019년 베트남 광산업 규모는 174억 달러이며 '15년~'19년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되었다.

주요 생산광물은 원유, 가스, 석탄, 보크사이트, 텅스텐, 티타늄, 구리, 금, 철광성 등이며, 광물자원은 베트남 자원환경부와 산업무역부가 관리한다.

원유와 가스는 베트남 국영기업 Petro Vietnam이 베트남 내 모든 프로젝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ExxonMobil, Gazprom, Rosneft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원유, 가스를 탐사, 시추한다.

그 외 광물자원 개발은 Masan Resuources(텅스텐, 비스무트, 구리), Asian Mineeral Resources(니켈), Vietnam Apatite Limited Company(인회석), Besra(금) 등 기업이 참여 중이다.

###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은 2019년 기준 베트남 전체 GDP의 1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농업 비중이 8.4%로 높다(수산업 3.6%, 임업 0.8%)

주요 농작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커피, 캐슈넛, 후추 등이다. 쌀은 베트남 전체 곡물 생산의 90%를 차지, 연 생산량 약 4500만 톤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또한 캐슈넛, 후추는 세계 1위, 커피는 세계 2위 생산량을 자랑한다.

수산물은 베트남 10대 수출품 중 하나로, 2019년 수산물 수출액은 약 86억 달러이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가뭄, 염수 역류, 기후변화 등 악재가 있었으며,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

### - 제조가공업

제조가공업은 베트남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며, 베트남 정부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 베트남 산업발전전략(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 의류 및 가죽, 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동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를 유치 중이다.

베트남 제조업은 외국기업의 투자 및 정부 노력으로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자동차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점차 이동 중이다.

최근에는 미중무역분쟁으로 베트남이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내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투자 및 증설계획이 늘고 있다.

### -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2019년 기준 베트남 총 GDP의 41.6%를 차지하며, 도소매유통, 물류, 숙박외식, 금융, 은행, 부동산, 교육, 헬스케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서비스업 성장은 베트남 경제성장 및 소비력 확대에 기인한다. 이전에는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이 낮아 외투기업이 제조업 위주로 투자했지만 점점 부동산, 유통, 물류, 외식분야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외투기업과 현지기업은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Highland Coffee, Phuc Long 등 베트남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계속 지점을 늘리고 있다. 화장품, 교육 등 식음료 외 분야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광업이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베트남 지재권 동향 및 출원현황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총 출원건수는 64,984건으로 2017년에 비해 7.9% 증가했다.

그림 2-9-2 최근 4년간(2015~2018년)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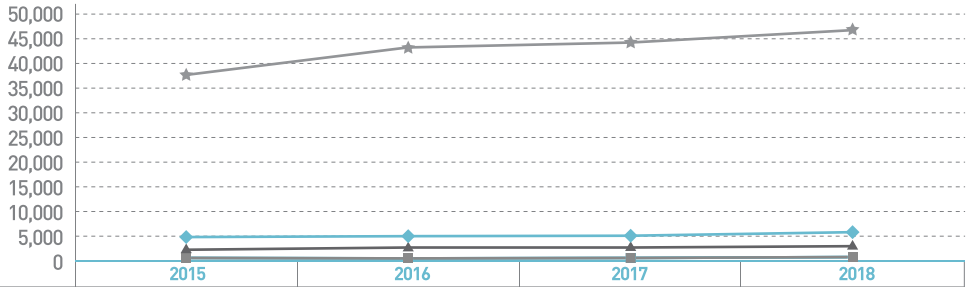


| | 2015 | 2016 | 2017 | 2018 |
|---|---|---|---|---|
| 특허권 | 4,450 | 4,668 | 4,790 | 5,425 |
| 실용신안권 | 450 | 478 | 434 | 557 |
| 디자인권 | 2,455 | 2,868 | 2,741 | 2,873 |
| 상표권 | 37,283 | 42,848 | 43,970 | 46,396 |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2018년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되 분야는 상표(83%), 특허(11%), 디자인(5%), 실용신안(1%) 순이다.

그림 2-9-3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별 출원건수 비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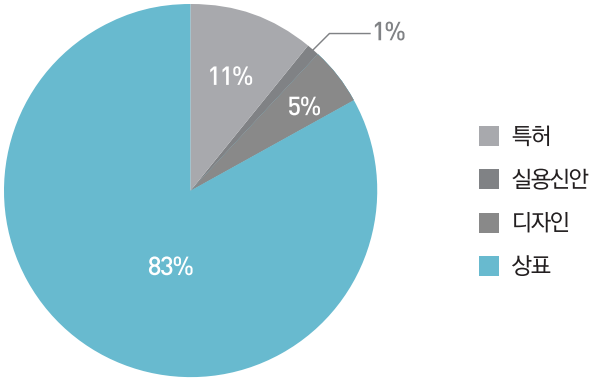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2018년 기준, 상표 출원은 총 46,396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37,476(80.7%), 외국인 출원이 8,893건(19.2%)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상표 출원건수는 중국, 한국 순으로 많았다.

2018년 기준, 디자인 출원은 총 2,873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1,694건(59%), 외국인 출원이 1,179(41%)로 나타났다.

그림 2-9-4 최근4년(2015~2018년) 외국인 상표 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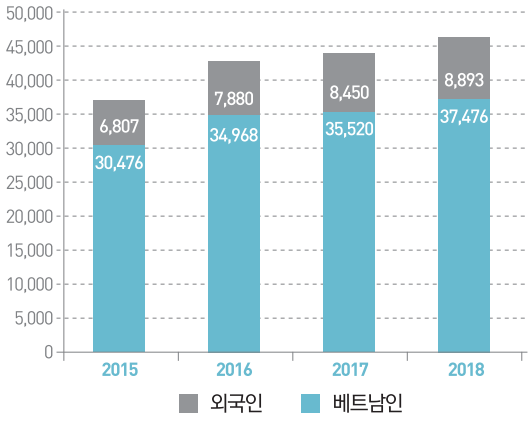


그림 2-9-5 최근4년(2015~2018년) 외국인 디자인 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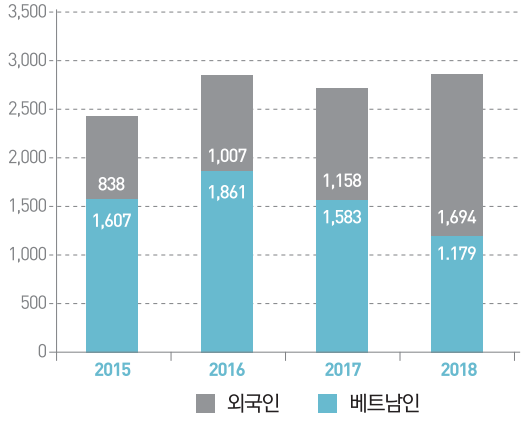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2018년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6,628건으로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5,612건(84.7%), 베트남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총 1,016건(15.3%)이었다.

그림 2-9-6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주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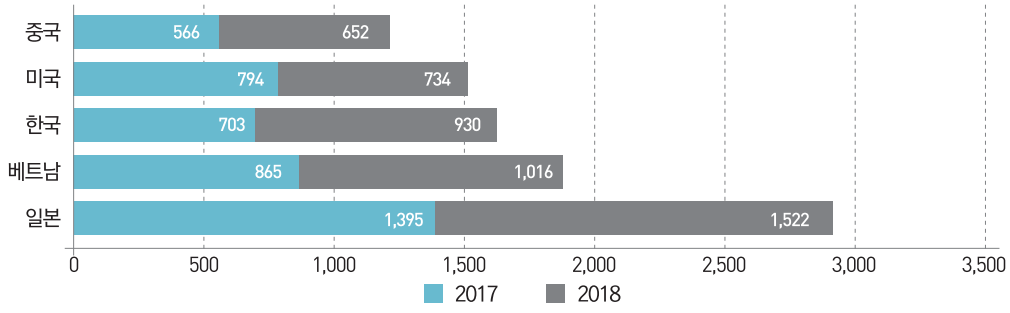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2019년 9월 30일, 베트남은 헤이그 조약에 의한 산업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내 해외 단체, 기업, 개인의 디자인 출원은 매년 약 15%씩 증가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PCT 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헤이그시스템 국제출원, 총 3개의 지재권 국제출원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상표 무단 선등록 피해

베트남 내 무단 선등록 피해는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특정 상표, 디자인, 발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다른 단체, 개인이 동일/유사한 상표, 디자인, 발명을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권자가 정당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베트남 진출기업 H사의 경우, 과거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던 베트남 기업이 상표를 선등록하였다. H사는 2017년,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해당 선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 요청을 했으나 2019년 기준 2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동 건에 대해 H사는 호치민 IP-DESK에 상표 선등록 대응방안,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 지속 협의해 왔으며, 호치민 IP-DESK는 베트남 지식재산국과 미팅을 주선하고 H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해외시장 진출 전, 지재권 권리확보 의식 강화 필요

베트남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도 상표 등록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기업이 많다.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침해에 대한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 시에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베트남 바이어가 우리기업의 상표를 선등록/선출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바이어에게 해당 상표를 위임받거나 해당 상표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상표 무단 선등록 피해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기업은 상표 등 지재권 권리확보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 진출 시, 상표 및 디자인 보호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 위조상품 단속 행정력 부족

베트남 내 모조품 및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기관의 실효성은 낮은 편이며 단속이 진행되어도 단속 공무원의 커미션 요구 혹은 침해업체가 커미션을 지급해 단속된 물품을 회수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는 우리기업 제품의 포장 및 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포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허위 홍보를 하는 업체가 적지 않게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및 위조상품 단속의 경우 지재권 침해 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으로 대응이 불가하고 부정경쟁방지법, 광고법, 제품질량법 등의 규정에서 법적근거를 찾아야 한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4 | 203 | 34 | 0 | 4 | 4 | 12 |
| 2015 | 325 | 55 | 2 | 3(1) | 4 | 5 |
| 2016 | 468 | 102 | 1 | 1(1) | 5 | 15 |
| 2017 | 501 | 149 | 4 | 2(2) | 8 | 13 |
| 2018 | 346 | 118 | 2 | 3(1) | 5 | 13 |
| 2019 | 304 | 152 | 0 | 3(1) | 9 | 5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베트남 지재권 관련 인적 네트워크 강화

베트남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호치민 IP-DESK는 2019년 5월, 베트남 지재권 공무원 방한연수 행사를 추진했다. 시장관리총국, 지식재산국, 세관 밀수조사방지국의 지재권 공무원 총 12명이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특허청, 유관협회 및 한국기업과 지재권 보호에 대해 의견을 교환,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 특허청과 한-베 IP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관련 지재권 분쟁현황 및 이슈 발제 등 양국간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IP보호 협의회

유관기관 방문

### ○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 개최

베트남 내 한국브랜드 정품, 모조품 식별방법 홍보 및 단속을 위해, 2019년 6월 호치민 IP-DESK는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는 중국 국경지대인 랑선에서 단속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루코, CJ그룹, 한국인삼공사,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섬성전자 등 6개사의 지재권 담당자가 베트남 현지 시장관리총국, 지식재산국, 세관 밀수방지조사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 및 모조품 식별 요령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한국기업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경지대에서 모조품 단속을 진행하는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단속기관은 한국 유명상표 식별방법 안내를 통해 이후 단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설명회 전경

### ○ 아세안 지역 지재권 워크숍

2019년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아세안 지역 지재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세안 등지에서 무역관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직원 15명이 참가하였으며 호치민 IP-DESK는 현지 지재권 전문 변호사 강의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지재권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였다. 무무소 등 한류편승매장 및 아세안 내 지재권 이슈 대응에 대한 현황 공유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워크숍

## 4. 우수사례

### ○ 상표권 선점등록 대응 방안 제시

우리기업 T사는 2019년 7월, 호치민 IP-DESK를 통해 상표 'Tiastory' 및 'Snody'의 유사상표 검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사상표 검색 결과 'My Nhu'라는 베트남 업체에서 우리기업의 'Snody'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선출원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호치민 IP-DESK는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업체로부터 해당 선출원 상표를 위임받는 방법이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베트남 업체 'My Nhu'사와 연락했으나, 동의하지 않아 이 방법은 제외하였다.

T사가 특허청에 직접 해당 선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 요청을 할 수 있다. 등록거절 요청을 위해서 T사는 특허청에 선출원된 상표 'Snody'가 당사의  상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호치민 IP-DESK는 우선 T사에게 2개의 상표를 출원하고 이후 베트남 업체에서 선출원한 'Snody'상표가 당사의 상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T사는 호치민 IP-DESK의 제안에 따라 당사의 상표 2개를 출원하고 베트남 업체에서 선출원한 상표에 대한 대응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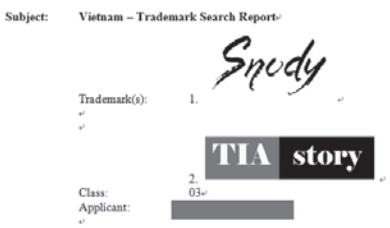
Subject: Vietnam – Trademark Search Report

Trademark(s): 1. Snody

2. TIA story

Class: 03

Applicant: [redacted]

우리기업 T사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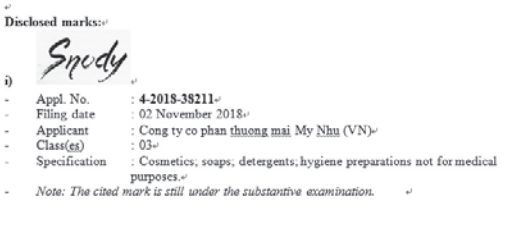
Disclosed marks:

i) Snody

- Appl. No. : 4-2018-38211
- Filing date : 02 November 2018
- Applicant : Cong ty co phan thuong mai My Nhu (VN)
- Class(es) : 03
- Specification : Cosmetics; soaps; detergents; hygiene preparat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 *Note: The cited mark is still under the substantive examination.*

선등록 상표

## ○ 상표등록 지연 문제

최근 베트남 상표등록은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그 중에는 약 3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기업 B사는 2016년 하반기에 호치민 IP-DESK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했으나 2019년 4월 기준, 신청 후 2년이 넘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기업은 상표출원의 정확한 진행경과에 대해 호치민 IP-DESK에 문의했다.

호치민 IP-DESK는 2019년 4월 9일, 베트남 특허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 B사 및 기타 출원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로도 현지 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베트남 특허청에 독촉했다. 그 결과, 우리기업 B사의 상표등록증은 2019년 4월 26일 발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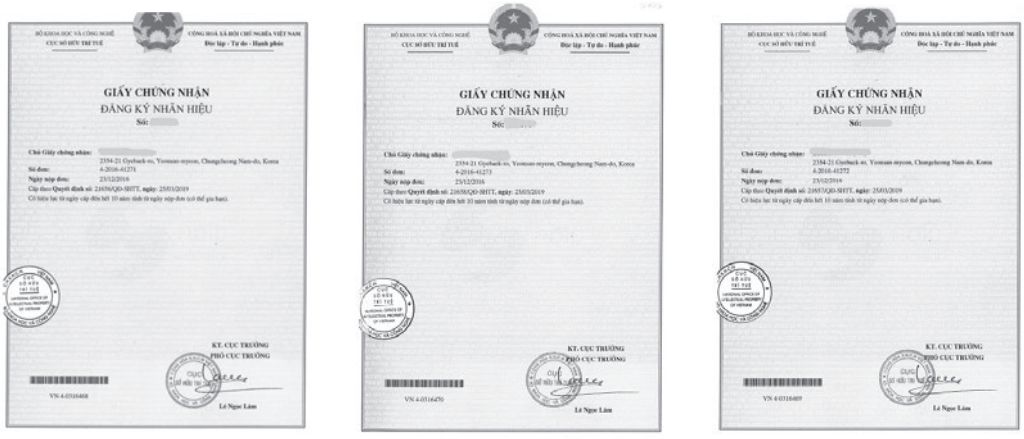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HÃN HIỆU

우리기업 B사 상표등록증(3개)

### 한글상표 출원 문제

베트남에서 출원하는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영문 및 베트남어가 아닌 다른 외국 언어일 경우, 해당 언어는 도형으로 간주되고 문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우리기업 H사는 2019년 7월, 호치민 IP-DESK를 통해 상표 '하연' 및 'HAYON C3'의 상표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기업이 신청한 상표 중 한글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유사상표 검색을 할 수 없었다.

만약 한글 상표를 등록한 이후 동일한 한글 상표를 제3자가 등록한다고 해도 해당 한글 상표가 시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선, 면, 색의 측면에서 다른 도안으로 보인다면 베트남에서 제3자의 상표는 선등록된 상표와 다른 상표로 판단외어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호치민 IP-DESK는 해당 상표에 문자로 보호되는 영문 추가 혹은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우리기업은 한글상표를 영문으로 수정 후 상표를 출원했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이동식 IP-DESK (4월)

협력채널 구축 (4월)

협력채널 구축 (4월)

협력채널 구축 (4월)

공무원 초청연수회 (5월)

한-베 IP보호 협의회 (5월)

이동식 IP-DESK (5월)

한국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 (6월)

협력채널 구축 (6월)

아세안 지재권 세미나 (6월)

협력채널 구축 (7월)

이동식 IP-DESK (11월)

이동식 IP-DESK (11월)

이동식 IP-DESK (11월)

지재권 보호 설명회 (11월)

지재권 보호 설명회 (12월)

X

# 로스앤젤레스(LA)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LA IP-DESK는 2012년 3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에 이어 전 세계 8번째 IP-DESK로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개소하였다. 미국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19년 현재 운영 예산 관리인력 1명과 업무 전담인력 2명으로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0-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강택우 | KOTRA (과장) | 한국 | - | 운영예산 |
| 김윤정 | KOTRA (변호사) | 한국 | 변호사 (CA주 & NY주) | 업무전담 |
| 김바바라 | KOTRA (변호사) | 미국 | 변호사 (CA주) | 업무보조 |

표 2-10-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內 |
| 주 소 | 4801 Wilshire Blvd Ste 104., Los Angeles, CA 90010, USA |
| 연락처 | +1-323-954-9500 |

표 2-10-3 **협력 로펌 : 총 8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Park Law Firm | LA | 10명 | 박윤근 변호사 |
|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 LA | 1,520명 | 김남훈 변호사 |
| Lewis Roca Rothgerber Christie | LA | 586명 | 전준영 변호사 |
|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 LA | 2,225명 | 죠세핀 안 변호사 |
| Rabin Berdo, PC | Washington | 31명 | 정준화 변호사 |
| Hauptman Ham, LLP | Washington | 60명 | 채광엽 변호사 |
| Lathrop GPM | LA | 470명 | 앤드류 정 변호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캘리포니아주 경제 동향 국가간 통계 미국 주요국가 통계

2019년도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수는 신규법인 기준, 467개사 이며 이 중 한국 기업의 캘리포니아주 신규법인 설립 수는 167개로 미국 지역 전체 중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미국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도소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주요업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투자금액에 경우 2019년도 투자금액은 103억 달러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 투자금액은 약 12억 달러로 이는 델라웨어에 이어 미국 지역 전체 중 두 번째로 높은 투자금액이다.

- 미국 신규법인, 투자액 : ('16년) 522개사, 135억 달러 → ('17년) 533개사, 152억 달러 → ('18년) 543개사, 108억 달러 → ('19년) 467개사, 103억 달러
- 최근 3년간('17년~'19년) 미국 투자진출 TOP3 업종(신규법인 설립 기준) : 도매 및 소매업(21%, 320개사), 제조업(20%, 312개사), 정보통신업(11%, 177개사)[1)]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의 GDP 는 2.94조 달러로 미국 전체 경제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주 중에서도 단연 1위 규모로 국가 단위로 비교했을 때에도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5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2)]

- 캘리포니아주 경제규모 : 세계 4위 독일(4.03조 달러), 6위 영국(2.81조 달러), 7위 프랑스(2.79조 달러) 등과 비슷한 수준

캘리포니아주는 차세대 성장 동력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시장, 자본 집적 지역이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IT 융합 등 첨단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생산시설보다는 판매법인 형태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에는 약 4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기업의 약 99.8%를 차지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인구는 유동인구 포함, 100만 명 이상으로 이들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우리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 자료원: 한국수출입 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2) 자료원: 미 상무부 및 국제통화기금(IMF) https://www.bea.gov/data/gdp/gdp-stat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2019년 미 특허상표청 규정 변경

– 디지털 방식으로 허위 제작/조작 및 모형물로 제출된 사용 증거자료 심사에 대한 강화 지침 전달

2019년 7월 미 특허상표청은 상표 출원인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허위 제작 및 조작되거나 모형물(mockup)로 만들어진 사용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이에 대응하는 강화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 심사관은 의심되는 사용 증거자료는 식별하여 거절하고, 사용 증거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자가 주장하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심사관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확인하였지만 제품이 리스팅된 목록이나 웹페이지의 내용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판매 또는 상업적 사용을 보여주는지 의심될 경우에도 출원인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디지털 방식으로 허위로 만들어진 사용 증거자료와 그렇지 않은 사용 증거자료 모두 포함할 경우에도 심사관은 반드시 상표의 상업적 사용증명 실패로 인한 거절과 함께 추가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3)]

디지털로 제작한 사용증거 – 우리 기업 참고용

### ○ 2019년 미 특허상표청 규정 변경

– 한국 소재 기업 미국 상표 출원 시 반드시 미국 변호사 선임

2019년 8월 3일부터 외국 출원인의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미 특허상표청은 외국 출원인의 부정확하게 허위 기재된 상표 출원서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상표청 규정 준수와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본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본 규정은 OA에 대한 답변 및 등록상표의 사용진술서 및 갱신신청서 제출이 8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을 통해 접수된 외국 출원인 상표도 Office Action 이 발부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Office Action에 대응해야 한다.

8월 3일 이후부터 해당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제출된 출원서들은 모두 Office Action을 받게 되며, 전자 출원의 경우 대리인 부분을 기입하지 않으면 출원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3) 자료원: 37 C.F.R. §2.61(b)

## 2019년 미 특허상표청 규정 변경
### - 미국 상표 출원 온라인 접수 의무화

2019년 10월 5일부터 상표 출원 및 출원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미특허상표청(USPTO)의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전자출원시스템인 TEAS를 이용하여 오류 가능성을 낮추고 출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 출원 및 등록 유지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TEAS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USPTO에서 발신하는 모든 상표 관련 공지 또한 출원인/등록인의 이메일로 발송되게 된다. 따라서, 예외상황을 제외한 서면, 팩스 등을 통한 상표 출원서 제출은 불가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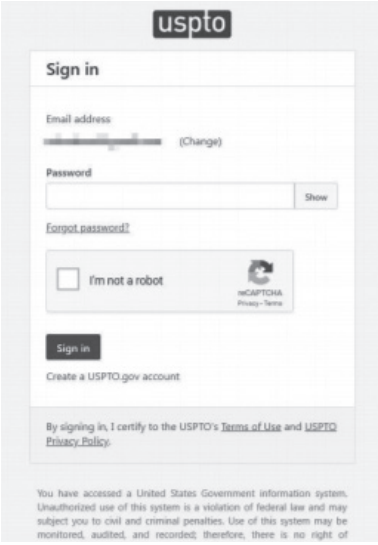

USPTO TEAS 로그인 페이지 화면

이에 출원인은 USPTO로부터 상표 출원과 등록 관련 공지사항의 수신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제공 및 유지해야 하며, 이메일 회신에 문제가 생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우편물 수신이 가능한 주소지 또한 제공 및 유지해야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표 출원서를 접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 증거자료에 대한 요구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웹사이트 사진으로 된 사용 증거자료의 경우, 1) URL 과 2) 웹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자료가 인쇄된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이나 태그의 사진으로 구성된 사용 증거자료의 경우, 반드시 해당 라벨이나 태그가 제품이나 패키지에 부착되어야만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용 태그가 사용 증거자료로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의류에 부착된 모습이 증거자료에 보여져야 하며, 사진에 제품없이 태그 등의 상표만 보여질 경우에는 사용 증거자료가 될 수 없겠다.

## 2019년 미국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미국은 특허를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665,231 건이며, 이 중 실용특허는 616,852건, 디자인특허는 46,142건, 식물특허는 1,168건 출원되었다. 2019년 전체 특허등록 건수는 370,434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실용특허는 336,855건, 디자인 특허는 31,832건, 식물 특허는 1,193건이 등록되었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0-4 연도별 미국 특허 출원 현황

| Year | Utility | Design | Plant | Reissue | Total |
|---|---|---|---|---|---|
| 2019 | 616,852 | 46,142 | 1,168 | 1,069 | 665,231 |
| 2018 | 595,683 | 45,625 | 1,058 | 983 | 643,349 |
| 2017 | 602,354 | 43,272 | 1,056 | 706 | 647,388 |
| 2016 | 607,753 | 40,406 | 1,180 | 1,072 | 650,411 |
| 2015 | 578,121 | 37,735 | 1,119 | 1,087 | 618,062 |

표 2-10-5 연도별 미국 특허 등록 현황

| Year | Utility | Design | Plant | Reissue | Total |
|---|---|---|---|---|---|
| 2019 | 336,855 | 31,832 | 1,193 | 554 | 370,434 |
| 2018 | 306,909 | 29,441 | 1,251 | 471 | 338,072 |
| 2017 | 315,367 | 30,637 | 1,246 | 392 | 347,642 |
| 2016 | 304,568 | 27,830 | 1,250 | 459 | 334,107 |
| 2015 | 295,459 | 25,438 | 1,020 | 531 | 322,448 |

* 자료원 : USPTO 2019 업무성과 보고서 4)

## ○ 2019년 미국 대법원 주요 특허 및 상표 소송 판결

### 1.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5)]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는 미국 개정특허법과 관련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미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미국 개정특허법이 On Sale Bar의 해당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그동안 법조인들과 학계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유발한 의문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Helsinn사는 2001년 구토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0.25mg분량의 Palonostron)를 개발하였고, 정규출원 및 가출원을 하기 전 기밀유지를 포함한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Helsinn사는 가출원을 신청하였고, 10년동안 2003년 가출원을 우선일로 지정한 4개의 정규출원을 신청하였다.

2011년 Teva사는 Helsinn사 치료제의 복제 약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Helsinn사는 Teva사를 특허침해로 고소하였다. Teva사는 Helsinn사가 가출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2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해당 발명은 공공에 공개되었고, 이는 On Sale Bar에 어긋나므로 특허는 무효이므로, 복제 약품 판매는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자료원: USPT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19
5) 자료원: US Supreme Cour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1229_2co3.pdf

과거 미 특허법의 On Sale Bar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 및 공개할 경우, 공지기술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모든 판매 행위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미국 개정특허법 이후 On Sale Bar의 판매행위는 공개적인 판매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최초 지법에서는 0.25mg의 용량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On Sale Bar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발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하였다.

최종적으로 미 대법원은 지난 1월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 발명품을 판매한 행위도 미 특허개정법(AIA)에 의거 판매(On Sale)에 해당하며, 35 U. S. C. §102(a)(1)에 따라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2. Iancu v. Brunetti[6)]

미 대법원은 Iancu v. Brunetti의 2019년 6월 판결에서 미 연방상표법(Lanham Act) 15 U.S.C. §1052(a)의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Immoral or Scandalous)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 수정 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해 위법이라 판결하였고, 피상고인 에릭 브루네티(Erik Brunetti)의 손을 들어주었다.

에릭 브루네티는 비속어로 발음 될 수 있는 FUCT를 자신의 의류 브랜드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였고, 미 상표청은 본 단어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에릭 브루네티는 미 연방 상표법의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 금지 규정은 문면상 위헌(Unconstitutional on its face)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급법원은 에릭 브루네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본 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본 규정이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본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기준이 중립적인 관점(Viewpoint-neutral)에서인지 정부가 선호하는 관점에 근거한 관점 차별적(Viewpoint-discriminatory)인 것인지를 확인해야했다.

대법원은 해당 연방 상표법은 법 표면에서부터 사회 기존의 도덕성 및 사회적 승인에 부합되는 상표와 기존의 도덕 기준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비난을 유발하는 상표를 구분하며, 후자를 꺼리고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본 연방상표법 규정이 관점에 기준하여 사회 전통적인 도덕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나, 그렇지 않은 후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는 적용이 되므로 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과거 2017년 Tam 판결(Matal v. Tam, Case Number 15-1293)에서 불쾌한 사상을 꺼리는 것은 관점에 근거한 차별로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을 분명히 한 바, 과거 폄하표현(Disparage)에

6) 자료원: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302_e29g.pdf

대한 상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2년전 판결과 본 판결의 맥락을 같이 하며, 표현이 전달하는 사상이나 의견을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적용하였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상표 침해 소송 보고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는 이베이, Etsy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를 포함한 집단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표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본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온라인 계정을 통해 피고자를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 소송건수는 2016년 94건, 2017년 111건, 2018년에는 182건으로 2018년부터 급증하였고, 2019년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5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Logout Please logout when you are done to release system resources allocated for you.

Start List At: OR Jump to record: Record 23 out of 26

TSDR ASSIGN Status TTAB Status ( Use the "Back" button of the Internet Browser to return to TESS)

Typed Drawing

| | |
|---|---|
| Word Mark | HULA-HOOP |
| Goods and Services | IC 028. US 022. G & S: PLASTIC TOY HOOPS. FIRST USE: 19580520. FIRST USE IN COMMERCE: 19580521 |
| Mark Drawing Code | (1) TYPED DRAWING |
| Serial Number | 72053914 |
| Filing Date | June 19, 1958 |
| Current Basis | 1A |
| Original Filing Basis | 1A |
| Registration Number | 0739307 |
| Registration Date | October 16, 1962 |
| Owner | (REGISTRANT) WHAM-O MFG. CO. CORPORATION CALIFORNIA 835 E. EL MONTE ST. SAN GABRIEL CALIFORNIA |
| | (LAST LISTED OWNER) WHAM-O HOLDING, LTD. COMPANY HONG KONG 212-220 Lockhart Road B2, 11/F, Loyong Court Commercial Bldg. Wan Chai HONG KONG |
| Assignment Recorded | ASSIGNMENT RECORDED |
| Attorney of Record | Sarah S. Brooks |
| Type of Mark | TRADEMARK |
| Register | PRINCIPAL |
| Affidavit Text | SECT 15. SECTION 8(10-YR) 20121016. |
| Renewal | 3RD RENEWAL 20121016 |
| Live/Dead Indicator | LIVE |

등록된 훌라후프 상표

2019년 LA IP-DESK는 페파피그, 훌라후프, KLP, Flexfit 등 총 19건의 상표 소송 합의를 지원한바 있다. 이러한 소송은 중국계 변호사를 포함하거나, 중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며, 소장 송달 절차의 하자 및 인사 관할권의 부재 등의 법적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절차를 밟아 하자를 치유해야 하는 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빠른 합의를 원하는 실정이다.

2019년 LA IP-DESK가 지원한 모든 건은 합의에 도달하여 소송이 취하되었고, 온라인 계정 및 페이팔 등도 압류가 풀려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되어 모든 접수 건들은 사안이 종결된 상태이다. 합의 계약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 계정 및 페이팔 등의 복구는 대체로 3~ 5 business days가 소요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재권 침해 소송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알면서

침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 되어야 하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상표나 저작권,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뒤 판매를 해야 하겠다.

또한, 소송 시 페이팔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압류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페이팔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바로 회수하여 많은 금액을 두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겠다.

### ○ 미국 상표 출원 기반 선정과 사용실적서 문의

미국 상표 출원은 한국과는 달리 4가지 출원 기반이 있다. 우리 기업이 출원할 수 있는 4가지 기반은 첫 번째,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a) Use in Commerce, 두 번째, 향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는 1(b) Intent to Use, 세 번째, 한국에 출원된 상표를 기반으로 하는 44(d) Foreign Application, 마지막으로 한국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하는 44(e) Foreign Registration이 있다.

미 상표청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제품에 부착된 사진 등의 사용 증빙과 함께 사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 내에 판매가 없으나, 먼저 상표를 선점해놓으려는 우리 기업은 본 사용실적서 제출이 어렵게 된다.

위의 출원 기반에서 1(a)에 해당할 경우는 현재 판매가 있으므로 사용실적서 제출에 문제가 없으나, 1(b)의 경우는 앞으로 사용할 의사로 출원한 뒤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사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준비되지 못할 경우 6개월씩 5번의 연장(매 연장 시 4~500불소요)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에 판매가 없더라도 한국에 동일한 상표가 등록 되어 있을 경우, 44(e)로 출원하여 본 사용실적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 출원된 상표만 있어 44(d)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 상표가 등록된 후 등록상표 원부를 제출해야 등록이 완료되겠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판매 여부 및 판매 시점, 한국 출원 및 등록 상표 여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상표 등록 요건을 맞추어야 하겠다.

미국에 출원하는 한국 기업이 사용실적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LA IP-DESK는 심사 시점부터 미국 출원 기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LA IP-DESK를 통해 출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LA IP-DESK에서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가장 적합한 출원 기반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 ○ 아마존 내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 접수

2019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내에서 우리 기업의 타기업 지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지재권 분쟁 사안이 계속해서 접수 되었다. 아마존 자체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셀러에 대한 신고와 아마존의 자체 대응이 용이한 만큼 우리 기업은 타인의 제품을 카피하는 행위 혹은 상표를 사용 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반면, 아마존에서의 지재권 침해 대응이 용이한 것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침해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하여 특허권자들이 경쟁사의 리스팅을 삭제 시키는 경우도 접수된 바 있다.

아마존은 이러한 악의적인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특허 침해 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건에 대해 4000불의 보증금을 아마존에 납입하고, 침해 의심자가 본 주장에 대응을 위해 동일하게 4000불의 보증금을 아마존에 납입한 뒤 아마존에서 침해여부를 검토하여 이기는 쪽의 보증금은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본 제도는 Invitation-only로 진행되며, 본 제도에 대한 문의는 현재까지 LA IP-DESK에 접수된 바는 없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5 | 1,079 | 91 | 0 | 0 | 7 | 12 | 93 |
| 2016 | 1,195 | 61 | 1 | 4 | 10 | 7 | 178 |
| 2017 | 1,120 | 82 | 0 | 6 | 8 | 1 | 133 |
| 2018 | 2,048 | 187 | 0 | 8 | 8 | 0 | 30 |
| 2019 | 2,522 | 285 | 0 | 3 | 12 | 1 | 39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LA IP-DESK 책자 제작

LA IP-DESK는 2020년 미국 지식재산권 기본 가이드 - 특허·상표 편을 편찬하였다. 본 가이드는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미국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지재권의 이해를 도와준다.

LA-IP DESK 제작책자

## Startup 기업 지원

LA IP-DESK는 2019년 Startup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 창업자 모임과 한국 웹소설가들의 모임(K-Story)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2차례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Startup이 많은 실리콘 밸리 지역을 방문하여 IT 지원 센터 입주 기업 및 실리콘 밸리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IP-DESK를 시행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LA IP-DESK를 홍보하였다.

미국 내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팀과 연계하여 현지 기업 설립에 대한 정보 및 신규 기업에게 필요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였다.

Startup 기업 대상 세미나 및 이동식 IP-DESK

## 제 10회 대규모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에는 제 10회 대규모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를 LA 다운타운 JW Mariott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0회를 맞이한 바 연사자 섭외에 주력하여, 미 특허상표청의 전 특허심판원장인 Michael Fleming 판사, Kaist v Samsung 소송에서 4500억 배심원 평결을 이끈 Andrew Choung 변호사 및 특허 소송비용 투자 회사인 GLS Capital의 Adam Gil 대표를 초빙하였다.

약 250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특허 대응만이 아닌 공격적인 측면에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초청 강사 및 세미나 전경

# 4. 우수사례

## ○ K사 상표 침해 소송 대응 지원 사례

이베이에서 개인 셀러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K사는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2018년 12월 페파피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Entertainment One 에게 상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K사는 피소를 당한 후 수 차례 원고측 로펌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LA IP-DESK로 소송 지원을 요청하였다.

### • 지원 내역

- LA IP-DESK는 상대 측 고소장 등의 문서를 검토, 소장 내용을 국문으로 요약 전달
- 본 사안을 검토한 바, 우리 기업은 페파피그의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고, 이는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 관계를 입증해줄 서류를 정식 유통업체로부터 받아 상대측 변호사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
- 우리 기업은 이후 상대측 변호사에 수차례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본 소송의 궐석판결의 날짜가 잡힌 바, LA IP-DESK에서 직접 상대측 로펌과 협상을 시작
- LA IP-DESK와 상대측 VOGT IP 로펌의 협의를 통해, 원고 측은 우리 기업을 소송에서 제외해줄 것을 결정했으며, 1일 안에 법원에 소송 취하 서류를 접수하였고, 3일 안에 이베이 및 페이팔 계정이 복구되었음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EASTERN DIVISION

ENTERTAINMENT ONE UK LTD.,

Plaintiff,

v. Case No.: 1:18-cv-7689

THE PARTNERSHIPS AND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DENTIFIED ON SCHEDULE "A",

Defendants.

COMPLAINT

Plaintiff, ENTERTAINMENT ONE UK LTD. ("eOne" or "Plaintiff"), by its undersigned counsel, hereby complains of the Partnerships and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dentified on Schedule A attached hereto (collectively, "Defendants"), and for its Complaint hereby alleges as follows:

JURISDICTION AND VENUE

1. This Court has origi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in this a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Lanham Act, 15 U.S.C. § 1051 et seq., the Federal Copyright Act, 17 U.S.C. § 101, et seq., 28 U.S.C. § 1338(a)–(b) and 28 U.S.C. § 1331. This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in this action that arise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pursuant to 28 U.S.C. § 1367(a), because the state law claims are so related to the federal claims that they form part of the same case or controversy and derive from a 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s.

2. Venue is proper in this Court pursuant to 28 U.S.C. § 1391, and this Court may properly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Defendants since each of the Defendants directly

상표/저작권 소송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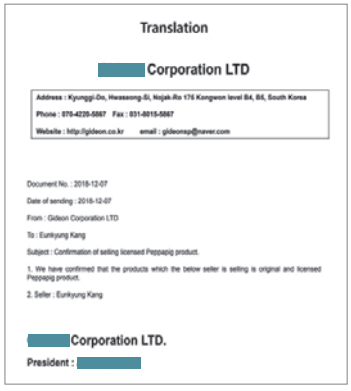

Translation

[redacted] Corporation LTD

Address : Kyunggi-Do, Hwaseong-Si, Nojak-Ro 176 Kongwon level B4, B6, South Korea
Phone : 070-4220-5867 Fax : 031-8015-5867
Website : http://gideon.co.kr email : gideonsp@naver.com

Document No. : 2018-12-07
Date of sending : 2018-12-07
From : Gideon Corporation LTD
To : Eunkyung Kang
Subject : Confirmation of selling licensed Peppapig product.

1. We have confirmed that the products which the below seller is selling is original and licensed Peppapig product.

2. Seller : Eunkyung Kang

[redacted] Corporation LTD.
President : [redacted]

우리 기업 정품인증 증빙서

### • 지원 성과

2018년 미국 지재권 변호사 협회는 상표 소송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이 최소 30만불 (한화 3억 5천)에서 100만불 (한화 12억)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LA IP-DESK와 우리 기업은 간단한 법률 절차를 위해서도 수 천불 이상이 소요되는 미국 상표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본 소를 취하시킴으로써 본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근 이러한 지재권 침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고의 침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예방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소송에서는 페이팔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타겟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페이팔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바로 회수하여 많은 금액을 페이팔에 두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겠다.

또한, 우리 기업은 반드시 궐석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LA IP-DESK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 K사 기업 감사 서한**

Jan 4, 2019, 5:53 PM

안녕하세요 김윤정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관님은 제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가 아이셋 키우며, 남편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6~7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하는 사업 뿐 아니라 가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큰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제 인생을.. 법무관님께서.. 그리고 코트라에서 저를 살려주신것과 같습니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드림

Jan 7, 2019, 3:37 PM

안녕하세요? 김윤정법무관님~^^
이베이 페이팔을 확인해보니 오늘부터 다시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돈도 찾을 수 있고요~
정말 너무나 신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관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그리고 매일매일 즐거운일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가 해외 판매자들을 위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ㅇㅇㅇ드림

## D사의 포기될 뻔한 상표 등록 성공 지원 사례

LA IP-DESK는 비용지원 사업이 완료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 시점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월 LA IP-DESK를 통해 출원한 모든 상표의 진행 및 등록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2018년 8월 우리 기업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18년 12월 선등록된 X FEEL(Reg: 4168485) 상표로 인한 유사상표와 지정상품명 변경에 대한 두 가지 OA를 받았다. 우리 기업은 선임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해당 상표가 우리 기업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유사상표 OA 극복이 어려우므로, OA 대응을 포기하고 상표 등록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 지원 내역

- 2019년 5월 상표 출원 상태를 업데이트 하던 중 우리 기업의 상표 등록에 문제가 되었던 미국 선등록 X FEEL 상표가 갱신을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표가 취소됨을 확인
- LA IP-DESK는 문제가 되었던 선등록 X FEEL 상표가 취소된 바, 간단한 지정상품명 변경에 대한 OA 답변을 제출할 경우, 우리 기업의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음을 안내
- 우리 기업 상표에 대한 6개월 OA 답변기한이 도래하기 전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출원 로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지원

미 상표청 Office Action

취소된 미국 선등록 상표

### • 지원 성과

일반적으로 로펌에서는 출원 및 등록의 전 과정을 업데이트 하나, 만약 기업이 Office Action 대응을 포기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면 포기된 상표로 분류되어 이후의 상태는 업데이트 하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의 경우는 선등록된 상표가 취소된 것에 대해 로펌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LA IP-DESK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상표 출원 상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자칫하면 포기될 수 있었던 우리 기업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등록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본 상표는 2020년 1월 28일 등록된 바 있다.

※ D사 기업 감사 서한

Jun 3, 2019, 5:57 PM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권○○입니다.
먼저 포기했던 상표권에 대하여 끝까지 도움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소중했던 상표를 살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언해 주신것을 참고하여 Office Action 대응과 영문상표 등록번역 원부제출을 동시에 정준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중략..

끝까지 상표를 포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도움주신점 거듭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드림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

CES 사전간담회 (1월)

CES 이동식 IP-DESK (1월)〉

IP-DESK 1분기 소규모 세미나 (3월)〉

NAB 사전간담회 (4월)

NAB 이동식 IP-DESK (4월)

ISC 사전간담회 (4월)

ISC 이동식 IP-DESK (4월)

IP-DESK 2분기 소규모 세미나 (6월)

북미 직원 대상 지재권 워크샵 (6월)

IP-DESK 3분기 소규모 세미나 (9월)

대규모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10월)

실리콘밸리 이동식 IP-DESK (10월)

MWC 사전간담회 (10월)

MWC 이동식 IP-DESK (10월)

IP-DESK 4분기 소규모 세미나 (11월)

AAPEX 사전간담회 (11월)

AAPEX 이동식 IP-DESK (11월)

IP 보호 컨퍼런스(11월)

# XI 뉴욕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뉴욕 IP-DESK는 2013년 6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에 이어 전 세계 아홉 번째 IP-DESK로 KOTRA 뉴욕 무역관 내에 개소하였다. 미국 동부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2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 수행대리로펌 5개소를 비롯하여 다년간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1-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최보성 | KOTRA (과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박다미 | KOTRA (현지직원) | 미국 | 변호사 (뉴욕주 & 뉴저지주) | 전담인력 |
| Grace Ahn | KOTRA (현지직원) | 미국 | - | 전담인력 |

표 2-11-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뉴욕 무역관 內 |
| 주 소 |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
| 연락처 | +1-212-826-0900 |

표 2-11-3 협력 로펌 : 총 5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Greenberg Traurig, LLP | Phoenix, AZ | 254명 | John K. Kim 변호사 |
| Hauptman Ham, LLP | Alexandria, VA | 87명 | 채광엽 변호사 |
| Lucas & Mercanti, LLP | New York, NY | 34명 | 최윤 변리사 |
| Mintz, Levin, Cohn, Ferris, Glovsky, and Popeo, P.C. | Boston, MA | 450명 | 김공식 변호사 |
| Rabin & Berdo, P.C | Washington, DC | 21명 | 정준화 변호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뉴욕주 경제 개황

뉴욕 IP-DESK가 위치한 뉴욕주의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 6,750억 달러로 미국 내 3위,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뉴욕주의 주요 산업으로 금융·보험(29.2%), 서비스(13.7%), 물류·교통(13.5%), ICT(9.4%) 등을 꼽았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뉴욕시의 명성에 걸맞게, 미국 50개주 중 금융·보험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은 주가 바로 뉴욕주이며, 미국 전체의 6%를 차지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인데,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에 이어 뉴욕주가 50개주 가운데 하위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다.

미국 국세조사국(U.S. Census Bureau) 통계 자료에 의하면 뉴욕주의 2018년 대표 수입 품목은 장신구(342억 1,800만 달러), 의류(105억 7,500만 달러)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뉴욕주가 전자기기·반도체(2억 7,600만 달러), 화장품(1억 1,100만 달러) 등을 수입하고, 기계류(2억 7,200만 달러), 예술품(1억 9,100만 달러)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 뉴저지주 경제 개황

뉴욕시 광역도시권 및 내륙시장과의 접근성이 탁월하고, 국제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동부 진출 거점으로 각광받는 뉴저지주는 미국 내 8위(5,546억 달러), 세계 28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경제분석국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부동산(16%), 도·소매유통(15%), 전문기술직(10%), 제조업(9%) 순의 산업 구성을 보인다. 항만과 내륙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등과 더불어 도소매 유통의 거점 지역으로 평가된다. 뉴저지주는 GDP 상위 10개주 중 매사추세츠주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비중이 높은데, 이는 바이엘(Bayer), 화이자(Pfizer),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노바티스 (Novartis),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Bristol-Myers Squibb)와 같은 글로벌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뉴저지주에 대거 위치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국세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뉴저지주의 2018년 대표 수입품 품목은 광물연료(216억 2,300만 달러), 의약품(169억 300만 달러)으로 주 내 제약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상위를 차지하며,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드러낸다.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뉴저지주가 기계류(4억 7,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2억 1,500만 달러)을 주로 수입하고, 장신구(2억 4,700만 달러), 염료·페인트(1억 1,900만 달러)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 우리 기업들의 미국 동부 지역 진출 동향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regionalStatistics.do)에서 추출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미국 동부 4개주(뉴욕주,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의 신규 설립 한국계 법인 수 역시 43% 가량 하락했다. 2017년에 뉴욕주에 설립된 법인 수가 전년 대비 96%(24개사→47개사) 증가하고, 2018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전년 대비 320%(5개사→16개사) 증가하여 진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9년 들어 모든 주에서 신설된 한국계 법인 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2-11-1 주별 신규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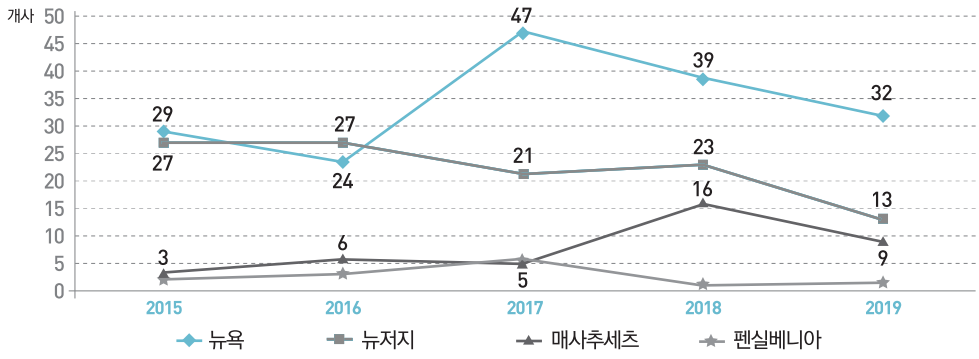


자료원: 수출입은행

이러한 흐름은 현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까다로운 비자 심사 방침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한층 더 강화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US(CFIUS))의 규제와 투자거래 신고 의무를 들 수 있다. (참고: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Fact-Sheet-FIRRMA-Pilot-Program.pdf)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 관련하여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 특정 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들을 심사한 뒤, 해당 투자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제 대상인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관련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은 CFIUS의 투자 허가여부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를 신중히 고려하고, 관련 법제적 변화에 따라 투자진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미국 특허 관련 주요 판결

2019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139 S. Ct. 628 (U.S. 2019) 판례에서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공개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기밀유지 계약을 맺고 비공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 판매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출원한다면 신규성 요건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다. 2011년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 의해 개정된 미국 특허법 35 U.S.C. § 102(a)(1)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판매하면 특허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on sale bar'라고 불리는 이 요건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인 판매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지난 몇 년간 분분했지만, 동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해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발명자들은 특허 출원 이전에 제3자와 해당 발명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여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니더라도 동 판매행위로 인해 신규성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11월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Peter v. Nantkwest, Inc., 140 S. Ct. 365(U.S. 2019) 판례는 특허법 35 U.S.C. § 145에서 규정하는 "재판과 관련된 비용(all the expenses of the proceedings)"에 미국 특허상표청 직원인 변호사 및 준법률가(paralegal)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American Rule'이 어김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 출원인은 다음 두 가지 옵션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5 U.S.C. § 141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거나, § 145에 따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서 민사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심결 당시 사용되었던 기록만으로 판단하며,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대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항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허상표청은 재판 결과에 무관하게 항소를 신청한 자가 재판 전 과정에서의 비용을 전담한다고 명시한 § 145에 의거하여 특허상표청이 해당 항소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와 직원들의 급여를 항소인으로부터 회수하고자 청구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 145의 내용, 의회의 제정 의도, 특허법의 역사, 관련 선례 등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법조항에 의회가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명시적인 표현 없이는 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인 American Rule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 특허 적격성 가이드라인

2012년과 2014년에 발표된 연방대법원의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566 U.S. 66 (U.S. 2012)와 Alice Corporation Pty. v. CLS Bank International, 573

U.S. 208 (U.S. 2014) 판례 이후, 미국 법원은 35 U.S.C. § 101에 입각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위해 다음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1)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추상적인 개념, 자연의 법칙, 물리적인 현상에 속하는지(즉,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2)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사법적 예외 사항을 특허 적격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명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청구항에 추가되었는지를 분석·판단한다.

이 같은 특허 적격성 기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례들은 2019년에도 다수 나왔지만, 여전히 업계에 불확실성과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Athena Diagnostic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LLC, 915 F.3d 743 (Fed. Cir. 2019) 판례는 특정 항체의 존재 여부에 근거한 신경계 장애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가 사법적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정 자가항체와 특정 신경계 질환 사이의 연관관계를 기술한 청구항은 자연 법칙에 관한 것이므로 특허 부적격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반면, Natural Alternatives International, Inc. v. Creative Compounds, LLC, 918 F.3d 1338 (Fed. Cir. 2019) 판례에서는 특정 용량의 화합물을 특정 환자나 대상에 투여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치료방법이 특허 적격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다소 상반되는 결과의 판례들이 야기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은 2019년 1월 7일에 '2019 특허 적격성 관련 수정 가이드(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1/07/2018-28282/2019-revised-patent-subject-matter-eligibility-guidance)를 공표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에 대해 접수된 지적사항들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18일 '특허 적격성에 관한 2019년 10월 업데이트(October 2019 Update: Subject Matter Eligibility)'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eg_oct_2019_update.pdf)를 추가로 선보였다. 이 두 문서는 사법적 예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어 특허 출원인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이지만, 오로지 이 내용만으로 특허 유효성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 미국 상표 관련 주요 판결

미국에서 연방상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 가능한 대상은 (1) 임의적인(arbitrary or fanciful) 상표, (2) 암시적인(suggestive) 상표, (3) 기술적인(descriptive) 상표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연상시키는 2차적인 의미를 획득한 경우의 세 가지로 제한된다. 2019년에는 이 중 세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좁히는 해석으로 일관한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판례가 여럿 나왔다.

2019년 7월 9일에 공시된 In re Yarnell Ice Cream, LLC, Serial No. 86824279 (T.T.A.B. 2019)에서는 표준문자표장 'SCOOP'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업적 출처를 나타나는 표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아이스크림 및 빙과 제품의 1회 제공량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상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출원번호 86824279 해당 상표**

자료원: http://ttabvue.uspto.gov/ttabvue/ttabvue-86824279-EXA-23.pdf

2019년 10월 11일에 공시된 In re Schalk, Serial No. 86183499 (T.T.A.B. Oct. 10, 2019)에서는 아래 디자인표장이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선전·광고 스티커에 대한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일 뿐이며,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성 메시지나 견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SCOOP과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

**출원번호 86183499 해당 상표**

(자료원: http://ttabvue.uspto.gov/ttabvue/ttabvue-86183499-EXA-19.pdf)

2019년 11월 21일에 공시된 In re Ocean Technology, Inc., 2019 U.S.P.Q.2d 450686 (T.T.A.B. 2019) 역시도 아래 디자인표장이 단순히 해당 상품에 대한 성분과 품질(즉, 자연적이고(all natural) 저온살균된(pasteurized) 고급(gourmet) 게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그치므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 상표를 출원한 회사 회장과 해당 업계 관계자 세 명은 이 표장을 접한 관련 소비자들이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선언서(declaration)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상표심판원은 이를 설득력있는 증거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원번호 87405201 해당 상표**

(자료원: http://ttabvue.uspto.gov/ttabvue/ttabvue-87405201-EXA-20.pdf)

위 세 가지 등록 거절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술적인 표현을 상표명에 도입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은 해당 상표가 상표의 전제 요건인 출처 식별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품·서비스를 기술하는 상표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는 연방상표로 등록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다. 2019년 6월 24일에 발표된 연방대법원 판례 Iancu v. Brunetti, 139 S. Ct. 2294 (U.S. 2019)는 부도덕하거나(immoral) 저속한(scandalous) 상표 등록을 금지한 상표법 15 U.S.C. § 1052(a)이 관점 또는 견해차(viewpoint)에 따른 차별에 해당되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출원인은 자신의 스트릿웨어 패션 브랜드명을 'FRIENDS U CAN'T TRUST'를 줄인 'FUCT'로 짓고 상표 출원을 했으나, 상표 심사관은 비속어 'fucked'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부도덕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같이 전통적인 도덕성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해당 법조항은 엄연히 관점 기준에 의한 차별이므로 출원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FUCT' 상표 (등록번호 5934763)는 2019년 12월 17일에 연방상표로 등록되었다. 추후 미국 의회가 상표법 개정을 통해 다른 기준 마련에 나설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음란한 표현들도 상표로 등록 가능할 것이다.

## ○ 상표·특허 출원 심사처리기간 통계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 특허 상표청에 제출된 상표 출원서는 2018년도에 비해 5.4% 증가한 673,233건을 기록하였다. 2019년 상표 심사통지기간(first action pendency)은 작년에 비해 0.8개월이 감소된 2.6개월(작년 3.4개월)로 집계되었다. 유예(suspended) 처리된 건과 당사자계심판건(inter partes cases)을 제외한 평균 상표 심사처리기간(total pendency)은 9.3개월(작년 9.6개월)이고, 유예건과 당사자계심판건까지 포함한 경우 10.7개월(작년 10.9개월)이다.

특허의 경우 2019년에 제출된 출원서는 2018년에 비해 2.7%가 증가한 665,231건을 기록하였다. 특허 최초심사통지 기간은 작년보다 1.1개월이 감소한 14.7개월(작년 15.8개월)이었고, 평균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작년과 동일하게 23.8개월로 확인되었다.

* 자료원: FY 2019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FY19PAR.pdf)

## ○ 미국 저작권 관련 주요 판결

저작권법 17 U.S.C. § 411(a)은 저작권청에 등록 혹은 예비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저작자가 저작권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 411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그간 상반되는 해석이 분분했다. 2019년 3월 4일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139 S. Ct. 881 (U.S. 2019) 판례에서 저작권 출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저작권청의 등록 결정이 내려져야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앞으로 저작권자는 권리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등록증을 입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청의 발표 자료(https://www.copyright.gov/registration/docs/processing-times-faqs.pdf)에 의하면 저작권 출원서가 등록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연방대법원의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139 S. Ct. 873 (U.S. 2019) 판례도 Fourth Estate 판례와 같은 날인 3월 4일에 공표되었다. 저작권법 17 U.S.C. § 505은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에서 한 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총 비용(full costs)"을 청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한다. 오라클 측은 비용 앞에 '총(full)'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법 상의 일반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총'이 단순히 양이나 금액을 의미하며, §

505에 의거하여 회수 가능한 총 비용은 소송 절차법 28 U.S.C. §§ 1821, 1920에서 열거된 여섯 가지의 비용 카테고리(즉, (1) 법원 서기 또는 집행관 비용(fees of the clerk and marshal), (2)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된 또는 전자상 기록된 문서(transcript) 비용, (3) 출력 및 증인 관련 비용, (4) 소송에 필요한 경우, 인증 등본(exemplification) 및 사본 수수료, (5) 관납료 또는 인지대(docket fees), (6)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증인과 통역 관련 비용)에 국한된다고 결론지었다.

## ▣ 현지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유통계약서 체결 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삽입 추진 필요

목욕용품, 유아용품, 수유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국의 M사는 미국의 뷰티제품 유통기업 S사에 자사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M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다. S사는 약식 계약서를 내밀며 추가적인 협상이나 계약서 수정 없이 이대로 거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M사는 지재권 보호 조항을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S사는 거절하였다. 이 조항대로라면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M사가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관련 사안이 유통계약에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동 사안에 대한 문의를 접수한 뉴욕 IP-DESK는 비록 상대 기업이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조항 삽입을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상표권 보호 문구라도 넣어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표준 유통계약서 샘플들을 찾아 지재권 보호 조항을 비교·분석한 후, M사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특히 S사가 계약기간동안 오로지 홍보, 광고, 판매 목적으로만 M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에 제한을 두고, 계약이 만료되면 S사가 M사의 상표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M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S측에 양도 또는 사용을 허가한 바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유통계약서에 적시된 용도 이외에는 유통사가 제조사의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문서에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유통사에서 계약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제조사의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계약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제조기업들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연방상표, 특허,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도 권리를 침해당할 시 가용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그러나 상표, 특허, 저작권 외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무형 자산들이 있고, 특히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서로 소유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로 존재하는 보통법상 상표, 영업비밀, 노하우, 중요한 기밀 정보 등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계약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실무상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론적으로는 제조사의 이익을 최적으로 대변하는 상세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삽입이 권고되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다. 이에 협상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잠재적인 분쟁 이슈들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한국의 온라인 셀러들 상표권 침해 피소 현황

2019년 3월 26일 'RAZORBACKS' 관련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아칸소 대학은 북부 일리노이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Arkansas v. The Partnerships and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dentified on Schedule "A" (1:19-cv-02053)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아칸소 대학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일리노이주의 기만적 거래관행에 관한 모범법(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100인 이상의 온라인 판매·유통업자들을 제소했다. 원고의 멧돼지 로고 상표가 부착된 'Flying Razorbacks' 장난감 모형 상품을 이베이(eBay)에서 판매 중이던 한국의 유통업자 K씨도 피고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2019년 7월 1일 등록상표 'HULA HOOP'를 보유한 Wham-O Holding, Ltd.와 InterSport Corp.는 북부 일리노이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Wham-O Holding, Ltd. and Intersport Corp. d/b/a Wham-O v. The Partnerships and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dentified on Schedule "A" (1:19-cv-04407)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에 언급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100인 이상의 온라인 판매·유통업자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일리노이주의 기만적 거래관행에 관한 모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훌라후프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던 한국의 유통업자 C씨도 피고로 지목되었다.

두 사건 모두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비공개 일시적 긴급금지명령(Sealed Temporary Restraining Order)으로 인해 K씨와 C씨의 이베이 판매 계정과 페이팔(PayPal) 계정은 즉시 거래 중지가 되었다. 또한, 대금 결제수단인 페이팔 계정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K씨와 C씨는 자신들의 계정에 입금되어 있던 잔고마저 출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뉴욕 IP-DESK에 연락하여 상표권 침해 소송 대응방안, 항변 논거, 계정 정상화 방법,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문제가 된 원고의 상표들은 모두 등록된 지 5년이 넘어 불가쟁력(incontestability) 지위를 확보하였기에, 등록상표의 유효성, 원고의 상표 소유권, 해당 상표를 상거래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피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기회비용, 경제적 실리, 패소 리스크 등 다각적 측면에서 고민한 이들은 최소의 합의금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현지 변호사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원고와의 협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에 대한 소를 취하시켰다.

두 소송 모두 원고 상표권자를 대리하는 로펌·변호사가 동일했는데 Vogt IP 로펌의 Keith A. Vogt 변호사는 매년 이베이 및 아마존(Amazon) 셀러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와 페이팔과 온라인

판매 계정 동결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K씨와 C씨 둘 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초기에 직접 협상을 시도했으나, 추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기 전까지 Vogt 변호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침해자로 지목당한 피고가 설령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미국 시장에 상품을 판매 중인 우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 상표법의 기초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제반 사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글로벌 셀러 교육을 주관하는 여러 민간 및 정부기관들도 상표권 보호 및 침해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3 | 90 | 2 | 0 | 0 | 5 | 9 | 13 |
| 2014 | 548 | 16 | 0 | 0 | 11 | 21 | 13 |
| 2015 | 540 | 9 | 0 | 0 | 7 | 17 | 22 |
| 2016 | 577 | 32 | 0 | 0 | 10 | 22 | 54 |
| 2017 | 633 | 55 | 0 | 1 | 9 | 7 | 25 |
| 2018 | 467 | 76 | 0 | 5 | 10 | 0 | 23 |
| 2019 | 829 | 125 | 0 | 7 | 9 | 4 | 16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미국 진출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법 및 기타 관련법 정보를 정리한 책자 발간

뉴욕 IP-DESK는 우리 기업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법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거울삼아 잠재적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2019년에 간행물 두 건을 선보였다. 인쇄물 형태뿐만 아니라 KOTRA 해외시장뉴스와 뉴욕 IP-DESK 이메일 구독 채널을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도 배포하였다.

2019년 11월에 발간한 'NYC Startup & Beyond'는 뉴욕시 광역도시권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거나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한국 관계자들을 위해 집필한 법률 개론서이다. 이 책자는 개별 이메일, 전시회 상담, 기업 내방, 고객의소리(VOC) 플랫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뉴욕

무역관에 유사한 문의가 반복적으로 접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업 가치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인 안착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 법규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뉴욕 IP-DESK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법, 고용법, 노동법, 개인정보 관련법 주제들을 국문 참고서로 정리하여, 이들의 현지 사업 기반을 닦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뉴욕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9년 12월 말에 선보인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19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은 뉴욕 IP-DESK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뉴스레터 중 핵심적인 주제들을 엮은 책이다. 이는 최신 판례들에서 소개된 법리 쟁점들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였다. 뉴스레터 배포 시점 이후 전개된 사항은 책 발간 시점에 맞춰 재조사하고 수정 반영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뉴욕 IP-DES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분석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 최신 시장 동향을 반영한 주제로 지식재산 세미나 기획

최근 10년 사이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규 광고기법들이 등장하였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소셜 미디어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애드테크, 네이티브 애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신규 광고기법과 브랜드 관리체계는 기업이 표적으로 삼는 고객층에 보다 정확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시간 피드백까지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광고법 및 소셜 미디어 관련 규제 위반 위험, 데이터 관리 결함이나 잘못된 정보 게시로 인한 브랜드·기업 가치 훼손 등의 리스크도 수반하고 있어 기업들의 정확한 이해를 요한다. 이에 뉴욕 IP-DESK는 2019년 5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모시고 '뉴미디어 마케팅 기법 활용 및 브랜드 보호 전략(Building and Protecting Your Brand in a New Media Environment)' 세미나를 기획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광고법 관련 제반 이슈와 효과적인 상표 관리전략에 대해 안내하였다. 1부에서는 미디어·광고계 최신 동향, 관련 준법경영 이슈, 허위 광고 처벌 사례, 뉴미디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모범사례 등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상표 검색, 출원 및 유지 절차, 모니터링, 침해 대응, 상표 라이선싱 및 수익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기존의 산업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2019년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정보보안, 사물 인터넷, 문서 관리, 스마트계약 분야에서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역시 더욱 성숙해졌다. 이에 착안하여 뉴욕 IP-DESK가 2019년 11월에 추진한 '블록체인 지식재산 콘퍼런스

(Embracing Blockchain: Its Place in a New Decade)'는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서 나아가, 관련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선점하고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총 4부로 구성된 동 콘퍼런스에는 뉴욕시 시장 사무국의 경제개발국장, IBM 블록체인 프로그램 디렉터, 핀테크 및 혁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소송 변호사, 뉴욕시경제개발국(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신기술 기반 사업 담당 변호사, 데이터 관리 스타트업 대표, 암호화폐 분야 벤처캐피털 대표,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규제 변호사, 발명가 출신 암호화폐 스타트업 대표가 연사 및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업계 내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미국 진출 한국계 기업 관계자, 특허변호사, 투자자, 핀테크, 정보보안, 암호화폐 분야 미국 대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150명 이상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였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된 청중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블록체인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 ○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수요에 특화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제공

2019년부터 뉴욕 무역관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지원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면서 뉴욕 IP-DESK도 동 산업 분야의 수요에 특화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 6월에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RESI(Redefining Early Stage Investments) Philadelphia 2019 콘퍼런스와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19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0개사의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특허 출원 및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약 분야 변리사와 1:1 상담 주선을 통해 기업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1월에는 미국 진출 예정인 생명과학·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 8개사를 대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과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특허 출원 전략, FDA 규정 및 수입·통관 시 규제 리스크,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스턴 지역에 주둔해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욕 IP-DESK에서 보스턴 출장 상담회 및 오찬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 제시에 일조하고자 힘썼다.

지난 몇 년간 뉴욕시가 생명과학 혁신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제약·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한 뉴저지주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바이오·헬스케어 메카로 부상한 보스턴도 뉴욕 IP-DESK의 관할지 안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뉴욕 IP-DESK는 여러 전문가 및 현지 유관기관들과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력 있는 한국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보다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4. 우수사례

### ○ 화장품 기업 C사의 상표 침해 분쟁 극복 및 미국 상표권 취득· 관리 전략 수립 사례

2012년 설립된 한국의 화장품 기업 C사는 수년 전 'W**** FORMULA'란 브랜드로 기능성 화장품 라인 제품들을 출시하고 국내외에서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9년 초 미국 화장품 기업 W사로부터 W사의 등록상표 'W*****'에 대한 상표권 피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신하였다. 'W****'와 'W*****'는 철자 하나가 달랐지만 발음은 동일했고, 화장품이라는 상품분류는 같았지만 각각의 지정상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C사는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고 경고장 반박서한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뉴욕 IP-DESK의 수행대리로펌 변호사는 반박서한에서 왜 상표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증거물과 논거를 제시하고, 양사의 상표가 충분히 공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C사와 W사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조속한 해결을 꾀하고자, C사의 상표명을 반드시 'W**** FORMULA'로 국한하고, 소비자들의 출처 혼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W사의 등록상표와 발음이 일치하는 'W****'로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C사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W사는 반박서한 수신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더 이상 권리 행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몇 년간 C사의 제품을 미국 전역의 유통채널에 공급해온 미국 영업사는 C사가 리브랜딩, 리패키징, 상표 변경을 단행하고, 소매업체들에게 보증· 면책· 배상 특권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C사는 이 같은 제안이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분석을 받았다. C사를 대리한 변호사는 설령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분쟁이 비화되더라도 C사가 패소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업사가 제안한 내용이 C사에게 지울 잠재적인 사업적 부담, 법적 책임,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후, C사가 처한 상황에 비해 과중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현행 상표에 보다 식별력 높은 용어를 추가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을 추진함으로서 영업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W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변호사는 C사가 가장 선호하는 상표명을 주된 상표로 출원을 추진하되, W사의 이의신청에 막혀 이 상표의 등록이 어려워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상표 출원 옵션도 추천하였다.

C사는 이처럼 상표 전문가의 세심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상표권 분쟁 상황을 종식시켰으며, 향후 사업의 발판이 될 미국 상표권 취득 전략도 강구할 수 있었다. 이 사례가 시사하듯이 상표명에 들어간 특정 단어가 해당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고, 현재 브랜드명에 이 단어가 포함된 유사품목의 상품 다수가 미국에서 이미 유통 중인데다가, 비슷한 명칭으로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상표도 여럿이며, 지정상품군과 유통채널이 서로 다를 경우, 상표 침해 경고장에 반박하기 유리한 입지를 갖는다.

※ C사의 감사 이메일 중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박다미 변호사님!
>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검토하여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할지 고민해보고 또 의견들을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도움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OOO 올림

> 안녕하세요 박다미 변호사님 !
>
> - 중략 -
>
> 제가 여러 관련업체에 변호사님을 비롯한 코트라분들의 여러가지 도움으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잘 이겨냈고 또한 미국에서의 비즈니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아는 기자님들한테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널리 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 - 중략 -
>
> 감사합니다.
>
> OOO 올림

### ○ 소셜 라디오 방송 스타트업 M사의 미국 음악 저작권법 이슈 검토

M사는 유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한국의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이다. 2016년 실시간 소셜 라디오 방송 플랫폼 모바일앱을 런칭한 이후로 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M사는 뉴욕 IP-DESK에서 2019년 5월에 작성하여 배포한 '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료의 이해' 뉴스레터를 접하고 미국에서 적법하게 서비스하려면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대상, 실시료 산정 방식,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뉴욕 IP-DESK는 미국에서 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게 해당되는 음악 저작권법 관련 조항, 음악 저작권의 종류,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 부문에 각각 해당되는 라이선스의 종류 및 계약 체결 대상, 디지털 공연권 저작권료 법정요율, 저작권 침해 리스크 및 공소시효, 민사상·형사상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하여, 동 사안에 대한 M사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왔다. 특히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7 U.S.C. § 512이 규정하는 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에 대해 안내하고, M사가 OSP로 갖추어야 할 DMCA 필수 절차, 저작권 침해 통지서 접수 과정, 해당 침해물의 삭제 및 접근 차단 의무 등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법은 특수한 분야로, 미국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음악현대화법 (Music

Modernization Act)이 2018년 10월에 발효된 이후 최근 법제적으로 상당한 변동사항이 있었다. 이에 뉴욕 IP-DESK는 M사가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부터 현지법상 예상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 음악·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자문을 받고 적절히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뉴욕 소재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두 분을 M사와 연결 지원하고, 로펌 측에 M사가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토픽들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M사의 담당자들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들과의 콘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DMCA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 의논하고 조언을 받았다.

2006년에 출범한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스타트업 그루브샤크 (Grooveshark)는 다른 불법 peer-to-peer 네트워크와 차별화를 꾀했으나 메이저 음반사들로부터 수 년간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뒤, 2015년 결국 음반사들과의 소송 합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M사의 경우에도 당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 콘텐츠와 관련하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 저작권자들과 분쟁으로 비화되어 기업의 사활을 위협할 수 있다. 뉴욕 IP-DESK가 M사가 실무를 추진 시 자사의 전략적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해 안내하고, 경륜이 풍부한 현지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진출 초기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향후 사업 위험요소에 미리 대비하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원 사례였다.

**※ M사의 감사 이메일 중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 중략 –
>
> 변호사님과 KOTRA의 지원에 매우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 여러모로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드림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두 현지 변호사님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께서 각각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두 분께서 말씀하시길 … 중략 … 조언을 주셨습니다.
>
> – 중략 –
>
> 중간에서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
> ○○○ 드림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뉴미디어 마케팅 기법 활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세미나 (5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 및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 (6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 및
지재권 보호 전략 상담회 (6월)

미국 지식재산권 개요 및 관리 실무 세미나 (8월)

미국 화장품산업 관련법규 및
지식재산법 세미나 (9월)

미국 미디어 콘텐츠 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전략 워크숍 (10월)

Korean Startup Summit 연계 IP 및
스타트업 운영 실무 세미나 (10월)

Korean Startup Summit 연계 IP 및
스타트업 운영 실무 워크숍 (10월)

블록체인 지식재산 콘퍼런스 (11월)

보스턴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법률 워크숍 (11월)

보스턴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법률 멘토링 (11월)

보스턴 지식재산권 상담회 (11월)

# XII 프랑크푸르트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독일 프랑크푸르트 IP-DESK는 '14년 7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에 이어 전 세계 10번째 IP-DESK로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개소하였다. 독일 전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19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2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의 현지 파트너 로펌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에 지재권 상담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표 2-12-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강환국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이동희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 조아라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표 2-12-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內 |
| 주 소 |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br>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
| 연락처 | +49-69-242-992-0 |

표 2-12-3 협력 로펌 : 총 5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Vossius&Partner | 뮌헨 | 120명 | 최재혁 변리사 |
| Gulde&Partner | 베를린 | 45명 | 남경순 변리사 |
| RGTH | 함부르크 | 23명 | 김재욱 변리사 |
| Hanyang IPLC | 프랑크푸르트 | 13명 | 조익제 변호사 |
| LEE·TOUBAR·VON SCHWECH·BURG HARTZ | 뒤셀도르프 | 10명 | 이동준 변호사 |

## 2.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18년 독일은 글로벌 통상 분쟁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약 1조 5,606억 유로를 달성하여 이 부분 신기록을 경신 하였다. 수입은 약 1조 2,856억 유로이며,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약 2,749억 유로로 집계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 폭은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 독일 경제 전망은 고용 안정 및 상승기조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세계무역 부진, 브렉시트 및 미 트럼프 정부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마찰 지속은, 여전한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미래의 독일 경제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도표는 독일 경제의 주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2-4 독일 경제 주요 지표

| 주요지표 | 단 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인구 | 백만 명 | 81.2 | 82.2 | 82.5 | 82.8 | 83 |
| 명목 GDP | 십억 유로 | 2,915 | 3,030 | 3,134 | 3,245 | 3,344 |
| 1인당 명목 GDP | 유로 | 36,287 | 37,324 | 38,730 | 39,650 | 40,843 |
| 실질성장률 | % | 1.6 | 1.7 | 1.9 | 2.2 | 1.4 |
| 실업률 | % | 6.4 | 6.4 | 6.1 | 5.7 | 5.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0.5 | 0.3 | 0.5 | 1.9 | 1.6 |
| 재정수지(GDP대비) | % | 0.3 | 0.6 | 0.8 | 1.2 | 1.8 |
| 총수출 | 억 달러 | 14,943 | 13,267 | 13,344 | 14,486 | 15,606 |
| (對韓 수출) | 억 달러 | 207.2 | 199.4 | 192.0 | 203.4 | 210.3 |
| 총수입 | 억 달러 | 12,072 | 10,515 | 10,554 | 11,634 | 12,856 |
| (對韓 수입) | 억 달러 | 89.8 | 72.7 | 70.7 | 108.1 | 108.3 |
| 무역수지 | 억 달러 | 2,870 | 2,751 | 2,790 | 2,853 | 2,749 |
| 환율(연평균) | 유로/USD | 1.328 | 1.109 | 1.106 | 1.129 | 1.181 |
| 해외직접투자 | 억 달러 | 917.2 | 990.2 | 603.4 | 880.8 | 632.8 |
| 외국인직접투자 | 억 달러 | -30.1 | 305.6 | 126.1 | 331.9 | 119.2 |

*주: 자료 출처에 따라 통계에 차이가 있음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Eurostat, Global Trade Atlas, 독일연방은행, OECD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유럽특허출원 현황

그림 1은 '14년~'18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규정에 따라 출원된 직접적인 유럽특허출원 및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을

포함한 유럽특허출원(European patent applications)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4년 총 152,703건, '15년 160,004건, '16년 159,087건, '17년 166,594건, '18년 174,317건의 유럽특허가 출원되었으며, 해당 기간 유럽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약 3.4%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년 출원된 174,317건의 유럽특허 주요 출원국 및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유럽특허조약 가입국들에 의한 출원이 가장 높아 81,468건(약 47%), 다음으로 미국이 43,612건(약 25%), 일본이 22,615건(약 13%), 중국이 9,401건(약 5%), 우리나라가 7,296건(약 4%), 기타 국가들이 9,925건(약 6%)을 출원하였다.

그림 2-12-1 유럽특허출원(EPC출원 + 유럽단계진입 PCT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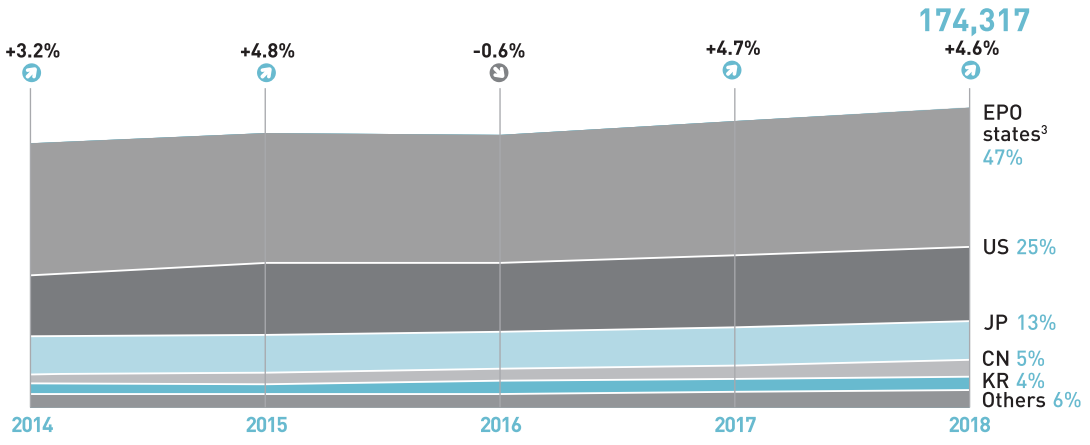


자료원: 유럽특허청

아래 그림 2는 '18년 유럽특허출원 상위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독일 지멘스 2,493건(1위), 중국 화웨이 2,485건(2위), 국내기업 삼성이 2,449건(3위), LG가 2,376건(4위), 미국 UNITED TECHNOLOGIES 1,983건(5위), 네덜란드 필립스가 1,617건(6위), 미국 퀄컴이 1,593건(7위), 스웨덴 에릭슨 1,472건(8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1,307건(9위), 독일 보쉬 1,286건(10위) 순이다. 우리기업으로는  삼성과 LG가 유럽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18년 유럽특허출원 상위 3개 기술 분야로는, 의료기술 분야에서13,795건('17년 대비 5.0% 증가), 다음으로 디지털통신 분야에서 11,940건('17년 대비 0.7% 증가), 컴퓨터기술 분야에서 11,718건('17년 대비 3.3% 증가)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그림 2-12-2 유럽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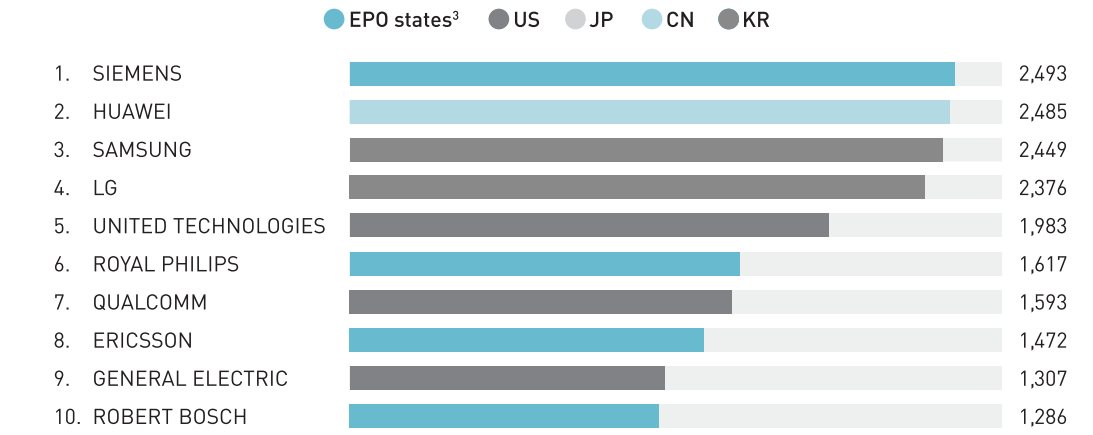


자료원: 유럽특허청

## ○ 유럽특허등록 현황

그림3은 '14년~'18년 등록된 유럽특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4년 64,613건, '15년 68,419건, '16년 95,940건 그리고 '17년 최초 10만 건을 돌파하여 총 105,635건, '18년 127,625건의 유럽특허가 등록되었다. 이 기간 유럽특허등록의 연평균 증감률은 약 18.6% 이다.

18년 등록된 127,625건의 유럽특허는 EPO 가입국들에 의한 등록이 가장 높아 57,906건(약 45%)에 달한다. 다음으로 미국 31,136건(약 24%), 일본 21,343건(약 17%), 우리나라 6,262건(약 5%), 중국 4,831건(약 4%), 기타 국가들에 의해 6,147건(약 5%)의 특허가 등록 되었다.

그림 2-12-3 유럽특허등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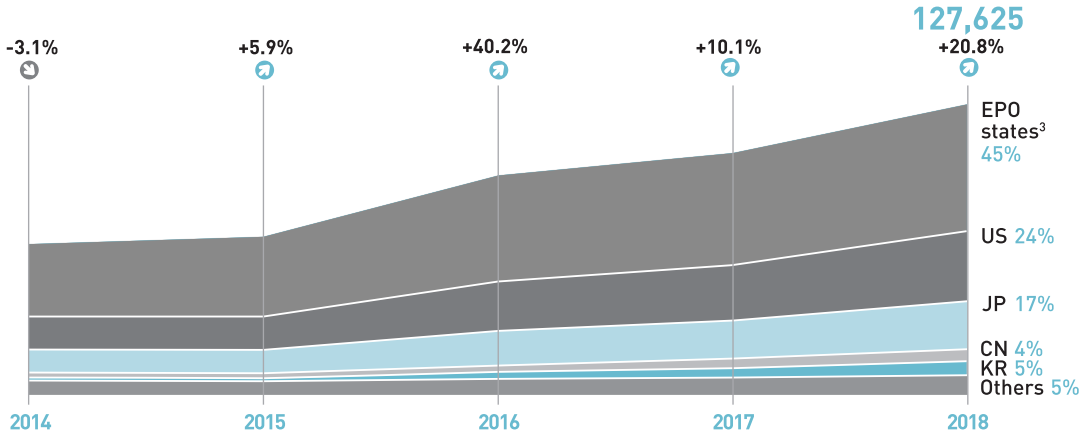


자료원: 유럽특허청

## ○ 유럽공동체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표 2는 '14년~'18년 유럽공동체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출원 및 등록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으로 출원된 유럽공동체상표는, '14년 117,195건, '15년 130,476건, '16년 135,384건, '17년 146,461건, '18년 152,528건 이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감률은 약 6.8% 이다. 이 중 국제출원[1]을 통하여 출원된 유럽공동체상표는 '14년 17,178건, '15년 21,879건, '16년 18,780건, '17년 24,877건, '18년 25,162건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기간 국제출원을 통한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약 10.0%이다. 한편, 동 기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직접출원[2]된 유럽공동체상표 건수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로, '14년 최초 10만 건을 돌파하여 100,017건, '15년 108,597건, '16년 116,604건, '17년 121,584, '18년 127,366건이 출원되었다.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감률은 약 6.2% 이다.

'18년 출원된 유럽공동체상표의 지정된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살펴보면, 9류 41,706건(10.7%), 35류 36,214건(9.3%), 42류 26,578건(6.8%), 41류 22,379건(5.4%), 25류 18,027건(4.6%), 5류 13,454건(3.5%), 3류 13,118건(3.4%), 16류 11,270건(2.9%), 36류 10,803건(2.8%), 28류 10,315건(2.6%) 순이며, 그 외의 지정된 류는 186,283건(48%)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14년~'18년 등록된 유럽공동체상표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103,808건, '15년 109,352건, '16년 125,981건, '17년 128,326건, '18년 133,298건이 등록되었다. 동 기간 유럽공동체상표 등록 연평균 증감률은 약 6.5% 이다.

표 2-12-5 유럽공동체상표출원 및 등록 건수 (단위: 건)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국제출원[3] | 17,178 | 21,879 | 18,780 | 24,877 | 25,162 |
| 직접출원[4] | 100,017 | 108,597 | 116,604 | 121,584 | 127,366 |
| 출원합계 | 117,195 | 130,476 | 135,384 | 146,461 | 152,528 |
| 등록합계 | 103,308 | 109,352 | 125,981 | 128,326 | 133,298 |

자료원: 유럽지식재산청

## ○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및 등록 현황

표 3은 '14년~'18년 출원 및 등록된 유럽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4년 97,839건, '15년 97,708건, '16년 104,798건, '17년 109,908건, '18년 107,803건의 유럽공동체디자인이 출원되어, 해당 기간 동안 꾸준한 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18년

1) EU를 지정으로 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2)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된 유럽상표
3) EU를 지정으로 한 헤이그 국제출원
4)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된 유럽공동체디자인

유럽공동체디자인 출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약 2.4% 이다.

'18년 출원된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상위 10개 로카르노분류(Locarno Classification)를 살펴보면, 2류(약 10.6%), 6류(약 10.5%), 14류(약 8.4%), 26류(약 6.6%), 9류(약 6.2%), 12류(약 4.8%), 7류(약 4.7%), 23류(약 4.5%), 32류(약 4.5%), 21류(약 4.0%), 기타 분류(약 35.2%) 순이다.

한편 '14년~'18년 등록된 유럽공동체디자인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87,304건, '15년 85,665건, '16년 89,973건, '17년 95,543건, '18년 92,929건의 유럽공동체디자인이 등록되었다. '14년~'18년 유럽공동체디자인 등록의 연평균 증감률은 약 1.6% 이다.

표 2-12-6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및 등록 건수 (단위: 건)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국제출원 | 10,302 | 11,373 | 13,907 | 13,928 | 14,321 |
| 직접출원 | 87,537 | 86,335 | 90,891 | 95,980 | 93,482 |
| 출원합계 | 97,839 | 97,708 | 104,798 | 109,908 | 107,803 |
| 등록합계 | 87,304 | 85,665 | 89,973 | 95,543 | 92,929 |

자료원: 유럽지식재산청(2020.2)

### ○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지재권 관련 주요 내용[5)]

브렉시트에 따른 지재권 관련 초안 적용대상은, 유럽공동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지리적 표시, 공동체식물품종보호권, 추가보호증명,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일(2020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등록 결정된 권리인 유럽공동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공동체식물품종보호권은, 별도의 재심사 없이 영국 내에서 영국법에 따라 지속 보호(제 54조 제 1항) 가 가능하다.

- 지리적 표시 또한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일 이전에 등록되었다면, 종료일 이후에도 별도의 재심사 없이, 영국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영국법에 따라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제 54조 제 2항). 하지만 이행기간 종료일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EU 지리적 표시는 영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된다. 다만, 상기 지리적 표시 보호는 제 54조 제 2항을 대체하는 지리적 표시 관련 향후 EU와 영국간 미래관계협정 발효가 무산되거나 적용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 EU내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및 사법적 분쟁절차 판단결과가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영국의 권리도 무효 또는 취소된다(제 54조 제 3항). 또한 무효 및 취소된 결정의 효력은 EU와 영국

5) 자료원: 유럽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80206007232&uri=CELEX:12019W/TXT(02)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EU 규범에 따라 등록된 EU 지재권 갱신일은, 자동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영국 내 권리의 최초 갱신일이 된다(제 54조 제 4항).

- 영국 상표로 전환되는 상표권은 EU 상표의 출원일 및 우선일을 승계 받게 된다. 또한, 영국 상표로 전환되는 유럽상표는 지난 5년간 영국에서 불사용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 즉,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EU내 상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영국 내 상표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제 54조 제 5항).

- 유럽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 및 식물품종보호권이 영국 디자인 및 식물품종보호권으로 전환된 경우, 유럽 지재권 잔여 존속기간과 동일한 존속 기간을 유지하며, 출원일도 승계 받게 된다(제 54조 제 6항).

- 유럽지재권의 영국 권리로의 전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영국의 관계 당국이 EU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권리전환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지재권 권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출원 또는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행 기간 종료일 이 후 3년간 영국 내 연락가능 주소를 두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해당 권리의 갱신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며,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영국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포기 가능하다(제 55조).

-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이전에 EU를 지정하여 국제 등록된 상표 및 디자인은 영국에서도 보호받게 된다(제 56조).

- EU 규정에 따른 미등록공동체디자인 보유자는, 영국 내에서 영국법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동 권리의 보호기간은 EU 권리의 잔여보호 기간과 동등하다(제 57조).

- EU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유자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이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 영국 내에서 영국 법에 따라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보호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영국법에 따른 동 권리의 보호기간은 EU 권리의 잔여 보호기간과 동일하다(제 58조).

- 브렉시트 이행 기간 완료일 이전에 출원이 진행 중인 유럽상표 및 공동체디자인은, 종료일 기준 9개월내 영국에 출원 시, EU 해당 권리의 출원일 및 우선일을 동등하게 인정받게 된다. 식물품종보호 출원의 경우 이는 6개월 내 영국에 동일한 식품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는 임시우선권을 부여 받게 된다(제 59조).

-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보호증명(SPC) 신청 건이,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일 이전에 영국 의약품당국에 제출 되고, SPC 부여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현행 EU 규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인정한다.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의약품 시판허가 등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기간은 최대 5.5년 부여 된다. 이미

SPC가 부여된 건에 대해서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한다(제 60조).

- EU 규정상,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전에 EU와 영국에서 모두 소진된 지재권은 이행 기간 이후에도 EU와 영국에서 소진되어야 한다(제 61조)
- 유럽사법재판소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전, 영국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에 대한 관할권 등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제 86조).
- 유럽지식재산청 대리권 관련, 영국의 법률대리인은 동 협정 이전에 개시했거나, 이행 기간 중 유럽지식재산청을 상대로 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절차에 있어 일체의 대리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제 95조).

### ○ 독일 개정 상표법 발효 주요 내용

- 기존의 등록요건 중 '시각성'이라는 요건이 소거되었다. 표장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빙할 수만 있으면 되며, 예를 들어 소리상표, 멀티미디어 상표, 홀로그램 같은 무형의 상표를 전자 형태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증 이외, 기타 성질의 보증 기능을 갖는 증명표장 상표를 도입하였다.
- 상표 실시권자는 실시권의 유형, 범위, 조건 및 변경사항 등을 독일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고, 이는 국제상표등록에서 독일이 지정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상표권 소유자는 무료로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 허락 의사를 등록 할 수 있게 되었다.
- 독일의 구 상표 존속기간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는 해당 월 마지막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4일에 등록된 독일 상표는 10년 후인 2028년 1월 31까지 권리가 존속되었지만, 앞으로 신규 등록된 모든 상표에 대한 10년 보호 기간의 계산일은, 등록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4일에 등록된 상표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2029년 1월 14일에 만료된다.
- 독일 상표 이의제기 절차의 체계가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은 제기된 하나의 이의 표제로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다수의 선 권리를 기반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자사 상표·디자인의 해외 미등록 및 무단 선등록 상표 문제

우리기업의 대표적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일 및 유럽에 자사 상표의 미등록으로 발생한 문제, 대표적으로 타인에 의한 무단 선등록 상표로 인한 피해를 꼽을 수 있다. 독일

전시회 기간 중 이동식 IP-DESK를 통하여 만나게 된 몇 몇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 국내기업은 독일 에이전트가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독일특허청에 출원하였고, 이를 알게 되어 우리 IP-DESK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해당 상표 출원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지 않아, 우리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관련 상표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타인에 의한 우리기업 신규 디자인의 무단 선등록 문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내기업의 신규 디자인 공개가(예: 자사 신상품 등), 관련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없이 대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 경우 우리기업이 해당 디자인을 대중 공개 시점 이후, 1년경과 후에 유럽지식재산청에 출원하게 된다면, 출원 디자인에 대한 무심사 원칙을 적용하여 등록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추후 관련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등의 문제로 그 권리를 잃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디자인 침해에 대한 우리기업의 권리 주장이 거의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업체들이 국내기업의 신규제품 디자인을 모방하여, 독일(유럽)에 유통 및 판매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독일 전시회에서 만나본 다수의 우리기업 관계자들은, 독일 및 유럽으로 자사 제품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시기에 지재권 출원을 생각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해외 매출고 도달 시기까지, 자사의 상표 및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침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해외 수출이전에 자사 지재권을 해외에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 ○ 한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중국기업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중국 업체들의 행태를 종종 다루곤 하였다. 중국기업 무무소가 그 대표적인 예 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에서도, 드물지만 가끔씩 감지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다수 참가하는 전시회에 방문하여 이동식 IP-DESK를 운영하다 보면, 몇 몇 중국기업들은 자사 부스에 태극기 및 한국을 연상케 하는 소품들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이미지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피력한 국내기업은 드물지만,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행태에 누군가가 직접 철퇴를 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향후, 이와 관련한 해결 방법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 국내기업의 해외지재권 출원 후, 사기인보이스 수령

최근 몇 년간 우리기업들의 해외지지재권 출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특히 유럽공동상표 출원 국내업체들이 사기인보이스를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공동상표가 출원되어

유럽지식재산청 사이트에 공고되면, 출원인의 국내주소 또한 공개가 되기에, 유럽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사무소(대부분 동유럽에 위치)에서 이를 이용하여, 국내업체에 사기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업체가 이러한 인보이스를 수령하면, 수행대리인 또는 IP-DESK에 문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고 있지만, 자사 상표출원 수행대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발행되는 인보이스는 반드시 무시하고, 송금하여서는 안 된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지원 | 세관등록 | 침해조사 | 설명회 개최 | 협력채널 구축 | 정보제공 |
|---|---|---|---|---|---|---|---|
| 2014 | 145 | 17 | 0 | 3 | 2 | 15 | 0 |
| 2015 | 320 | 32 | 0 | 0 | 6 | 9 | 24 |
| 2016 | 470 | 32 | 0 | 5 | 6 | 3 | 24 |
| 2017 | 480 | 34 | 0 | 4 | 6 | 1 | 22 |
| 2018 | 450 | 34 | 0 | 3 | 7 | 2 | 13 |
| 2019 | 524 | 77 | 0 | 7 | 5 | 0 | 0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주요 독일 전시회 이동식 IP-DESK 운영

'19년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 중 국내기업이 다수 참가하는 전시회 25개를 선정 후, 해당 전시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럽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부스를 찾아가, 독일 및 유럽 IP 관련 상담 및 지재권 출원지원(특허 · 상표 · 디자인) 사업을 홍보하였다. 특히,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기업에게는 초동대응을 통하여, 접수된 경고장을 접수 후 해당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파트너 로펌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한 자문 및 경고장 대응 작업을 지원하였다.

#### ○ 독일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대상 사전간담회 실시

'19년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 중, 코트라 한국관이 구성된 전시회를 대상으로(총 5회), 전시 개최

하루 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지재권 분쟁 유형 및 유의 사항, 대응 방안 등을 안내 하였다. 실제로, 사전간담회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우리기업들의 매뉴얼에 따른 대응 능력도 확인 가능 하였다.

## 4. 우수사례

### ○ 2019 쾰른 치과 전시회 특허침해 지원 사례

해외업체 I社 제품

국내업체 T社 제품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19년 3월 12일 ~ 3월 15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치과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업체 V社는, 치과용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유럽 및 미국 등지에 원활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시회 첫째 날(3.12) 리히텐슈타인 I社 대리인으로부터 I社 보유 유럽특허 3건을 침해한 이유로, 경고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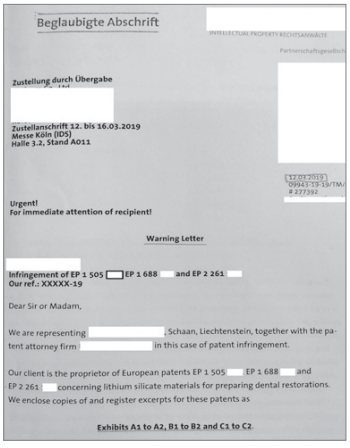

Beglaubigte Abschrift

Zustellung durch Übergabe

Zustellanschrift 12. bis 16.03.2019
Messe Köln (IDS)
Halle 3.2, Stand A011

Urgent!
For immediate attention of recipient!

Warning Letter

Infringement of EP 1 505 [redacted] EP 1 688 [redacted] and EP 2 261 [redacted]
Our ref.: XXXXX-19

Dear Sir or Madam,

We are representing [redacted], Schaan, Liechtenstein, together with the patent attorney firm [redacted] in this case of patent infringement.

Our client is the proprietor of European patents EP 1 505 [redacted] EP 1 688 [redacted] and EP 2 261 [redacted] concerning lithium silicate materials for preparing dental restorations.
We enclose copies of and register excerpts for these patents as

Exhibits A1 to A2, B1 to B2 and C1 to C2.

V社 접수 경고장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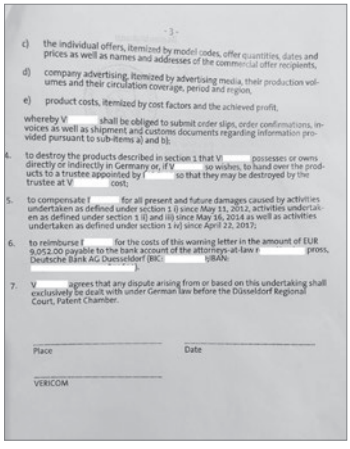

- 3 -

c) the individual offers, itemized by model codes, offer quantities, dates and prices as well as names and addresses of the commercial offer recipients,

d) company advertising, itemized by advertising media, their production volumes and their circulation coverage, period and region,

e) product costs, itemized by cost factors and the achieved profit,

whereby V [redacted] shall be obliged to submit order slips, order confirmations, invoices as well as shipment and customs documents regarding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sub-items a) and b);

4. to destroy the products described in section 1 that V [redacted] possesses or owns directly or indirectly in Germany or, if V [redacted] so wishes, to hand over the products to a trustee appointed by F [redacted] so that they may be destroyed by the trustee at V [redacted] cost;

5. to compensate F [redacted] for all present and future damages caused by activities undertaken as defined under section 1 i) since May 11, 2012, activities undertaken as defined under section 1 ii) and iii) since May 16, 2014 as well as activities undertaken as defined under section 1 iv) since April 22, 2017;

6. to reimburse F [redacted] for the costs of this warning letter in the amount of EUR 9,052.00 payable to the bank account of the attorneys-at-law r [redacted] gross, Deutsche Bank AG Duesseldorf (BIC: [redacted] IBAN: [redacted]);

7. V [redacted] agrees that any dispute arising from or based on this undertaking shall exclusively be dealt with under German law before the Düsseldorf Regional Court, Patent Chamber.

Place [redacted] Date [redacted]

VERICOM

경고장에 동봉된 종료통지선언문 일부

V社는 다행히도 코트라 한국관 전시 참가기업으로, 전시 전날 사전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안내 받았었다. 이에, 특허침해로 인한 경고장 접수 후, 신속히 현장에 있던 코트라

전시전담 직원에게 이를 알렸고, 이동식 IP-DESK 운영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IP-DESK 담당자도 동 사건을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다. IP-DESK 담당자는 V社 부스를 방문하였고, 경고장 수령으로 당황스러워 하던 업체 관계자와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우선, 국내업체 담당자는 우리 IP-DESK에 관련 경고장 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바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우리업체에게 해당 특허 침해사실 인정 및 관련 전시제품 철거, 나아가 종료통지선언문에 서명 후, 이를 다음 날(3.13) 정오까지 보내는 것 이었다. 통상적으로, 경고장 수령 후, 상대방이 제시한 기간 내, 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관할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전시포기 등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다.

우리 IP-DESK는 경고장 관련 내용 및 종료통지선언문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V社 담당자에게 알린 후, IP-DESK 파트너 로펌 대리인을 선임하여 동 건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현장에서 V社 담당자는 대리인 선임하였고, 우리 대리인은 바로 상대측 대리인에게 경고장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3.14일까지 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V社 담당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상담을 실시하였고, 업체 담당자는 해당 특허침해를 일부분 인정하기에, 해당 특허침해에 따른 자사 피해의 최소화를 원하였다.

우리 IP-DESK는 선임 대리인에게 경고장 검토와 동봉된 종료통지선언문 수정작업을 요청하였다. 상대측에서 보낸 종료통지선언문에는 여러모로 우리기업에 불리한 조항 들이 삽입되어 있었기에, 우리측 대리인과 상대방 대리인이 상호 교신을 통한 본격적인 수정작업에 착수 하였다. 약 이틀에 걸친 협상 및 수정 과정을 통하여 종료통지선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으며, V社 담당자도 이에 최종 동의하여 서명 후, 상대방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 수정 전 | 수정 후 |
|---|---|
| • 추후 해당 특허침해 재발 시 (20,000 유로/건 지불) | • 추후 해당 특허침해 재발 시 (10,000 유로/건 지불) |
| • 해당 특허를 이용한 생산 제품 내용 증명 요청 (2012~)<br>• 해당 제품의 거래처, 벤더 등 관련 정보 제공 요청 (2012~)<br>• 해당 제품의 판매고, 모델명, 가격, 선적 자료, 고객명 및 주소 등 요청(2012~) | • 관련 요청에 대해 국내기업이 과거에 해당제품의 판매가 없음을 알려 이를 관철 |
| •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요청 | • 해당 내용을 독일에 국한 |
| • 경고장 작성 관련 비용 (9,052유로 지불 요청) | • 5,000유로로 합의 |

상대측에서는 동 건 관련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며, 우리업체는 특허침해 제품을 제외한 품목들을 전시 부스에 진열하여, 전시회 마지막 날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무사히 전시를 마칠 수 있었다.

### J社 디자인 피침해 관련 상담

J社는 유아용품 전문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19년 9월 쾰른 유아용품 전시회에 한국관 업체로 참가하였다. 휴대용 바나나 모양의 접이식 유아변기를 출품하여, 유럽 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J社의 독일 에이전시 W社 또한 동 전시회에 지원을 나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 첫째 날 오후 J社 대표는 독일 에이전시를 통하여, 전시장내 중국관 부스 M社에서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유사제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우리 IP-DESK에 문의 하였다.

국내업체 J社 제품

중국업체 M社 제품

자료원: 코트라 IP-DESK

우리 IP-DESK는 J社 부스를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J社가 해당 디자인을 유럽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 에이전시 W社가 해당 디자인을 J社 동의하에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 및 등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은 전시 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당 침해제품의 철거가 중요한 목적이었기에, 독일 에이전시 W社가, 관련 디자인 피침해를 전시 당국에 주장하여, 중국기업 M社가 자사 부스의 해당 제품을 자진 철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IP-DESK는 남은 전시 기간 중, J社 대표와 추가 상담을 실시하였고, 독일 에이전시 W社가 등록한 유럽공동체디자인을 협상을 통하여 양도 받길 권고 드렸다.

유아용품 전시회 종료 후, 동 건 관련 팔로업을 위해 J社 대표와 여러 번 교신을 하였고, 추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이미 2년 전 국내에서 대중에 공개가 되었고, 비록 유럽지식재산청에서는 이를 무심사 원칙에 따라 등록시켜 주었지만, 추후 관련 분쟁 발생 시,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W社가 진행 중이던 디자인 양도는 더 이상 무의미함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J社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중국 업체 등을 통하여 제조 및 유통되어,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였기에, 추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J社와의 교신을 통하여, 제품 관련 디자인 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이 출원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CT를 통한 유럽진입 기한이 '20년 5월 중순까지 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일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에, 이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빠르게 확보한 후, '20년 초에 IP-DESK 지원 사업을 통한 유럽특허출원을 권고 드릴 수 있었다. 이에 J社 대표는 IP-DESK 파트너 로펌 변리사를 소개 받아, '19년 10월 독일 실용신안을 출원 하였다.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HAUSANSCHRIFT Zweibrückenstraße 12, 80331 München
POSTANSCHRIFT 80297 München
KONTAKT :
TEL -
FAX +49 89 2195-2221
INTERNET www.dpma.de
AKTENZEICHEN 20 2019 106 807.2
ANMELDER/INHABER Kwak
IHR ZEICHEN
ERSTELLT AM 21.10.2019

Bitte Aktenzeichen und Anmelder/Inhaber bei allen Eingaben und Zahlungen angeben!

**Empfangsbestätigung für eine Gebrauchsmusteranmeldung**

Die aus der beiliegenden Antragskopie ersichtliche Gebrauchsmusteranmeldung ist am 18.10.2019 bei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eingegangen.
Die Anmeldung hat das **Aktenzeichen 20 2019 105** erhalten.

**Eingegangene Unterlagen:**

| | |
|---|---|
| 9 | Seite(n) mit Beschreibung |
| 2 | Seite(n) Schutzansprüche mit 7 Schutzansprüchen |
| 7 | Blatt Zeichnung(en) |
| 0 | Abschrift(en) der Voranmeldung(en) |
| ☒ | Abschrift der Voranmeldung bei Abzweigung |
| ☐ | Vertretervollmacht |

**Wichtige Hinweise:**

**Wird die Anmelde- oder Rechercheantragsgebühr nicht innerhalb von 3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Anmeldung bzw. nach Stellung des Antrags gezahlt, so gilt die Anmeldung bzw. der Rechercheantrag als zurückgenommen (§ 6 PatKostG). Bitte beachten Sie, dass außer der Empfangsbestätigung keine weitere Gebührenbenachrichtigung versandt wird.**
Auf der nächsten Seite befinden sich weitere Informationen zu den Gebühren sowie Zahlungshinweise.

J社 독일 실용신안 출원 접수증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IP-DESK

향후, J社는 독일에 등록된 실용신안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의 침해제품에 대한 대응, 특히 독일 및 유럽에 자사 실용신안 침해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경고장 발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전시 기간 중 J社 디자인권을 침해 하였던 중국 업체 M社는 전시회 이 후, J社에 연락하여 라이센싱을 요청 하였으나, 우리업체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이동식 IP-DESK (1월)

이동식 IP-DESK (2월)

전시회 사전간담회 (3월)

이동식 IP-DESK (4월)

무역사절단 소규모 설명회 (5월)

이동식 IP-DESK (6월)

이동식 IP-DESK (8월)

전시회 사전간담회(9월)

이동식 IP-DESK (9월)

이동식 IP-DESK (9월)

이동식 IP-DESK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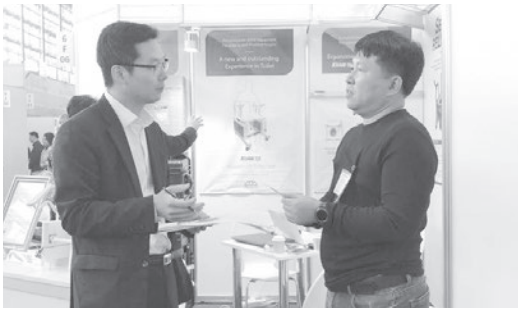

이동식 IP-DESK (9월)

이동식 IP-DESK (10월)

경영지원 세미나 (10월)

전시회 사전간담회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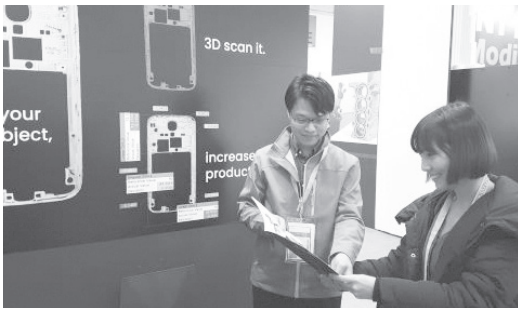


이동식 IP-DESK (11월)

XIII

# 도쿄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도쿄IP-DESK는 2015년 7월(전세계 11번째)에 일본 도쿄무역관에 개소하였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관할지역으로 2020년 현재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1명, 비상근 전문인력 1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개의 현지 특허사무소 및 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3-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민주현 | KOTRA (과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원다혜 | KOTRA (현지직원) | 한국 | - | 전담인력 |
| 유광희 | 이토국제특허 사무소 | 한국 | 변리사 | 전문인력 (비상근) |

표 2-13-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도쿄 무역관 內 |
| 주 소 | 9F., SHINKOKUSAI Bldg.4-1, MARUNOUCHI3-CHOME,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
| 연락처 | +81-3-6273-4638 |

표 2-13-3 협력 로펌 : 총 6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이토 국제특허사무소 | 도쿄 | 210명 | 유광희 변리사 |
| 아이다앤정 국제특허사무소 | 도쿄 | 8명 | 정원기 변리사 |
| 하라켄조 국제특허사무소 | 오사카 | 250명 | 후지타 켄타로 변리사 |
| 후카미 국제특허사무소 | 오사카 | 255명 | 토미이 미키 변리사 |
| 시가 국제특허사무소 | 도쿄 | 753명 | 교다 토모히로 변리사 |
| 앤더슨 모리 토모츠네 법률사무소 | 도쿄 | 503명 | 김성호 변리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현지 경제 전망

#### - 경기는 원만한 회복세

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침체된 부분이 있지만, 2020년에 들어 가고나면, 다시 한 번 원만한 회복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적인 IT 수요의 저점이나, 설비투자 억제 자세 완화가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강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자부 물품이나 자본재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견해이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손 부족이나 근로방식 개혁, IT기술 활용 등을 바탕으로 정보화 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감소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제조업의 투자 마인드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가계소비 침체도 장기화 회피

개인소비도 소비증세로 인해 전회 2014년 연말의 세금증세와 같은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증세 후에도 가계의 실질소득이 플러스를 유지하는 등, 가계의 부담증가도 한정적인 것으로 보여 개인소비는 다시 완만한 증가기조에 복귀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표 2-13-4 일본주요경제지표 예측표(2019.12.26.작성)

4분기는 전기대비년률, %, %포인트

| | 2019 | | 2020 | | | |
|---|---|---|---|---|---|---|
| | 7~9 | 10~12 | 1~3 | 4~6 | 7~9 | 10~12 |
| | 실적 | 예측 | | | | |
| 실적 GDP | 1.8 | ▲3.7 | 0.9 | 2.3 | 2.0 | 1.0 |
| 개인소비 | 2.2 | ▲6.9 | 2.0 | 2.4 | 0.0 | 1.2 |
| 주택투자 | 6.5 | ▲5.1 | ▲3.8 | ▲2.9 | 0.0 | 0.8 |
| 설비투자 | 7.3 | ▲3.8 | 1.6 | 2.3 | 2.3 | 2.1 |
| 재고투자 | (▲0.7) | (▲0.1) | ( 0.1) | ( 0.0) | ( 0.0) | ( 0.0) |
| 정부소비 | 2.7 | 1.6 | 0.0 | 3.0 | 4.2 | ▲0.7 |
| 공공투자 | 3.6 | 2.0 | 0.0 | 2.6 | 5.9 | 7.7 |
| 순수출입 | (▲0.7) | ( 0.8) | (▲0.5) | (▲0.1) | ( 0.5) | (▲0.3) |
| 수출 | ▲2.5 | 3.8 | ▲0.8 | 2.4 | 3.8 | 0.6 |
| 수입 | 1.3 | ▲1.0 | 2.0 | 2.8 | 0.8 | 1.0 |

| | | 2019 | | 2020 | | | |
|---|---|---|---|---|---|---|---|
| | | 7~9 | 10~12 | 1~3 | 4~6 | 7~9 | 10~12 |
| | | 실적 | 예측 | | | | |
| 각항 GDP | | 2.3 | 2.4 | 1.3 | 1.3 | 1.3 | 1.7 |
| GDP 디플레이터 | | 0.6 | 1.7 | 1.1 | 1.0 | 1.0 | 0.2 |
| 소비자물가지수 | | 0.5 | 0.6 | 0.8 | 0.7 | 0.9 | 0.6 |
| (신선제품, 소비세, 교육무상화 제외) | | 0.5 | 0.3 | 0.4 | 0.4 | 0.6 | 0.7 |
| 철공업생산 | | ▲0.8 | ▲7.5 | ▲1.3 | ▲1.7 | ▲0.2 | 3.7 |
| 완전실업자 | (%) | 2.3 | 2.3 | 2.3 | 2.2 | 2.2 | 2.2 |
| 경영수지 | (兆엔) | 5.69 | 2.60 | 5.95 | 4.57 | 5.90 | 3.41 |
| 각 항목에 대한 % | (%) | 4.3 | 2.4 | 4.3 | 3.1 | 4.5 | 1.8 |
| 엔달러 시세 | (엔/달러) | 107 | 109 | 109 | 110 | 110 | 109 |
| 원유수입가격 | (달러/베럴) | 66 | 65 | 66 | 67 | 68 | 68 |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일본경제전망 2020.01.] 8페이지 발췌
※ 일본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종합연구소 작성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1. 특허

지난 10년간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의 추이를 보면 다소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보합세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한 313,567건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313,567건, 국제 특허출원을 제외한 특허출원은 249,554건이었다.

특허등록 건수는 2018년 194,525건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 심사청구 건수 추이는 2018년 234,309건으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그림 2-13-1 특허출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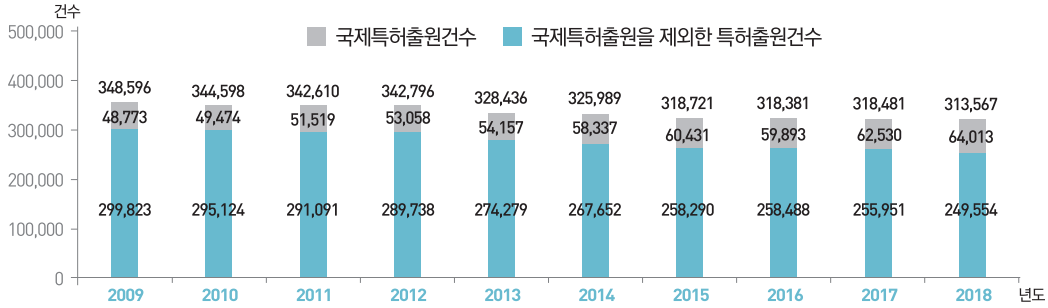


비고 • 특허출원 건수는, 특허권 존속 시간의 연장등록 출원이 포함된 건수
• 국제 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에 있어서 지정국에게 일본을 포함한, 일본특허청에 국내서면으로 제출된 출원 (특허출원으로만 한정함.) 해당 출원 건수는, 일본 국내서면 제출일 기준

출처 :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16

**그림 2-13-2** 특허등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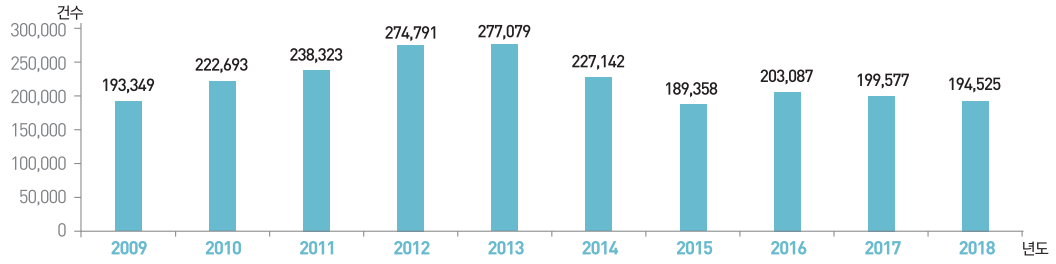


비고 • 2009~2012년 심사청구 건수는, 심사청구료 납부이연제도를 이용이 포함된 건수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17

**그림 2-13-3** 심사청구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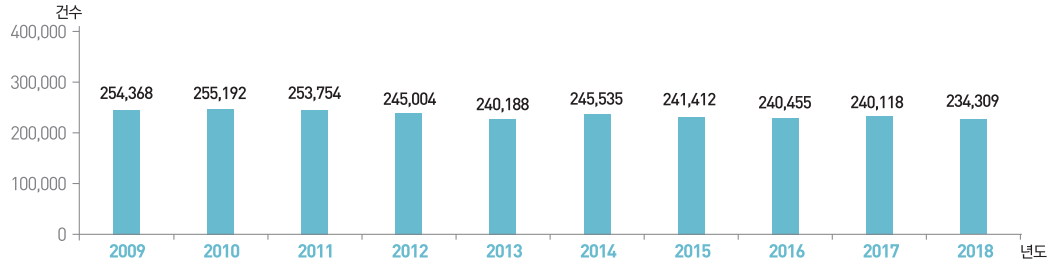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17

## 2.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 총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하여 5,388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 건수가 199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제외한 실용신안출원 건수가 5,189건이다. 실용신안 등록 건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9% 감소한 5,303건이었다.

**그림 2-13-4** 실용신안출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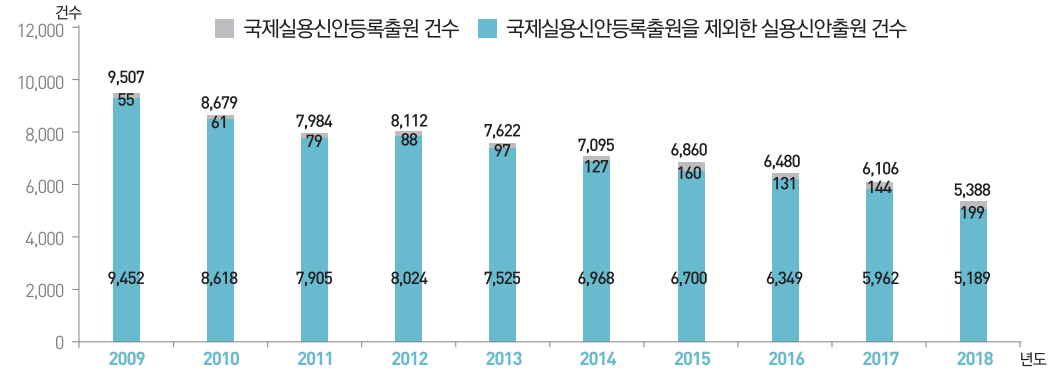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24

**그림 2-13-5 실용신안등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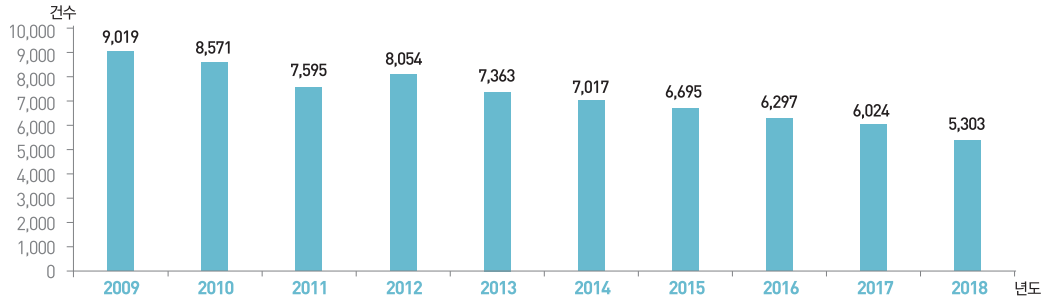


비고 · 제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에 있어서 지정국인 일본을 포함한, 일본 특허청에 국내 서면으로 제출일자 기준으로 계산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24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실용신안 제도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고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실용신안기술평가서는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재료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심사관의 평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작성 건수도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 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293건이었다.

**그림 2-13-6 실용신안기술평가서 청구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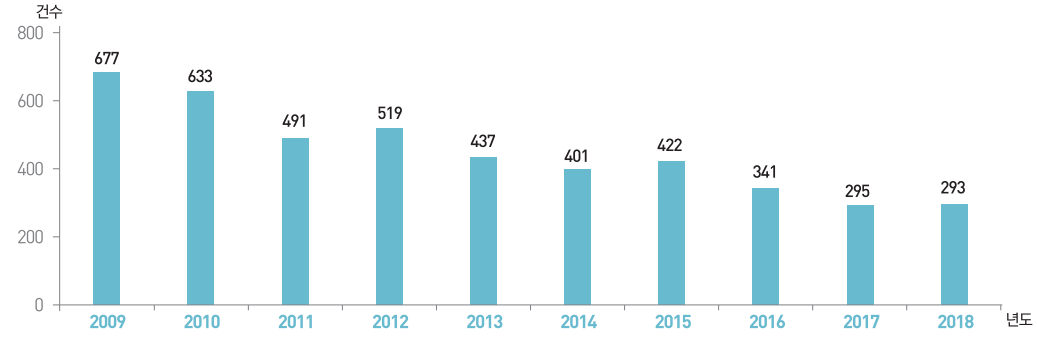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25

## 3. 디자인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지난 10년간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보합세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3% 감소한 31,406건이었다. 그 내역을 보면, 국제 디자인출원 건수는 2,261건, 국제 디자인출원을 제외한 디자인출원은 29,145건이었다.

**그림 2-13-7** 디자인출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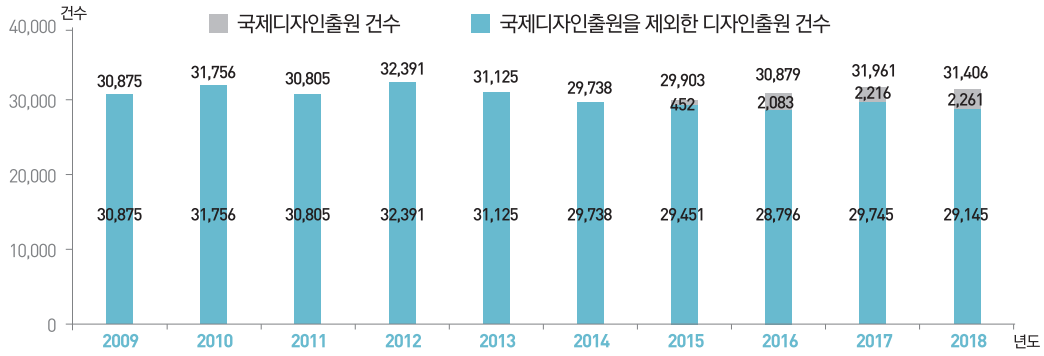


비고 •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건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근거한 국제출원에 있어서 일본을 지정 제약국으로서 국제사업국에 의해 국제 등록되어, 국제 공표된 출원 건수를 나타냄. 해당 건수에 대해서는, 국제출원 대상인 디자인 별 등록출원으로서, 국제공표일 기준으로 계산
• 일본 특허청에 있어서 헤이그협정 개정협정에 근거한 국제 출원의 취급개시는 2015년 5월 13일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26

**그림 2-13-8** 디자인등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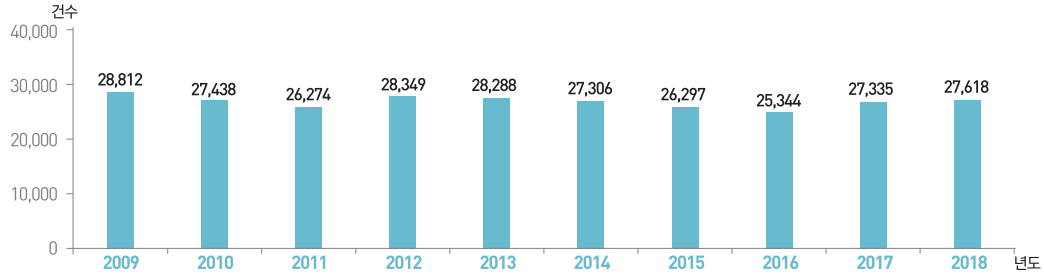


출처 :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26

## 4. 상표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2018년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38%감소한 184,483건이었다. 내역을 보면,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73%증가한 17,802건이었고, 국제상표출원을 제외한 상표출원 건수는 3.99%감소한 166,681건이었다.

상표등록 건수는 최근 10만에서 11만건 전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16,547건이었다.

**그림 2-13-9** 상표출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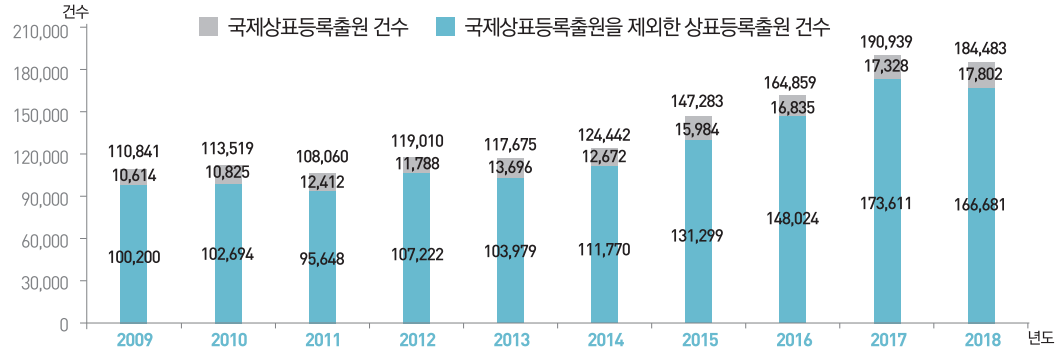


비고 •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방호표상등록출원 및 방호상표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이 포함된 수
• 국제상표등록출원 건수는,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출원에 있어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영역지정 통보가 일본 특허청에서 이루어진 출원 건수를 말함. 해당 건수에 대해서는, 영역지정 통보가 일본 특허청에서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31

**그림 2-13-10** 상표등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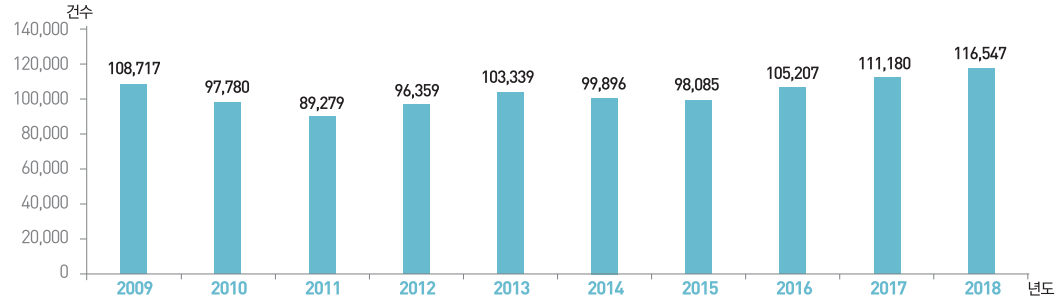


출처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9, p.31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1. 일본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기술 자립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산업을 새롭게 일구고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이, 세계 굴지의 시장 지배력 나아가 기술력까지 갖춘 분야가 속속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른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전히 외국의 기술 선진국 업체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초로서, 활용 양태가 많으므로 판매처가 매우 넓으며, 또한 볼륨이 큰 대형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원천 기술 없이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없어서 후발 주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중공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크고 작은 소재·부품·장비 메이커들이 매우 많은 아이템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어서, 예전에 없던 대일 무역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크며, 지식재산의 면에서도 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그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2.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노하우의 습득

보유 기술이나 디자인 또는 상표를 권리화하는 것은 거친 지식재산 경쟁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치열한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헤쳐나갈 수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의 전쟁터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결국 쟁송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계약의 영역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지 에이전트와의 대리점 계약, 현지 바이어에의 양도 계약 등을 맺을 때에 지재권 변수는 매우 크며, 실제로 그것을 자각해 가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의 우리 기업들로부터 또는 때로는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도 듣는 우려는, 해당 제품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및 실제로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러한 분쟁의 방안에 관한 것이다.

또 한 가지의 패턴을 들자면, 공개와 모방에 관한 문제이다. 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계약을 맺었을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그 기술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상대방이 회피 또는 개량 설계를 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사가 피해를 입고 분쟁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를 적지않게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장면에서의 비즈니스 계약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약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더군다나 비즈니스 계약, 특히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계약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것을 문언으로 표현하는 고도의 경험 영역이니만큼, 특히 인력과 자금이 넉넉치 못한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 3. IP 금융의 혜택 및 활용성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 기업 등에게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은 지재 자산의 활용 확대를 통한 이익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각국 당국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민관 협력으로 IP 담보 회수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 예산으로 특허 갭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로 IP 담보 대출 금액이 급증하고 그 영향을 받아 기술이전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 기업 등이 가진 기술력, IP역량 자체에 기반하여 마켓 확장력이나 성장 잠재력 전반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지재권의 물적 담보 가치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뛰어난 어느 개인 기업이 유니콘 기업에까지 비약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게다가, 수출 경제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해외 출원, 해외 분쟁 지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재 활동을 적시적소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IP 금융의 양적, 질적 활성화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R&D)과 보상 체계의 확립, 장기적으로는 기초 과학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혁신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기까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우리의 완성품 기업들에게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메이커들과 상거래하는 것은 불가피함을 넘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바, 가급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은,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단계에서 미리 선행 기술 등의 조사를 거쳐 일본에서의 비즈니스상 관계가 있을 법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갯수의 출원을 통해 가급적 빨리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다. 라이선스니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것은 역시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하지만, 역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일본 기업의 많은 선행 기술로 인해 우리 기업 쪽에서 권리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라이선스 교섭을 하여, 때로는 무효심판 청구 등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실시 권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다만,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래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신뢰 관계 형성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금전적으로 당장 얼마간의 이익을 더 얻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전략, 스킬 등을 현지의 로컬 전문가와 협의하여 실행,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계약서의 문제는 경험의 공유와 확산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 정부에서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단초라고 할 수 있다.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보면, 표준특허 제도의 개요, 특질과 권리 행사, 표준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의

라이선스 협상 포인트가 단계별로 충실하고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다.

다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표준특허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침해 발생시의 책임 소재나 모방 우려 방지 문제 등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면하고 있는 바, 이를 미리 커버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상기의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자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하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P 금융의 활용 확대에 관해서는, 지재권 보유의 양과 질을 포함한 기업의 종합적인 지재 역량에 기반하면서도 시장 상황 및 전망을 정교하게 고려한,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우수한 여신 제도를 설계, 보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때에는 앞서 소개한 일본의 제도를 포함하여 타국의 예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금융상 자급을 강화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는 할지라도, 단기적이고 즉효적으로는, 특히 IP 평가 역량과 기업 자체의 IP 역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라도, 이제까지와 같이 국가의 직접적 비용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며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IP 활동 지원의 의식을 잃지 않고, 특히 현장에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출원과 분쟁대응 관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해 나갈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 개최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5 | 32 | 29 | 0 | 0 | 1 | 0 | 0 |
| 2016 | 520 | 73 | 0 | 0 | 3 | 9 | 10 |
| 2017 | 775 | 92 | 0 | 0 | 0 | 9 | 2 |
| 2018 | 1,023 | 114 | 0 | 0 | 1 | 10 | 14 |
| 2019 | 1,243 | 137 | 0 | 1 | 4 | 11 | 14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일본 지재권 관련 네트워크 강화

도쿄 데스크에서는 일본 지재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9년 12월 17일 JETRO 본사의 지적재산부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사업진행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도쿄 데스크와 현지수행대리인 계약을 맺고 있는 사무소와의 네트워크 협력강화를 위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국제특허사무소 미팅 (7월)

이토 국제특허사무소 미팅 (7월)

하라켄조 국제특허사무소 미팅 (7월)

노조미 종합법률사무소 미팅 (11월)

## 4. 우수사례

### ○ 현지 권리화 방안 제시

알파벳 모양의 퍼즐을 맞추면 해당 영어 단어의 동물이 완성되는 교육용 완구(그림2-13-11 참조)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기업A(이하 A사)는, 단어 종류가 수십가지인 제품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권리화를 할 수 있는지, 도쿄

그림 2-13-11 한국기업A사의 제품(조립형 교육용 완구)

출처 : 한국기업A 웹사이트 https://www.artoy.kr/

데스크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도쿄 데스크 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다.

도쿄 데스크에서 현지 수행대리인 담당 변리사에게 본건 출원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 결과, 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버전(영어 단어)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아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 할 때, A사가 희망하는 견적 및 기한내에 출원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먼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6개 정도의 대표 디자인만 출원하는 방법을 권유 드렸다. 당시 A사는 일본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권리화를 희망하였으므로, 디자인보다 상표출원을 먼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렸다. A사는 담당 변리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용완구(제 16류)]와[장난감(제 28류)]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 추후 디자인에 대해서도 총 6개의 디자인을 도쿄 데스크를 통해 권리화를 진행하였다.

본건의 경우, A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현지에서 권리화하는 경우의 수 또한 많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 측에서도 섣불리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러나, 도쿄 데스크에서는 담당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해 A사상표 및 제품의 디자인이 넓은 범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방안을 제안 할 수 있었다.

### ○ 경고장 수령에 대한 대응(분쟁예방)

한국기업P사(이하 P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22일 아마존 US와 JP 사이트에 자전거용 파우치(그림2-13-12 참조)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17일에 아마존 JP로부터 P사의 판매 제품이 기존 아마존 JP에서 판매중인 다른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경고장과 함께 해당 제품(7컬러 모두)이 판매 일시중지가 되어, 도쿄 데스크에 본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도쿄 데스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다.

그림 2-13-12 한국기업P사의 제품 (자전거용 스템백)

출처 : 한국기업P사의 웹사이트 http://www.practico.kr/

도쿄 데스크에서는 2019년 8월 6일 현지 수행대리인에게 본건에 대한 상황 설명 및 침해 감정서 작성을 정식 의뢰 하였다. P사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며 침해 감정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물품을 일본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2019년 9월 3일에 작성을 완료한 침해 감정서의 결론으로는, P사가 상대기업의 디자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당 침해감정서를 바탕으로 경고장을 작성하여 아마존 JP에 회신한 결과, 2019년 10월 14일 P사의 제품에 대한 판매 일시중지가 해제를 받았다. 도쿄 데스크의 지원으로 P사는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마존 JP로부터 수령한 경고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약 1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TOKYO G-FAIR 2019 (4월)

2019KCON 한국유통소비재상담회 (5월)

Baby Kisd Expo 사전간담회 (6월)

한국패션일본진출 사전간담회 (8월)

ILS 사전간담회 (10월)

한국통합사전달 사전간담회 (10월)

XIV

# 뉴델리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뉴델리 IP-DESK는 2017년 9월 29일에 뉴델리 무역관에 개소하였다. 인도 전 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기준 관리인력 1명과 전담인력 1명, 비상근 자문위원 1명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4-1 인력 현황 : 총 3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장명철 | KOTRA (차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임수정 | KOTRA (Specialist) | 한국 | - | 전담인력 |
| 유지혜 | BUDDTREE Advisory Services Private Limited (Managing partner) | 한국 | 변호사 | 비상근 자문 위원 |

표 2-14-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뉴델리 무역관 內 |
| 주 소 | # 2, 12th Floor, Epitome,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III Gurgaon-122002, Haryana, India |
| 연락처 | +91-124-4628514 |

표 2-14-3 협력 로펌 : 총 4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R.K.DEWAN & Co. | 델리, 뭄바이, 푸네, 첸나이, 콜카타 | 150명 | Isha Gandhi 변호사 |
| Suri and Company | 델리 | 55명 | Sumit Aggrawal 변호사 |
| Tech Corp | 구르가온 | 15명 | Rahul Dev 변호사 |
| Prometheus IP | 첸나이 | 150명 | Ganesh Putta 변호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경제동향

(상반기) IMF는 2019년에 전년(7.4%) 수준인 연 7.3%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5.8%에 그쳤다. 2018년 11월 인도 비은행 금융권(NBFC: A Non Banking Financial Company)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는 전년 상반기 대비 10% 하락한 1조8700만 루피(한화 약 3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해 해당 업계 내 상반기 약 1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3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연도에 대한 기대 증폭되었다. 2019/20 회계연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5.8%, 2분기 5.0%, 3분기 4.5%로 지속적 하락했으며 정부는 금리·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정책 꾸준히 제시하였다. 주춤했던 소비가 하반기 10월 축제 시즌 소비를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세 단 세계 경기의 하향흐름과 함께 인도의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2019년 GDP 전망치는 4.6%(Fitch)에서 6.1%(IMF)로 상이하다.

#### ○ 교역동향

2019년 기준 한국은 인도의 9위 교역대상국이며 수출은 20위, 수입은 8위이다.

양국 교역액은 2011년에 20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한동안 감소했으나 2017년에 200억 달러를 재달성하였다. 하지만, 현재 인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2019년 대인도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가량 감소했고 수입은 55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4% 감소했다.

표 2-14-4 한-인도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수출 | 금액 | 120.2 | 115.9 | 150.5 | 156.1 | 151.0 |
| | 증감률 | -5.9 | -3.6 | 29.8 | 3.7 | -3.2 |
| 수입 | 금액 | 42.3 | 41.8 | 49.4 | 58.8 | 55.6 |
| | 증감률 | -19.6 | -1.2 | 18.1 | 19.0 | -5.4 |
| 무역수지 | | 70.7 | 74.1 | 101.0 | 97.3 | 95.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투자동향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9년 1~9월 기준 한국 기업은 99개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전년(96개)대비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하였다. 투자액은 2019년 1~9월 기준 3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58%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삼성전자 및 기아차의 공장 증설에 따른 급격한 투자금액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주: 투자현황은 분기별로 발표되며, 2019년 4분기 투자현황은 2020년 3월에 발표 예정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18-2019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50,68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건수는 15,284로 집계되었고, 2017-2018대비 출원건수는 5.9% 등록 건수는 17% 증가되었다.

그림 2-14-1 연도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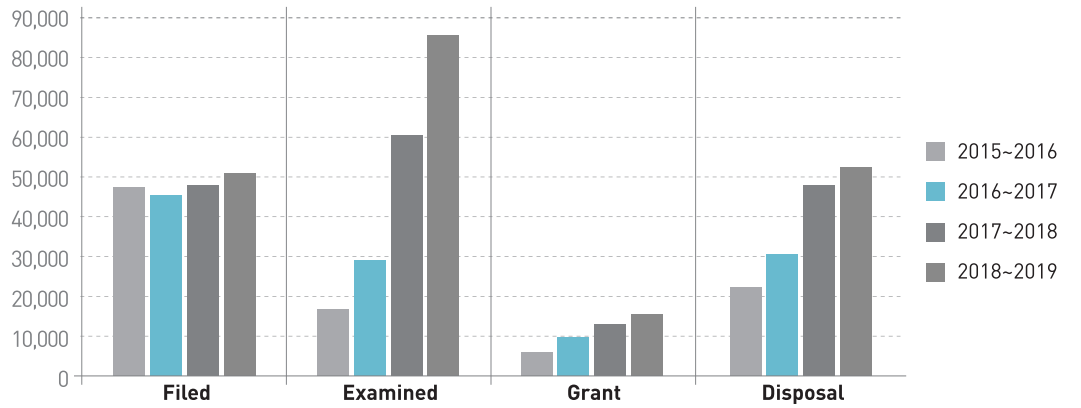


자료: 인도 상공부, CIPAM(지식재산권 전담부서)

### ○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2018-2019년 전체 상표 출원 건수는 338,54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건수는 316,798로 집계되었고, 2017-2018 대비 출원건수는 24% 증가, 등록 건수는 5% 증가되었다.

그림 2-14-2 연도별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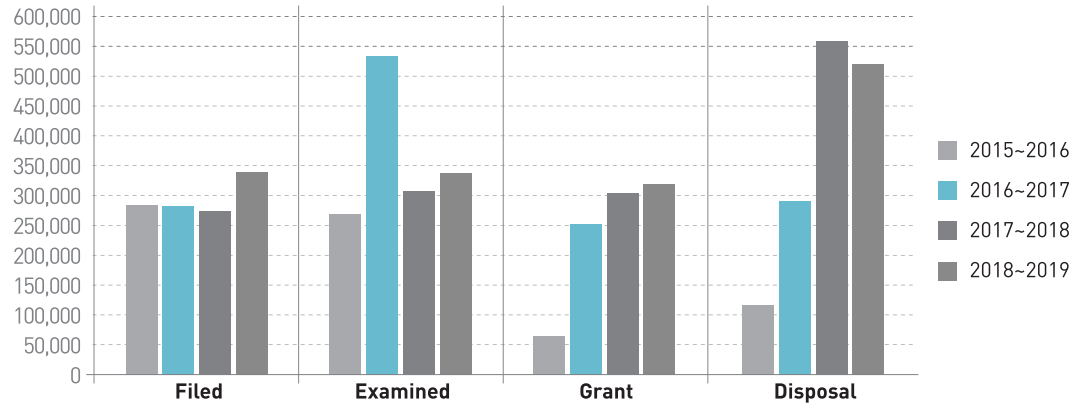


자료: 인도 상공부, CIPAM(지식재산권 전담부서

### ○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2018-2019년 전체 디자인 출원 건수는 12,58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건수는 9,512건으로 집계되었고, 2017-2018 대비 출원건수 6% 증가, 등록건수가 5% 감소되었다.

그림 2-14-3 연도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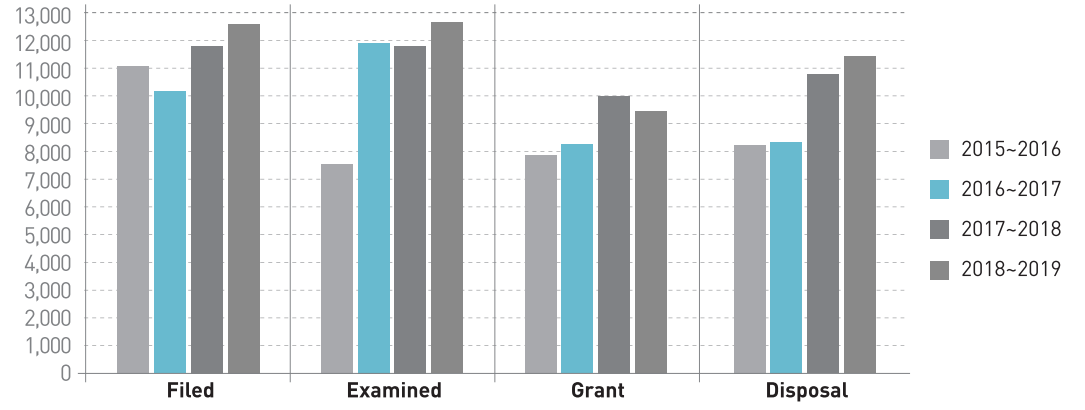


자료: 인도 상공부, CIPAM(지식재산권 전담부서)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우리기업의 제품 무단 복제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우리기업의 제품이 인도기업에 의해 무단 복제되어 현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었고 이는

우리기업의 인도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소송 진행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해둔 경우가 있다.

해외시장 진출 시, 특허·상표 전략을 포함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 ○ 지재권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

대다수의 우리기업은 상품 수출 및 바이어 확보를 우선으로하고 현지 지재권 확보를 후차 순으로 생각하다보니, 바이어의 선출원 혹은 현지인의 악의적 선등록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상표 등 지재권 권리확보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뉴델리 IP-DESK는 사절단 및 전시회를 참가하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IP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7 | 15 | 0 | 0 | 1 | 0 | 0 |
| 2018 | 211 | 22 | 0 | 6 | 1 | 9 |
| 2019 | 364 | 44 | 1 | 5 | 1 | 0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인도 지재권 관련 협력 채널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인도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뉴델리 IP-DESK는 2018년 9월 2일-6일(5일간), 인도 지재권 공무원 방한연수 행사를 추진한바, 인도 지식재산국, 경찰 등 기관의 지재권 공무원 총 8명이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특허청, 서울 세관 및 유관협회를 방문하고 한국의 기업과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인도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은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고 우리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 필요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년 인도 한국 진출 기업의 지재권 교육을 위해, 한국 특허청 국제 교육과와 인도 산업부 지재권 담당 부서팀과의'20년 교육세미나 개최 관련 미팅을 가졌으며 세관, 경찰 공무원 협업하여'20년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기업의 지재권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IP-DESK 순환 설명회를 통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현지 한국 진출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인식 제고 및 IP-DESK 사업 소개를 위해, 데스크 소재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벵갈루루, 뭄바이)에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지에 실제 발행한 사례를 소개함으로 현지 진출기업에게 지재권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뉴델리 무역관에 설치되어있는 CPEA활용지원센터, K-MOVE센터와 협업하여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여 현지 진출 국내기업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4. 우수사례

### ○ 우리기업의 동일상표 출원 확인 및 신속한 대응 지원

우리기업의 상표권은 인도 상표청에 접수, 심사를 통과하고 공중심사 진행 중, IP-DESK 협력로펌은 우리기업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건을 인도 특허청 저널에서 발견하였다. 협력로펌은 즉시 우리기업과 뉴델리 IP-DESK에 관련 사실을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우리기업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뉴델리 IP-DESK는 이에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지원하였다.

뉴델리 IP-DESK는 유선으로 관련사항을 전달하여 이의제기 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였고 협력로펌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 자료 확인 및 변역작업을 지원하였다.

뉴델리 협력 로펌은 자료를 취합하여 인도 특허청에 반박서류 접수를 하였고 동일상표를 출원한 인도기업은 대응 유효기간 2개월 안에 반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상표 출원은 취소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기업은 인도 상표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지시를 대기하고 있다.

### ○ 우리기업의 상표권 출원 서류 안내 및 검토 지원

우리기업은 인도에 상표를 등록하기 전, 상표를 이미 인도에서 사용하여 로펌으로부터 'Affidavit(사용진술서)'제출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기업은 상표권 출원 및 요구서류에 대한 정보가 없어 뉴델리 IP-DESK로 문의를 하였다.

뉴델리 IP-DESK는 'Affidavit(사용진술서)'작성 방법을 안내하였고 기업이 안내를 토대로 작성한 서류를 검토 한 후 해당 자료를 협력로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기업의 상표권 출원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의제기 없이 인도 상표청에 등록되었다.

### 감사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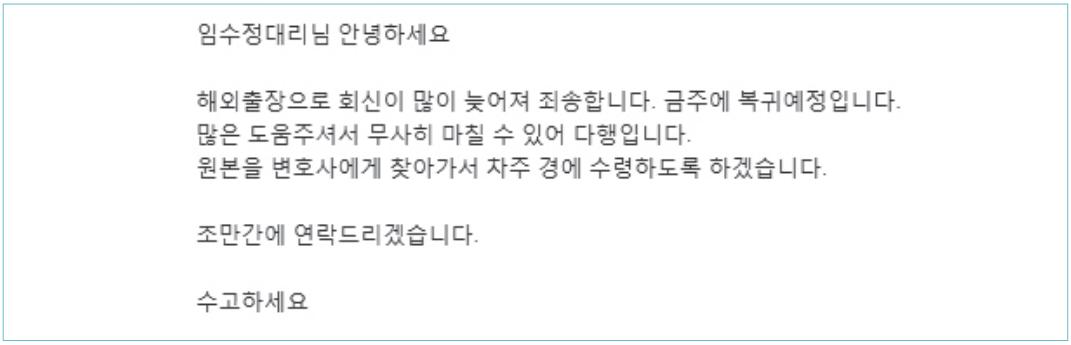

임수정대리님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으로 회신이 많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금주에 복귀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원본을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차주 경에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이동식 IP-DESK (1월) 〉

이동식 IP-DESK (3월)

이동식 IP-DESK (4월)

이동식 IP-DESK (5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링 (6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6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쉽 설명회 (7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쉽 상담회 (7월)

인도 공무원 초청연수 (9월)

인도 공무원 초청연수 (9월)

벵갈루루 이동 설명회 (10월)

뭄바이 이동 설명회 (11월)

# XV 자카르타 IP-DESK

## 1. IP-DESK 일반현황

자카르타 IP-DESK는 2017년 11월에 자카르타 무역관내에 개소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19년 현재 2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5-1 인력 현황 : 총 4명

| 성 명 | 소속기관 (직 위) | 국 적 | 자격사항 | 비 고 |
|---|---|---|---|---|
| 권세영 | KOTRA (부관장) | 한국 | - | 관리인력 |
| 이소왕 | 두왕컨설팅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변호사/변리사 | 비상근 자문위원 |
| Taryono Aji | KOTRA (현지직원) | 인도네시아 | - | 전담인력 |
| Maryam | KOTRA (현지직원) | 인도네시아 | - | 전담인력 |

표 2-15-2 사무실 위치

| | |
|---|---|
| 위 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內 |
| 주 소 | Suite 801, Wisma GKBI, Jl. Jend. Sudirman Kav.28 Jakarta 10210 Indonesia |
| 연락처 | +62-21-574-1522 |

표 2-15-3 협력 로펌 : 총 2개

| 로 펌 명 | 위 치 | 근무인원 | 담 당 자 |
|---|---|---|---|
| LSW attorney & partners | 자카르타 | 30명 | 이소왕 변호사/변리사 |
| YSM & Partners | 자카르타 | 20명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

## 2. 현지 산업·지식재산권 동향 및 애로사항

### ▣ 현지 지역 동향

#### ○ 경제 및 무역동향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5.02%로 2015년 이후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88%, 2016년 5.03%, 2017년 5.07%, 2018년 5.17%였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석탄과 팜 오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약세, 가계 소비의 위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인도네시아의 총 수출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675억 3,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9.5% 감소한 1,70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적자는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통령 재선 및 수도 이전 발표

2019년 4월 17일 대선·총선을 통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現 대통령은 마루프 아민(Ma'ruf Amin) 부통령 후보와 함께 6월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부통령으로 당선 확정 되었으며 2019년 10월 20일에 공식 취임하였다. 조코위 2기 정부는 ①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②직업훈련체계 개선·임산부 및 아동 보건 시스템 체계화, ③행정간소화를 통한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 ④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관료체계의 구조적 혁신, ⑤국가 예산의 투명한 지출 등의 "5대 비전"을 선포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동부 깔리만딴에 이전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수도는 150만 명의 주민이 신규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총 사업비는 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초안을 2019년에 발표했으며, 초안 갱신 버전 중 가장 최신 초안('19.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5-1**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초안에 따른 주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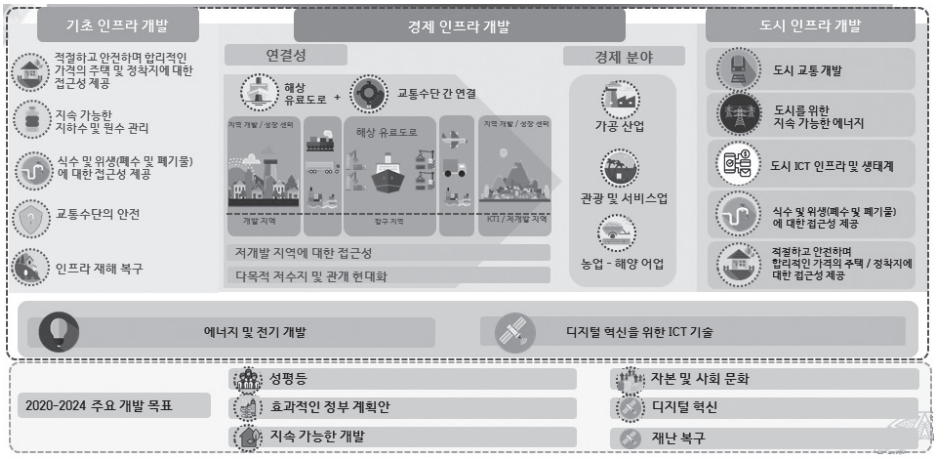


**그림 2-15-2** RPJMN 2020-2024에 따른 인도네시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목표

| | | |
|---|---|---|
| **2020~2024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목표 (목표년도)** | 1인당 명목 GDP<br>5,600~5,930 달러 (2024) | 빈곤율<br>6.5~7.0% (2024) |
| 실업률<br>4.0~6.4% (2024) | 지니계수<br>0.370~0.374 (2024) | 생산인구비율<br>75.54% (2024) |
| 인플레이션율<br>2~4% (2020~2024) | 내·외국인 직접투자 성장률 (DDI, FDI)<br>7.3~8% (2020~2024) | 수출증가율(非 석유·가스)<br>7.9~10.8% (2020~2024) |
| 전체 산업 중 제조업 비중<br>20~21.2% (2024) | 非 석유·가스산업 성장률<br>5.8~7.5% (2020~2024) | 재정적자 수준<br>1.7~2.3% (2024) |

자료 : Rancangan Teknokratik RPJMN 2020-2024(2019년 8월 버전)

## ○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동향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수는 약 2,000 개사 내외로 추산하며, 특징은 他 국가 대비 투자건수가 많고 투자액이 적은 소형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15-4** 최근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동향

| 연도 | 건수 | 금액(백만 달러) | 증감률(금액 기준) |
|---|---|---|---|
| 2014년 | 1,336 | 1,127 | -49% |
| 2015년 | 2,329 | 1,213 | 7% |
| 2016년 | 2,996 | 1,065 | -12.2% |
| 2017년 | 2,960 | 2,024 | 90.0% |
| 2018년 | 2,412 | 1,605 | -20.7% |
| 2019년 | 2,952 | 1,070 | -33.3%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20)

표 2-15-5 산업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순위

(단위 : 천 달러, 건 수)

| 년도 | 2018년 | | | 2019년 상반기 | | |
|---|---|---|---|---|---|---|
| 순위 | 산 업 | 총 투자액 | 프로젝트 | 산 업 | 총 투자액 | 프로젝트 |
| 1 | 금속 · 기계 · 전자기기 | 658,789 | 172 | 화학 · 제약 | 246,931 | 124 |
| 2 | 전기 · 가스 · 수도 | 204,702 | 17 | 광업 | 166,922 | 26 |
| 3 | 섬유봉제 | 122,365 | 311 | 가죽 · 신발 | 123,437 | 185 |
| 4 | 가죽 · 신발 | 92,626 | 119 | 전기 · 가스 · 수도 | 106,819 | 40 |
| 5 | 식품 | 89,521 | 70 | 고무 · 플라스틱 | 96,314 | 133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20)

## ▣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 ○ 지적재산권 등록 전 부분 증가, 출원은 전 부분 감소

2019년 상표권 등록은 전년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디자인 등록 25%증가, 특허권 등록이 67% 증가하여 전 부분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특허 등록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6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 연도 | 상표권 | 디자인 | 특허 |
|---|---|---|---|
| 2017년 | 54,929 | 2,664 | 5,300 |
| 2018년 | 26,319 | 3,308 | 6,704 |
| 2019년 | 26,746* | 4,144 | 11,200 |

주 : 2019년 상표권은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등록 3,926건 포함

* 출처 : 인도네시아 특허청

2019년 출원은 전년도 대비 상표권 24%, 디자인 27%, 특허 36% 전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7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 연도 | 상표권 | 디자인 | 특허 |
|---|---|---|---|
| 2017년 | 70,135 | 3,656 | 9,877 |
| 2018년 | 74,228* | 3,812 | 11,300 |
| 2019년 | 56,451* | 2,788 | 7,269 |

주 :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상표권 출원 2018년 4,873건, 2019년 9,655건 포함

* 출처 : 인도네시아 특허청

### ○ 모든 지적 재산권에 전자출원시스템 도입

2019년 8월 17일부터 상표, 디자인, 특허의 온라인 출원이 가능해졌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전자출원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지적 재산권 출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저작권에 대한 온라인 출원은 2016년에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다.

### ○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상표권 출원 증가

2018년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통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상표 출원은 2018년 4,873건에서 2019년 9,65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 현지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 ○ 지재권 전자출원시스템 오류

2019년 8월 17일부터 모든 지재권 온라인 출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종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통계나 출원 진행 사항은 특허청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자료 업데이트가 조금 늦는 편이다. 또한 출원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온라인 신청 후 특허청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특별한 상황에서는(예. 전염 바이러스 확산) 수동 출원 방식(특허청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이 허용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선출원을 중요시하는 지재권 등록에 정전이나 전산시스템 마비 시, 지재권 권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 ○ 인도네시아 내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침해

한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최근 한국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한국기업인 것처럼 사칭하여 현지 소비자를 속이는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MUMUSO, MINIGOOD, XIMISO, KIODA)이 발견되고 있다. 매장 내 한국기업의 유명 캐릭터 및 제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실제 정품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 자체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 파악 및 법적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 우리기업의 상표권 외의 지재권 등록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우리기업이 상표 출원에는 적극적이나 디자인이나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업 '라인프렌즈'는 자신이 출시한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니굿'을 발견하고 자카르타 무역관을 통해 협력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협력 로펌에서 '라인프렌즈'가 모방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3.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

### ▣ 연간 추진실적

| 연 도 | 지재권 상담 | 출원 지원 | 세관 등록 | 침해 조사 |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협력채널 구축 | 정보 제공 |
|---|---|---|---|---|---|---|---|
| 2018 | 203 | 36 | 0 | 2 | 0 | 1 | - |
| 2019 | 180 | 47 | 0 | 0 | 0 | 1 | - |

### ▣ '19년 중점 추진사항

### ○ 인도네시아 특허청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외부 협력채널 확대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인도네시아 특허청, 세관 등 지재권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자카르타 IP-DESK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11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연수인원을 16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IP 이슈 페이퍼 발간 및 한류 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조사

한류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카르타 IP-DESK에서는 현지에서 우리기업과 지재권을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 관련 법령 및 주요 현안을 조사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지재권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 4. 우수사례

### ○ 인도네시아 한류편승 유통기업 MINIGOOD 및 MUMUSO 침해조사

최근 인도네시아 내 한류편승 중국계 소매유통기업 MINIGOOD 및 MUMUSO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매행위로 우리기업 '라인프렌즈' 및 '네이처 리퍼블릭'의 피해 우려가 제기 되었다.

2018년 말 자카르타 무역관 IP-DESK는 우리기업의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한국의 고품질 브랜드라고 홍보하는 MINIGOOD 및 MUMUSO의 피침해 행위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무무소의 경우 로고와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을 연상하는 도메인(.kr)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스타그램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증을 노출하고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편 MINIGOOD은 8개의 매장을 오픈했으며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후 자카르타 데스크에서는 2019년에 현지 협력로펌을 통해 MINIGOOD과 MUMUSO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5. 사진자료 (주요 행사사진)

이동식 IP-DESK(연중)

자카르타 수처리 IP 컨설팅관(7.17)

이동식 IP-DESK, 충북&강원 무역 사절단(9.9)

이동식 IP-DESK, 대구/동남 무역 사절단 (9.25)

인니 IP공무원 초청 오찬 (10.14)

인니 IP공무원 초청 기업간담회(10.15)

인니 IP공무원 초청 연수(10.15)

자카르타 국제 소비재전 IP 컨설팅관(11.7)

# 2019 IP-DESK 백서

KOTRA자료 20-166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발 행 일 : 2020년 4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 (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327-6 (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OPEN KOGL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2019 IP-DESK 백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9 IP-DESK WHITE PAPER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